

중국근현대사학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22년 12월 정례발표회)

- ◆ 일시: 2022년 12월 17일(토) 14:00~18:00
- ◆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518호 국제회의실
- ◆ 주관: 중국근현대사학회, 서강대학교 사학과
- ◆ ZOOM 접속 링크: <https://zoom.us/j/6915820895>
(회의실 ID: 691 582 0895, 비밀번호: 없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22년 12월 정례발표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22년 12월 정례발표회)

- ◆ 일시: 2022년 12월 17일(토) 14:00~18:00
- ◆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518호 국제회의실
- ◆ 주관: 중국근현대사학회, 서강대학교 사학과
- ◆ ZOOM 접속 링크: <https://zoom.us/j/6915820895>
(회의실 ID: 691 582 0895, 비밀번호: 없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례발표회)

일시: 2022년 12월 17일(토) 14: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518호 국제회의실

ZOOM 접속 링크: <https://zoom.us/j/6915820895>(회의실 ID: 691 582 0895,

비밀번호: 없음)

주최: 중국근현대사학회, 서강대학교 사학과

주제: “근대 이후 한중관계의 역사적 맥락”

* 사회: 김하림(경북대)

개회사 14:00~14:10 || 회장 전인갑(서강대)

발표(1) 14:10~14:55 || 김봉준(臺灣大學)

“중국 근대 ‘종주권’ 관념의 변용과 대조선 정책의 변화”

- 토론: 손성욱(선문대)

발표(2) 14:55~15:40 || 한상협(淸華大學)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및 〈國勢調査〉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학교 인구: 경기도와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 토론: 김희신(상명대)

중간휴식 15:40~16:00

발표(3) 16:00~16:45 || 이상민(충북대)

“중공중앙 동북국의 성립과 북·중 관계의 형성”

- 토론: 한상준(아주대)

발표(4) 16:45~17:30 || 장영희(성균관대)

“한중관계 30년: 진보-보수의 요동과 이익-정체성-안보의 복합 궤적”

- 토론: 강진아(한양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례발표회)

목 차

■ 발표①

19세기 말 청 속국 정책의 변화와 ‘문호(門戶)’ 조선 01

발표: 김봉준(臺灣大學) / 토론: 손성욱(선문대)

■ 발표②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및 〈國勢調査〉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화교 인구: 경기도와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23

발표: 한상협(清華大學) / 토론: 김희신(상명대)

■ 발표③

중공중앙 동북국의 성립과 북·중 관계의 형성 59

발표: 이상민(충북대) / 토론: 한상준(아주대)

■ 발표④

한중관계 30년: 집권세력에 따른 파동과 이익-안보-정체성의 복합 궤적 77

발표: 장영희(성균관대) / 토론: 강진아(한양대)

19세기 말 청 속국 정책의 변화와 ‘문호(門戶)’ 조선

國立臺灣大學 歷史學系 博士候選人 김봉준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문호를 중심으로 한 속국 정책의 전개
- III. 조선 문제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1875년 광서제가 청나라의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였다. 당시 청은 여전히 서구국가와 일본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에 군사력뿐만 아니라 공법(국제법)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위시한 도전에 광서제와 조정의 각료들은 기존 정책을 새롭게 재편하거나 보완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었다. 새로운 질서의 수용과 적응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적응이라는 막대한 과제를 안겨줄 수 있었기에 새로운 정책의 수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였다.

19세기 전반 청 조정은 본토의 보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조정 각료들은 청 내부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하여 조선, 안남 등 속국과 대만, 서장 등 속지를 보전하는 방안을 새로이 모색하고 있었다.¹⁾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곧 속국과 속지에서 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19세기 조선에 대해 청은 전통적인 관계의 유지를 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이홍

1) 청의 조선 정책에 관한 선구적인 국내 연구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지면과 분량의 관계상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구서만을 열거해보고자 한다. 권석봉, 『청말 대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1986; 김종원 외, 『조선후기 대외관계 연구』, 한울, 2009; 전해중,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1970; 김형중, 「19세기 근대 한·중관계의 변용」, 『동양사학연구』 140, 2017; 이동욱,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史叢』 9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9; 이동욱, 「청일전쟁의 기원: 청말의 종주권 관념과 속국정책의 변화」,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동북아역사재단, 2020; 이원준, 「1940년대 南京建都論과 근대 중국의 海防論」, 『중국근현대사연구』 85, 2020; 조병한, 「海防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동양사학연구』 88, 2004; 劉新華 等, 「略論晚清의 海防塞防之爭: 以地緣政治的角度來考察」, 『福建論壇』 2003-5; 何平立, 「略論晚清海防思想與戰略」, 『上海大學學報』 1992-3; 趙春晨, 「1874-1875年清政府의 “海防議” -兼談對洋務運動和洋務派의 幾點看法-」, 『西北大學學報』 1983-2; 陳貞壽 等, 「晚清 “海防” 與 “塞防” 論爭新探」, 『福建師範大學學報』 1993-1; 董叢林, 「湘淮派系因素與晚清海軍海防」, 『河北師院學報』 1996-4; 秦宗倉 等, 「中國近代 “塞防” “海防” 之爭對當代西部安全問題的啓示」, 『西北師大學報』 49-5, 2012 등이 있다.

장은 국제정세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조선과 근대적 조약 관계와 전통적 조공 관계를 병립시키는 체계를 만들어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1870년대 중반부터 1880년대 중반까지 근 10년간의 청 조정의 내부로 눈을 돌려 당시 청 조정 내에 있었던 해방론의 논의와 속국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²⁾ 이 글이 광서연간에 방점을 둔 것은 황제가 결정권자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의 정치체제가 가진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 시기에 전대의 여파와 더불어 임오군란과 청일전쟁 등 청의 대외정책의 근간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서연간 초기의 국제정세와 중요한 사안에 착안하여 청 외교에 발생한 정책 변화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 1880년대 조선에서 발생한 사건이 청의 대외정책 및 내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청의 조선 정책의 변화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³⁾ 아울러 이 글에서는 청 측 사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국(屬國)”의 표현을 그대로 본문에서 사용하였다. 청은 스스로 자신들의 질서와 체제를 인정하고 문물을 받아들이는 국가를 속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의례와 명분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상국-속국 관계를 유지하고 상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왕조가 멸망하는 직전까지 부단히 노력하였다.⁴⁾

19세기 말 청 조정의 주요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는 사료인 『淸季外交史料(이하 『外交史料』)』, 『光緒籌辦夷務始末記(이하 『光緒夷務始末』)』를 주로 참고하였다. 여기서 수록하고 있는 문서는 당시 청 조정과 각료들 사이의 현안과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측의 대외관계 참고자료인 『華案』 및 『日案』 등의 자료도 참고하여 조선 측의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문호를 중심으로 한 속국 정책의 전개

2) 청일전쟁 전후 청의 속국 정책과 조선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동욱, 「청일전쟁의 기원: 청말의 종주권 관념과 속국 정책의 변화」,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동북아역사재단, 2020을 참조. 이동욱의 연구에서는 동치 연간 이후의 조선 정책과 속국 논쟁을 다루는 동시에, 기존 중국 및 대만 학자의 ‘宗藩’ 개념의 실상과 조선의 주권과의 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1860~1870년대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광서 연간의 해방론과 속국 정책을 동치 연간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고 광서 연간의 상황만을 반영하여 이 시기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3) G.F.Kennan, “History and Diplomacy as Viewed by a Diplomatist”, The Review of Politics, Vol. 18, No. 2 (Apr, 1956), 170-177. 아울러 오카모토 타카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였다(岡本隆司, 앞의 책, 2004, 111~112쪽).

4) 커크 W.라슨(양희웅 옮김), 『전통·조약·장사』, 모노그래프, 2021, 156-157쪽. 조선의 내정에 대한 청의 간섭을 두고 라슨은 제국으로서의 청이 조선에 제국주의를 시행한 것으로, 영국 등 다른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적인 국제체제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통상 등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영국의 제국주의와는 달리 청의 제국주의는 기존 질서의 유지에 있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제국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법이나 힘의 논리보다는 전통적인 상국으로서 속국의 내분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속국에 간섭하려 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국왕의 부친인 대원군을 상국 청에 압송하고, 상무위원이라는 국제법에 전례가 없는 관원과 직위를 만드는 등 국제법이나 각국의 통례보다는 전통적인 상국-속국의 관계에 기인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1. 동북의 문호, 조선

1870년대 중반 이후 청의 대외정책은 이전 동치·합풍연간에 국가 근간을 흔들었던 외환(外侮)의 재발을 경계하면서, 또한 외국과의 교섭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청 조정에서는 관료들이 해방론(海防論)과 새방론(塞防論)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영국과 미얀마 지역에 대한 통치 문제와 마가리 사건(雲南凶案, 滇案)으로 인해 영국과 험악한 관계에 처해 있었다.

또한 중국 남부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자, 청 조정에서 속국에 대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특히 광서원년(1876), 증국번(曾國藩), 오원병(吳元炳), 심보정(沈葆楨), 설복성(薛福成) 등 관료들이 해방(海防)과 관련하여 청의 대외정책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가운데 기존 속국에 대한 정책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왕가벽(王家璧)⁵⁾이었다.

당시 영국의 미얀마 문제에 대한 영국의 개입에 왕가벽은 미얀마는 곧 청의 속국임을 천명하고 속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⁶⁾ 아울러 왕가벽은 목단사 사건을 교훈 삼아 미얀마-영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서남 변경을 보위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광서연간 초기의 해방론은 베트남을 비롯한 남쪽 변경지역과 관련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守在四夷”의 안보 관념이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목단사 사건과 유구의 병합 사례가 청 관료들이 변방 지역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⁷⁾ 이러한 가운데 왕가벽의 상주가 해방론의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속국 및 속지는 청의 해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만과 조선을 각각 남양(南洋)과 동북(東北)의 문호(門戶)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 관원들의 주장은 광서연간 해방론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를 상세히 하기 위해, 당시 청 조정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속국(屬國)과 속지(屬地)의 범주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광서연간 초기 청 관원이 언급하고 있는 속국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먼저 미얀마와 영국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미얀마를 청의 속국으로 언급한 것이 가장 먼저 속국을 언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⁸⁾ 다음으로 월남을 속국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다. 광서 8년(1882) 증기택(曾紀澤)은 청프전쟁이 발발한 직후의 시점에 프랑스와 월남의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속국을 보전해야 한다(中國保全屬國)”고 하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월남에 대한 프랑스의 간섭을 제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⁹⁾. 이듬해 이홍장도 상주를 올려 이홍장의 上奏에는 월남 사안의 중요성과 프랑스가 월남을 자주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월남을 중국의 속방임을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다.¹⁰⁾ 아울러 유구를 속국으로 지칭한 사례는 혁흔의 상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¹¹⁾ 다만 유구의 경우에

5) 湖北 武昌 출신으로 도광 23년에 임관하여 兵部主事を 역임하였다. 광서연간에는 光祿寺少卿을 맡았으며, 1883년에 사망하였다. 『狄雲行館詩文集』, 『週易集註』, 『洪範通易說』 등을 저술한 바 있다.

6) 「上奏」, 광서원년 6월 23일, 『光緒夷務始末』 제3권(108000051), 006~009쪽. 또한 동치 13년의 목단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생번(生藩)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막아야 함을 밝힌 바 있다.

7) 「英國照會」, 광서원년 6월 24일, 29일, 왕량 편저, 『光緒夷務始末』 제3권(108000051), 021~023쪽, 023~025쪽.

8) 「上奏」, 광서원년 6월 23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14~016쪽.

9) 「上奏」, 광서8년 3월 초3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3), 055~057쪽.

10) 「上奏」, 광서9년 5월 17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6), 096~104쪽, 104~109쪽.

11) 「上奏」, 광서6년 9월 25일, 『外交史料』.

4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는 “명목상 중국에 속해있지만 실상 일본에 속해 있다(名屬華, 實屬日)”라면서 유구는 청의 속국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속지로는 서장과 대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금 지난 시점이지만 광서14년(1888) 정월 30일 문석(文碩)의 상주를 참고하면, 영국과의 서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장은 중국의 속지라고 할 수 있다(西藏爲中國屬地)”로 표명하면서 서장을 속지로 언급한 예가 있다. 이와 같이 당시 청 조정의 관원이 해방론과 외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속국(미얀마, 베트남, 유구)과 속지(서장, 대만)의 범주가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속국과 속지의 보위에 관해 이홍장은 프랑스의 안남 지배는 광서·운남·귀주의 위협이 되고, 반면 영국의 인도 지배는 운남·사천 등지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신강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감숙·섬서 지역뿐만 아니라 동삼성·흑룡강·성경에도 위협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당시 변경 문제와 국제정세를 명확히 파악하면서 해방만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¹²⁾

중국번(曾國藩) 또한 조선과 인접해 있는 동북 지역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위협이 길림, 봉천, 흑룡강 및 몽골 좌령까지 미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안보가 서북 지역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³⁾ 또한 오원병(吳元炳)은 남부 지역의 해방과 관련해서는 상해와 대만 지역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하면서 앞서 왕가벽과 마찬가지로 목단사 사건과 천진에서 발생한 교안을 거울삼아 해군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¹⁴⁾ 특히 중국번은 속지 대만을 동서를 통하는 출입로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¹⁵⁾

또한 해방론을 주축으로 한 군비 확충과 변경 요충지의 재정비도 탄력을 얻고 있었다. 심보정(沈寶楨)은 해방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요 지역의 포대 및 기계창의 설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이종대, 장음환 등에게 연해 지역 요충지를 조사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¹⁶⁾ 원보항(袁保恆) 역시 대만을 중심으로 한 해방에 관하여, 해방을 위해 철갑선 구매가 필요하며, 경비에 관해 재정의 소모(耗用)를 줄여 재정부터 확충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심보정은 일본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청 조정의 관료들에게 목단사 사건이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음을 의미한다.¹⁷⁾

해방론뿐만 아니라 새방론에 관한 주장도 있었다. 광서 2년(1876) 당시 새방에 관한 현안은 서남 변경 문제와 마가리의 피살 사건, 이른바 “운남흉안(雲南凶案)”을 처리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여기에 운남 일대의 백화산(白花山)에서 영국인 교관이 상해를 입은 사안¹⁸⁾

12) 「上奏」, 광서원년 정월 초5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01~017쪽; 「上奏」, 광서원년 정월(일자 불명),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69~096쪽. 아울러 4월에도 이홍장은 영국의 운남에 대한 관심을 경계해야 함을 설명하며, 미얀마 등 동남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운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였다. (「上奏」, 광서원년 4월 19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3), 017~020쪽).

13) 「上奏」, 광서원년 정월 초5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18~021쪽.

14) 「上奏」, 광서원년 정월 초5일, 초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21~039, 039~040쪽; 吳元炳, 「上奏」, 광서원년 정월 초10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40~063쪽.

15) 「上奏」, 광서원년 정월 초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49), 039~040쪽.

16) 「上奏」, 광서원년 4월 12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13~016쪽.

17) 軍機大臣, 「上奏」, 광서 21년 4월 2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0), 022~026쪽. 광서원년 당시 승식(崇憲)은 6월 상주에서 동삼성의 정세를 간략히 보고하기도 하였다(崇憲, 「上奏」, 광서 21년 6월 1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06~009쪽). 아울러 새방에 관한 주장도 있었다. 광서 원년(1876) 4월 말, 군기처의 상주는 예친왕(禮親王) 세탁(世鐸)을 구심점으로 연병(練兵)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상주에서는 새방(塞防)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방(塞防)의 목적이 아환(俄患,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것임을 밝히면서, 좌종당을 동삼성에 파견하여 러시아에 대한 방비에 힘을 쓸 것을 건의하였다.

18) 「英國照會」, 광서원년 7월 1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1), 026~027쪽; 『外交史料』1. 32~33쪽.

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청과 영국의 관계는 무력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었으며, 이에 좌종당은 서북 지역의 국경과 정세에 관해 마가리 사안과 영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연대라는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좌종당은 우루무치, 이리 등지에 주둔하려고 하는 러시아군은 청의 영토를 위협하지 않고 자기 영토를 지키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므로,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하여 영국에 맞서야만 서북 변경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좌종당의 예측과는 달리 광서 2년(1876) 2월 당시 러시아군의 흑룡강 일대 출병 소식은 청 측을 긴장시켰다. 이에 청 조정은 즉각 성경장군 송실(崇實)과 서길림장군 목도선(穆圖善)에게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⁹⁾ 송실은 국경에 인접해 있는 조선에 관해 서도 조선이 요충지이나 내정이 빈약한 나라이기에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이 노리고 있으므로 이들이 조선에 영향을 미치면 곧 군사상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특히 조선에 러시아, 일본이 출병 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반드시 청 측에 구원을 요청할 것이기에 미리 이에 대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²⁰⁾

이와 관련하여 광서 7년(1881) 한림원 강학사 진보침(陳寶琛)과 운귀총독 유장우(劉長佑)의 주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진보침은 주로 당시 변방과 국제 정세를 논의하면서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당시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 윤선의 건조에 역점을 둘 것을 언급하였으며, 가옥관 일대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²¹⁾ 또한 유장우도 청의 문호인 조선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쪽으로는 미얀마, 동쪽으로는 조선을 청의 군현(郡縣)으로 삼는다면 변경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조선은 성경(盛京) 지역의 안보가 달린 문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²²⁾

이듬해에도 속국과 속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우선 장패륜은 자강을 논의하면서 외적에 대한 방어가 급선무이며, 러시아(서북), 프랑스(안남), 일본(유구)를 경계하기 위해 청의 영토를 서둘러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쪽의 등주, 금주, 그리고 조선은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조선 문제는 곧 순망치한(唇亡齒寒)과 마찬가지로 조선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주장하였다.²³⁾

1870년대 말, 청의 대외정책과 그 논의는 러시아와 영국 등 국가의 위협이 고조되자 변경지역의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²⁴⁾ 특히 동북의 문호인 조선의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외교를 권도(勸導)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속국을 보전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

19) 「署吉林將軍木圖善函」(광서 2년 2월 15일), 『關係史料』 卷2, 302a쪽.

20) 「盛京將軍崇實函」(광서 2년 2월 초9일), 『關係史料』 卷2, p.300a~301b. 先通聘問은 송실뿐만 아니라 이홍장 등 다른 각료들도 주장한 바 있다(권석봉, 앞의 책, 1986, 65쪽).

21) 진보침은 서양국가를 지칭할 때 ‘夷’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上奏」, 광서7년 윤7월 2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3), 166~179쪽, 179~189쪽).

22) 「上奏」, 광서7년 윤7월 2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53), 189~203쪽; 「上奏」, 광서7년 12월 초4일, 28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3), 228~233쪽, 251~255쪽. 또한 대만과 유구를 사례로 일본의 악행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23) 「上奏」, 광서8년 정월 초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3), 001~020쪽.

24) 청 조정의 각료뿐만 아니라 同文館 英官教習 J.P. Cowles도 조선 보호론을 주장한 바 있다. Cowles의 조선보호론은 일본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주장으로 삼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권석봉, 『청말 대조선정책사연구』, 1986, 일조각, 58~59쪽). 여기에 관한 다른 해석으로는 오카모토 타카시의 설명으로, 오카모토 타카시는 清朝가 조선에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조선을 “中間領域”으로 상정하여 청의 안보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에서의 마건충이 한 행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岡本隆司,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를 참조).

2. 일본·러시아의 접근과 청의 반응

청 내부의 논의와는 동시에 청 조정은 일찍이 조선 측에 일본과 서구국가의 개입을 경고한 바가 있다. 심보정(沈葆楨)은 동치 13년(1874) 6월 조선 측에 서신을 보내, “일본은 나가사키에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대만에서 철군한 이후에는 조선(高麗)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조선과 앞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고, 반드시 병선(兵船)으로 (일본을) 도울 것이니 조선은 이 국가를 상대하기 부족할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 아울러 조선 정부가 프랑스와 미국과 먼저 통상한다면, 일본도 어찌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두 국가와의 교섭을 건의하였다.²⁵⁾

심보정의 서신이 있고 나서 5년 뒤인 1879년 7월 이유원과 이홍장의 서신에서도 당시 청 조정과 이홍장은 조선에 서구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⁶⁾ 7월 당시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일본을 특히 경계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이홍장은 “그 강역은 서로 바라보는 곳에 있습니다. 북으로는 귀국(조선)이며 남으로는 중국의 대만이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其疆宇相望之處, 北則貴國, 南則中國之臺灣, 尤所注意)”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오직 중국과 귀국(조선)은 일가와 같이 우의가 있고, 우리 동삼성의 울타리라 할 수 있으니 어찌 입술과 이가 서로 의존하는 그런 정도뿐 이겠습니까? 귀국의 고민은 곧 중국의 고민입니다(惟是中國與貴國, 誼同一家, 必爲我東三省屏蔽, 奚啻唇齒相依? 貴國之憂, 卽中國之憂也)”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²⁷⁾

또한 이홍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경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당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사할린섬(庫葉島), 수분하(綏芬河), 도문강(圖們江) 일대는 모두 조선과도 이어지는 지역이니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교섭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조선이 시종일관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향후 조선이 고립되는 상황에 들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서구국가와의 통상을 권도하였다. 이홍장의 권도에 대한 이유원의 답변에는 서구와의 통상을 권도하는 이홍장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서구국가들이 규탄할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유원은 터키의 사례와 유구가 일본에 합병된 사례를 들어 공법의 실효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²⁸⁾

이와 관련하여 주일공사 하여장(何如章)은 1880년 7월 수신사로 일본에 온 김홍집과 조선 문제를 두고 논의하였다. 이 대답에서 하여장은 조선 문제를 논하면서, 국가 간의 연합과 상호 견제를 위해 조선이 서구국가에 문호를 개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하여장은 균세지법(均勢之法)의 원칙과 실효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이홍장과 같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와중에 조선에서 일어난 변란은 청의 대외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긴박

25) 고종 11년 6월 24일 乙未 첫 번째 기사, 『고종실록』 第11卷.

26) 고종 16년 7월 9일 辛巳 첫 번째 기사, 『고종실록』 第16卷.

27) 고종 16년 7월 9일 辛巳 첫 번째 기사, 『고종실록』 第16卷.

28) 「橘山答書」, 『龍湖閒錄』 4, 국사편찬위원회, 1980, 440~445쪽; 「答肅毅伯西」, 『嘉梧藁略』 1冊 書;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卷, 문서번호 329 부건(1)(장인성 등 엮음,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 1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47~56쪽에서 재인용. 이 자료집과 『고종실록』에서는 이홍장과 이유원의 서간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 「黃遵憲 私擬」, 장인성 등, 앞의 책, 2012, 61~64쪽. (『修信使日記』 卷二, 『修信使記錄』, 국사편찬위원회, 189~191. 「諸大臣獻議」, 장인성 등, 앞의 책, 2012, 59~60쪽에서 재인용).

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Ⅲ. 조선 문제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

1. 조선 문제에 대한 청의 대응과 인식의 변화

(1) “朝鮮有亂” - 임오군란

1882년 6월 서울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났으며 조선에서 변란이 생기자 장수성(張樹聲), 등승수(鄧承修) 등은 즉각 상주를 올려 조선 정세의 시급함과 연태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파견하는 대책을 제안하였다.³⁰⁾ 이어 송기(崇綺) 역시 이 난당(亂黨)이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오장경과 마건충을 파견하고 군함을 보낼 것을 건의하였다.³¹⁾

8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청 측 문건을 살펴보면, 청 관료들은 임오군란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소상히 다루면서 ‘조선난당(朝鮮亂黨)에 관한 경과보고와 함께 변란의 주요 인물로 이하응, 김윤식, 어윤중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광서제는 ‘조선은 대청의 속국으로 세를 지켜 번봉이었다(朝鮮爲大清屬國, 世守藩封)’라고 하면서 조선을 자국의 속국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오장경, 정여창, 마건충의 조선 파견을 지시하였다.³²⁾

같은 달 16일, 이홍장은 광서제에게 임오군란에 대한 일본·러시아 등의 동향을 함께 보고하였다. 임오군란으로 인한 혼란은 청의 개입으로 단시간에 진정될 수 있었으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의 다시 군대를 파병하여 주요 항구에 주둔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³³⁾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조선과 이어지는 전선 부설을 건의하였다.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전선이 필요하며 조선의 변란을 계기로 전선과 전보의 필요를 주장한 것이다.³⁴⁾

임오군란의 결과,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선의 부설과 함께 속지 및 변방 등 원거리로의 군함과 병력 수송에 대한 준비를 촉진 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듬해인 광서 9년(1883)의 이홍장은 임오군란 당시 오장경 군대의 수송 사례 언급하면서, 방위와 연병(練兵)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양해군 등 병력의 수송과 배치도 함께 언급하였다.³⁵⁾ 이러한 전선과 수송에 관한 주장들은 조선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결국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1870년대 말 속국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청 관료들의 주장이 임오군란으로 인해 급속도로 추진된 것이다.³⁶⁾

30) 「上奏」, 광서8년 8월 초5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4), 001-006쪽.

31) 「上奏」, 광서8년 7월 2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4), 006-101쪽.

32) 「上奏」, 광서8년 8월 13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4), 042-048쪽.

33) 「上奏」, 광서8년 8월 16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4), 054-062쪽. 이후 광서9년 이 전선 부설의 경과를 보고한 기록이 있다. 이 문건에서도 임오군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차 전보의 필요성 강조하였다(「上奏」, 광서9년 8월 20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5), 116-126쪽).

34) 「上奏」, 광서 8년 8월 18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4), 062-073쪽.

35) 「上奏」, 광서9년 2월 초10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5), 062-065쪽.

36) 「上奏」, 광서 9년 6월 15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5), 148-151쪽. 장패륜은 조선과 함께 월남은 운남·월(粵) 지역의 문호라는 점도 밝혔다. 아울러 군비 지출 등 재정의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었다. 조선으로의 재차 파병 및 주둔과 관련하여 장패륜은 조선이 등주(登州)·여순(旅順) 등 동북의 문호의

(2) “朝鮮又亂” - 갑신정변

임오군란 이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광서 10년(1884) 10월 17일 조선에서는 다시 갑신정변이 발발하였다. 19일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은 주방조선삼영대인(駐防朝鮮三營大人) 장광전(張光前), 오조유(吳兆有), 원세개(袁世凱)에게 긴급 공문을 보냈으며, 군대를 보내 반란을 평정해 줄 것을 청 측에 요청하였다.³⁷⁾ 같은 날, 김병시(金炳始) 역시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총사무위원 진수당(陳樹棠)에게 조회를 보내 협판 민영익(閔泳翊)이 부상을 입은 사실과 일본 병사들이 궁내로 진입하여 고종이 일본군의 호위를 받아 피신했음을 알렸다.³⁸⁾ 당시 김윤식과 남정철은 청군의 군영으로 가서 김옥균을 토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세개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일본군과 대치하였다. 결국 주동자인 김옥균과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 등은 일본 공사를 따라 피신했으며, 오조유는 병사를 이끌고 고종을 영접하는 시점을 마지막으로 하여 갑신정변으로 일어난 혼란은 일단락될 수 있었다.³⁹⁾

갑신정변의 발발 직후, 청 측의 관련 논의를 다시 되짚어 보자면, 같은 해 10월 23일 주조선독(駐朝鮮督) 오조유(吳兆有)는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주둔하였으며 조선에 출병하는 사안에 대해 양국이 서로 통지하기로 한 조항을 청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남·북양함대의 지원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⁰⁾ 정변 직후 청 측의 동향과 대응을 보면, 청은 사건 발발 초기부터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즉각적으로 일본이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방지하고자 한 의도가 여기서 드러난다.⁴¹⁾

10월 28일자 상유를 보면, 갑신정변 발발 직후 청이 가장 먼저 교섭에 나선 국가는 일본이었음이 보여준다. 당시 청 조정은 이홍장에게 일본 정부와 교섭하게 하고 오대징을 신속히 조선에 파견하여 정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⁴²⁾ 아울러 이홍장이 갑신정변의 원인 규명하고 문건을 보면, 이홍장은 본래 이하응의 잔당이 정변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중에서야 이하응의 잔당이 정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본과 결탁한 조신당(朝臣黨)이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였다.⁴³⁾ 이후 청 조정은 일본에 결탁한 조신당이 민씨 일족에 반대하고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정변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하였다.⁴⁴⁾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오장경 휘하 경군(慶軍) 3천 명을 복귀시켜 병력과 재정적 소모를 줄여야 함을 밝혔다.

37) 《朝鮮議政府右議政 沈舜澤→中國駐防朝鮮三營大人 張, 吳, 袁》, 『華案』 7-14, 光緒10년(1884) 10월 19일. 다른 공문이 照會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공문은 제목조차 정해지지 않고 급하게 발송되었다. 당시 상황이 시급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38) 「照會」(金炳始→陳樹棠), 光緒10년(1884) 10월 19일, 『華案』 7-14.

39) 高宗 21年 10月 19日, 『日省錄』(출처 : <http://db.history.go.kr>, 검색일자 : 2020년 8월 10일).

40) 「上奏」, 光緒10년 10월 23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66-067; 「上奏」, 光緒10년 10월 24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67-069쪽. 그리고 오조유의 다른 上奏에는 갑신정변을 “조선에서 다시 내란이 생겼다(朝鮮又有內亂)” 혹은 “조선에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朝鮮又亂)”로 지칭하였다. 이어서 원세개 등으로부터 연락과 조선 국왕이 尹泰駿을 파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홍장의 密奏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여창과 서승조가 밀탐한 사실과 오대징 등에게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7), 光緒10년 10월 25일, 071-072쪽).

41) 「電報」, 光緒10년 10월 26-27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75-077쪽, 086-086쪽.

42) 「上諭」, 光緒10년 10월 28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87-088쪽. 이 갑신정변 직후 당시 정황을 다루고 있는 문건은 조선에 관련한 문건 중 임오군란 이후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전보가 사용된 사례이다.

43) 베베르 역시 이홍장과 마찬가지로 조선 왕조의 국가체제의 타락과 관원의 부패를 갑신정변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벨라 보리소브나 박(최덕규·김종현 譯),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 동북아역사재단, 2020, 158쪽).

예부시랑 상현(尙賢)은 정변의 원인은 예전부터 정쟁이 횡행했던 조선의 정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할 필요하나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병사를 증파하는 것은 무익한 행동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다.⁴⁵⁾ 상현 역시 이홍장과 마찬가지로 조선 왕실의 왕족과 민씨 일족의 갈등에 정변의 원인이 있으며, 이 하응을 돌려보내 안정시켜야 함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동삼성의 보전을 위해 조선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선의 안정이 곧 변경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광서제 또한 “조선왕(朝鮮王)의 위난(危難)”은 임오군란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 민비(閔妃)가 민당(閔黨)을 만들어 이하응과 대립하면서 생긴 것에 발단이 있으며,⁴⁷⁾ 다른 문건에서는 정변의 원인이 조선 자체에 있는 것이지 일본과 청은 관련이 없는 사안임을 밝혔다. 조선의 정변이 청·일 양국 간의 충돌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광서제는 오대징을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이홍장에게 이하응과의 교섭을 지시하였다.⁴⁸⁾

참고로 이홍장은 월남 변경에서의 청불전쟁의 영향이 조선 내부에도 미쳐 동요가 발생했음을 밝히며 본래 대원군 이하응을 조선으로 돌려보내 국정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주장하였다. 또한 변경 문제의 대응책과 관련하여 사전에 만국공법과 독일과의 상호 동맹에 준수하여 변방의 사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청-프 전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비와 해방이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밝혔다.⁴⁹⁾

갑신정변 직후, 청 측 문건 가운데 조·청·일 삼국의 협상 과정을 다룬 북양아문의 전보를 참고하면, 조선 국왕이 오조유와 다케조에의 회담을 언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서상우와 뮐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협상에 임한 사실을 담고 있으며⁵⁰⁾ 여서창과 이노우에의 회담에서도 조선에서 청군의 철병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⁵¹⁾ 이와 관련하여 출사일본대신 서승조(徐承祖)가 보낸 전보에서는 청일 양국의 회담은 군대 주둔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일본과의 교섭에 난항이 있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⁵²⁾⁵³⁾ 조선

44) 「照錄」, 광서10년 10월 29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88~092쪽.

45) 「上奏」, 광서10년 11월 초1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103-103쪽.

46) 「上奏」, 광서10년 11월 초3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105-108쪽.

47) 「旨」, 광서10년 10월 28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93-093쪽.

48) 「旨」, 광서10년 10월 29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99-100쪽; 아울러 11월 초1일의 旨에서는 갑신정변 관련된 사무는 반드시 잘 처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旨」, 광서10년 11월 초1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0), 101-102쪽).

49) 「照錄」, 광서10년 10월 28일, 『光緒夷務始末』(108000077), 088-092쪽.

50) 「電報」, 광서10년 12월 초6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78), 056-057쪽.

51) 「電報」, 광서10년 12월 초9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78), 065쪽.

52) 「電報」, 광서10년 12월 12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78), 068-075쪽. 이듬해인 광서11년(1885)에 서승조는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와 조선의 문제가 재차 발생했을 경우, 중일 양국의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電報」, 광서10년 12월 12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78), 024쪽).

53) 「照錄」, 광서11년 3월 초1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78), 009~013쪽; 「旨」, 광서11년 3월 초3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81), 016~027쪽. 특히 광서11년(1885) 오대징과 이토 히로부미의 회담은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국의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볼 수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청이 자주국인 조선을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며, 조선에 전쟁이나 변란이 발발했을 경우 양국이 파병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청 조정은 조선에서의 철병 문제와 관련 지시를 담고 있는데 일시적인 철병은 가능하나 영원히 병력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양국은 합의하였으며 국서를 통해 협의하였다. 국서는 이 문서의 019-021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철병 문제에 관해 김윤식의 정문(正文)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의 의도는 청을 철군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홍장은 갑신정변의 원인이 조선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케조에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上奏」, 광서11년 3월 초7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81), 032~038쪽).

의 문제가 청에게 있어서는 실제 일본과의 각축이었던 것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갑신정변에 대한 청측의 대응을 보면 일본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조선의 내정을 안정 시키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⁵⁴⁾

(3) 속국 보호와 청군의 주둔 문제

현실적으로 청 조정은 공법과 실력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여 속국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진계태(陳啓泰)는 “중국이 변속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中朝保護藩屬, 不能不助其聲勢)”라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 그리고 유구를 묶어 이 속국을 보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⁵⁵⁾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청 조정 내에서는 조선과 월남 등 주변국을 속국으로 확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진계태뿐만 아니라 서상, 짐보침, 오대징 등의 상주에서도 조선이 무너지면 곧 순망치한(淸)의 위기가 닥치므로 조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였다.⁵⁶⁾

임오군란의 이듬해로 돌아가 광서 9년(1883) 5월 장패륜은 월남-프랑스, 서북-러시아, 일본-류큐·대만 문제, 영국-마카오 문제 등 변경의 정세가 일익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각국 간의 통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관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 주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당시 청에게 있어 조선의 문제는 곧 같은 속방인 월남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주장으로, 당시 조선과 월남을 둘러싼 속방의 문제는 변경과 속방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⁵⁷⁾

이러한 논의는 자연히 군사적 대비와 속국에 대한 주둔 문제로 이어졌다. 임오군란의 진압을 위해 조선에 파견된 오장경은 등주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이홍장에게 건의하였다. 이홍장은 곧 장수성과 상의하여 조선은 북으로는 봉천, 길림과 이어지며, 남으로는 연태로 이어지는 요충지이기에 조선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⁵⁸⁾ 이홍장은 조선에 군사를 주둔시키는 방안은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러시아 등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였다.⁵⁹⁾ 같은 해 9월이 되면 부산과 인천을⁶⁰⁾ 주둔지로 언급할 정도로 청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는 일이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⁶¹⁾ 그러나 군대 주

54) 「上奏」, 광서11년 5월 28일자, 『光緒夷務始末』(108000083), 052-054쪽. 아울러 성경 예부에서는 조선 국왕의 자문을 전달하였다. 이 조선의 자문은 서상우와 밀렌도르프를 정·부사로 일본에 파견한 것과 다시 일본과 조정하는 것을 협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

55) 「河南道監察御史陳啟泰請設法保衛越南以固邊防折」(광서9년 4월 11일), 『淸光緒朝中法交涉史料』제4권, 8쪽;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6), 광서9년 9월 초9일, 038~044쪽.

56)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건은 다음과 같다.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7) 광서9년 8월 초10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7), 089~097쪽; 「上奏」, 광서9년 8월 12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7), 098~104쪽; 「上奏」, 8월 20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7), 126-130쪽; 「上奏」, 광서9년 8월 20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7), 134-145쪽; 「上奏」, 광서9년 9월 20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8), 068-071쪽; 「上奏」, 광서9년 10월 초7일, 『光緒夷務始末』(108000068), 137-140쪽.

57)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5), 광서9년 5월 17일, 93-96쪽. 월남 사안의 중요성은 이홍장에 의해서도 언급된 바가 있으며, 곧 해방론과 연관된 문제로 각료들에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함풍 8년(1858)의 조약과 동치 12년(1873)에 있었던 프랑스와의 충돌을 언급하면서 월남은 청의 속방임을 재차 천명하기도 하였다(「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5), 광서9년 5월 17일, 096-109쪽).

58)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8), 광서9년 9월 16일, 064-068쪽. 이에 광서제는 각 변경 장군 등에게 변방 사무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하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上諭」, 『光緒夷務始末』(108000070), 광서10년 3월, 143-156쪽).

59)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0), 광서10년 4월 19일, 176-182쪽;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4), 광서10년 8월 14일, 066-084쪽.

60)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5), 광서10년 9월 초5일, 011-012쪽.

돈을 주둔 시킬 경우 일본과 체결한 천진 조약을 위배하는 마찰이 생길 것이 분명하고 주둔 비용 역시 문제가 되었기에 청은 한성에만 군대 일부를 주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조선 문제의 대응은 각국과의 교섭을 통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예부상서 서상(徐相)은 당시 속국에 대한 기존 정책과 조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프 전쟁과 임오군란을 예로 들어 기존 제도가 실제 속국의 내란과 속국에 대한 타국의 간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⁶²⁾ 이어서 진보침 또한 프랑스-월남 사안으로 촉발된 속국 및 변경 문제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의 문제는 조선이라는 지역에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본토와 직결된 변경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⁶³⁾ 아울러 예문위 역시 속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⁶⁴⁾ 오대징 또한 동남부 해안의 방어 태세 정비와 속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⁶⁵⁾ 속국 조선의 문제는 곧 본토 동삼성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확대된 것이다.

2. 조선 문제의 국제 현안화

(1) 조선-러시아 관계에 대한 청의 대응

조선에서 일어난 두 차례 변란은 청이 조선과 관련된 각국의 동태를 주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청은 이후 조선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타국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과 명분을 마련해야 했다. 무엇보다 조선에서 일본 군대와 직접 대치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1885년 5월 황체방(黃體芳)은 광서제에게 속국 정책에 관한 상주를 올리면서 조선의 동요는 곧 조선에 대한 청의 입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조선에 타국 군대가 주둔할 경우에는 본토가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⁶⁶⁾ 황조(黃照) 또한 갑신정변으로 조선 문제는 곧 일본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자명해졌으며 조선은 현재 내부 문제로 언제 다시 동요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니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이 각국과 통상관계를 맺게 하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가 조선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⁶⁷⁾

1888년에 이르면 이홍장은 조선이 타국에 사절을 파견한 사안 관련하여, 영국과 러시아 측에서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광서 14년

61) 광서10년 전후의 대만 방비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5), 9월 13일, 080-093쪽, 099-105쪽;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6), 광서10년 9월, 001-004쪽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2)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7), 광서9년 8월 12일, 098-104쪽.

63)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7), 광서9년 8월 20일, 126-130쪽.

64)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8), 광서9년 9월 16일, 068-071쪽; 上諭, 083-086쪽.

65)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8), 광서9년 10월 초7일, 137-140쪽.

66)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83), 광서11년 5월 16일, 079-088쪽.

67)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84), 광서11년 6월 23일, 072-086쪽. 이밖에 사후 처리와 관련한 문건으로는 광서11년 8월11일자 2건 17일자 1건이 있다.((108000086), 002-003쪽, 003-006쪽, 006-009쪽). 이 문건은 조선 국왕의 자문과 사절의 파견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오조유의 4년간 노고를 언급하면서 갑신정변 처리와 관련한 지시도 내리고 있다. 또한 독일 외무부와의 교섭과 조선 사절의 호송 관련한 사안과 들에서는 조선사절 관련하여 원세개의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1888) 5월 초6일, 이홍장은 청과 조선의 속국 관계는 서로 그 정사(政事)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며, 조선과 청의 관계는 서구의 속국 사례와는 다르고 서구의 예를 조선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마찬가지로 청과 조선의 관계를 공법에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관계로 만들어 타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였다.⁶⁸⁾

그러나 조선에 서구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권도하는 방식은 국제정세의 복잡한 상황에 맞물려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홍장은 러시아가 군대를 한천(漢川) 부근까지 진출시켰다는 사실과 조선과 러시아의 육로 통상 협상에 관련도 보고하면서 동북 지역과 조선에 미칠 러시아의 영향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⁶⁹⁾ 광서 14년(1888) 9월 초6일 유서분(劉瑞芬)의 전보에는 러시아가 청과 같이 조선을 ‘함께 보호(同保)’하고자 함에 청이 거절한 사실과 이에 영국이 청 조정과 긴밀히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영국은 러시아가 동방에서 이익을 얻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도를 직접 드러내었으며,⁷⁰⁾ 또한 러시아가 현재 조선과 조약 체결하여 조선을 보호함은 곧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러시아가 잠식할 우려가 생길 수 있었다.⁷¹⁾

특히 청은 일본과 러시아의 접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광서 14년 9월 12일의 원세개가 보낸 전보는 러시아 해삼위(海參威)에 일본 대신 2명이 도착하였으며, 일본 측 인원과 러시아 장군이 영접한 사실을 보고하였다.⁷²⁾ 특히 같은 해 7월에 러시아와 조선 간에 《조로육로통상조약(朝露陸路通商條約)》이 체결되고 난 이후 청 조정의 관련 보고 가운데 러시아와 조선과의 관계에 관한 문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⁷³⁾ 이에 청 조정은 원세개로 하여금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해 즉각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원세개는 곧바로 조병직과 회담에 나서기도 하였다.⁷⁴⁾

이듬해인 광서 15년(1889) 6월 이홍장이 군기처에 보낸 전보에는 조선이 러시아와 토문강을 통행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러시아인들이 토문강, 혼춘 일대에 진입하여 조선의 경계로 진입하는 것도 보고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 역시 원산, 부산 일대를 점유하면서 당시 윤선

68) 「照錄」, 『光緒夷務始末』(108000091), 광서14년 5월 초6일 162~168쪽. “中朝之待屬國向不管其政事, 與泰西屬邦情形迥異, 似難援西例相繩”(163쪽).

69)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1), 광서14년 5월 22일, 258쪽.

70)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2), 광서14년 9월 초6일, 085쪽 :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2), 광서14년 9월 21일, 103쪽.

71)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1), 광서14년 9월 21일, 104쪽. 이 문건은 영국 외무부에서 고지(告知)를 인용하고 있는 유서분의 다른 보고에 따르면 주러시아 영국대사가 유서분에게 특별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한영국공사가 이 사실을 두고 조선 관원을 힐문한 사실도 있다.

72)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1), 광서14년 9월 12일, 087쪽.

73) 이증철은 이 사안을 원세개에게 8월 27일에 알렸다. 「信函」(李重七 → 袁世凱), 『華案』第15卷, 光緒14년(1888) 8월 27일, 이에 관한 원세개의 보고는 광서14년 7월 15일자 李鴻章의 電報(『光緒夷務始末』(108000091), 228쪽)에서 볼 수 있다. 총리아문은 같은 해 9월 12일자에 駐德奧俄荷出使大臣 洪鈞에게 러시아가 청과 같이 조선을 同保하고자 한 사안과 청이 영국에 접촉하는 사안에 관한 전보를 보낸 바 있다(『光緒夷務始末』(108000092), 087쪽). 이 중에는 당시 주조선 총상무위원으로 조선에 있었던 원세개가 러시아인들이 조선 점령도를 점거한 사안과 원산, 부산 등지에서 러시아의 통행 및 영향을 보고한 것도 있다. 이 사안에 관해 원세개와 조선 관원의 필담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선 관원은 김윤식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병직이 점령도 문제로 러시아와 담판. 청과 일본 조계 사이의 공백지에 대해 논의하였다(李鴻章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3), 광서15년 2월 11일, 15일, 18일), 096-097쪽, 097쪽, 106쪽).

74) 「信函」(원세개 → 조병직), 『화안』 15卷, 光緒14년(1888) 9월 14일, 또한 다른 문건에서는 러시아와 조선의 육로 통상 조약 관련한 사안과 부산의 청과 일본 조계 사이의 ‘공백지(空白地)’의 조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3), 광서15년 2월 26일, 238쪽.).

의 원료가 되는 석탄을 저장할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절영도의 조차 역시 석탄 저장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보고하였다. 조선이 러시아에 부산과 원산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절영도 조차는 거절되었음을 보고하였다.⁷⁵⁾ 같은 해 6월 15일, 16일자 이홍장의 전보에서는 조선과 러시아가 토문강 일대 통행 문제 논의한 것과 조선 국왕의 연락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원세개가 조선 국왕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은 이후 중국에 자문으로 보고하지 않음을 지적한 사례는 원세개가 조선의 외정에 간섭한 방식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⁷⁶⁾

(2) 동삼성 군비·국경 문제와 러시아와의 각축

조선에서의 정변과 러시아에 대한 청의 경계는 외교 상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었다. 앞서 광서 10년(1884) 양국의 회담은 점차 양국 군대의 조선 주둔 문제와 전선 부설 등의 안건으로 압축되고 있었으며, 12월에 광서제는 남쪽으로는 복주, 하문 일대의 군대를 정비하고, 상황에 따라 동쪽으로는 조선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북양아문에 지시하였다.⁷⁷⁾

이듬해인 1885년에도 청은 러시아의 동향에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있었다.⁷⁸⁾ 영국이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한 사례를 들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조선에도 개입할 것임을 경계하였다.⁷⁹⁾ 이는 곧 군사적인 대비로 이어졌는데, 광서11년(1885) 5월 오대징은 유사시 군대 파견과 주둔을 염두에 두고 조선과의 경계인 봉천과 봉황성 일대를 조사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러시아가 동삼성을 노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요충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방어를 위해서는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⁸⁰⁾

오대징은 조선과 봉천 봉황성 일대의 방어선 관련하여 중강·구련성 일대 전선 부설과 비용을 언급하면서 조선-봉천-여순을 잇는 전선 부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⁸¹⁾ 이후 광서 11년(1885) 5월의 문건에는 봉천과 조선을 연결하는 전선 부설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전선 부설과 관련 장정 조항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먼저 부산까지 전선을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전선의 부설 비용과 관련하여 조선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였다.⁸²⁾

또한 광서 17년(1891) 길림장군 장순(長順)은 삼성·훈춘 등지 방영(防營)의 정비 문제 및 포대의 배치와 관련한 건의안을 올렸다. 장순은 이 지역이 러시아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 지역이며, 러시아와 조선이 통상장정을 맺은 이후 동삼성으로의 통행이 급증하고 이 지역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보고하였다.⁸³⁾

75)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3), 광서15년 6월 초2일, 초6일, 272-273쪽, 273-274쪽, 274쪽, 277쪽. 이와 관련한 조선 측의 문서는 『華案』의 해당 기간 문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 당시 이홍장은 원세개에게 민감한 시기이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산 종이에 대한 관세 부과 사안도 다루고 있다.

76)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3), 광서15년 6월 15일, 16일, 279-280쪽, 280쪽.

77) 「旨」, 『光緒夷務始末』(108000078), 광서10년 12월 27일자, 141쪽.

78) 「旨」, 『光緒夷務始末』(108000083), 광서11년 11월 초9일, 185-190쪽.

79)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87), 광서11년 11월 초9일, 193-194쪽.

80)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83), 광서11년 5월 21일, 041-042쪽.

81)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9), 광서11년 정월 초6일자, 022-023쪽.

82)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83), 광서11년 5월 12일, 013-018쪽.

83)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97), 광서17년 11월26일, 184-188쪽.

이와 관련하여 광서14년(1888) 이홍장은 조선에 전선 부설을 위한 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청이 조선을 보호·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이 이미 조선에 전선을 부설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홍장은 청도 조선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⁸⁴⁾ 이후 조-청 전선 부설의 실행은 중월 감계 사안과 관련한 광서11년 12월 초2일자 상유에서 이홍장과 길림장군 희원(希元)에게 길림과 봉천 지역의 전선 부설 관련 지시한 사실에서 청과 조선 간의 전선 부설이 이미 실행에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⁵⁾

아울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조선·청·러시아 간의 국경 문제는 청 측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⁸⁶⁾ 광서11년(1885) 3월 길림장군 명안(銘安)은 길림·회녕·영고탑 등지의 경계를 조사한 것을 보고하였으며, 이전 혼춘 일대에서의 통상과 관련하여 조선 측 어윤중과 회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장군의 입장을 전하면서 동삼성 변경의 안정을 위해 조선과의 감계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⁸⁷⁾ 특히 갑신정변을 전후로 하여 청-러 국경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광서 11년 3월 11일 혁혼은 상주에서 길림 일대 경계비와 관련하여 이 일대가 이전 조선 유민이 간척한 땅이며 현재 혼춘 일대에는 러시아인들이 점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⁸⁸⁾

그리고 동삼성의 군비 조정과 국경 조사는 러시아와 일본을 의식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과의 봉천과 길림 지역의 무역 장정을 협의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이 암암리에 통행하고 있었다.⁸⁹⁾ 이에 오대정은 길림 일대의 정계비 관련하여 우수리강과 송아찰하(松阿察河) 수백 리 이내의 물줄기를 경계로 할 것을 러시아와 협상하였으며, 양국 관원이 공동 조사한 것을 보고하였다.⁹⁰⁾ 또한 이 지역에 월경하는 조선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관원을 파견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호적에 편입해야 함을 건의하였다. 또한 조선 관원이 국경을 넘어 이 지역의 조선인에게 세금을 징수한 사실과 이를 양국 관원이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⁹¹⁾

1888년 8월 《조러육로통상장정》의 협의 이후에는 동삼성 일대에 러시아와 조선 상민들의 통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조선인과 러시아인의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경 부근의 치안이 불안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 영향은 인접해 있는 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과 러시아의 장정으로 인해 동삼성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부상되었다.⁹²⁾

84)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71), 광서14년 4월 17일, 154-157쪽.

85) 「上諭」, 『光緒夷務始末』(108000087), 광서11년 12월 초2일, 216-219쪽.

86) 이 감계에 관해서는 김형중,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87)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65), 광서9년 2월 초3일, 045-047쪽.

88)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81), 광서11년 3월 11일자, 077-082쪽.

89)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82), 광서11년 4월 초1일, 001-003쪽.

90)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82), 광서11년 4월 초1일, 016-021쪽.

91) 「上奏」, 『光緒夷務始末』(108000095), 광서16년 2월 18일, 021-027쪽.

92) 「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3), 광서15년 2월 20일, 21일, 186쪽. 한편 광서15년(1889) 2월 20일, 21일의 이홍장의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도 조선에 사절을 보내 러시아와 조선의 육로에서 나오는 이익을 자신들도 공유하고 싶다고 접촉하였으며, 조선에 파견하는 선교사들에게 호조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은 원세개를 통해 북양아문에 즉각 보고되었다. 이후에도 조선과 프랑스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프랑스 영사가 조선 외서에서 파견한 役吏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사실도 있었으며, 조선 측이 공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프랑스 공사가 항의한 사안이 있었다. 프랑스 영사가 조선 외서에서 파견한 심부름꾼의 사안과 관련하여 만국공법의 3권 16節 언급한 사안과 이러한 갈등에 대한 조선 민중이 분노한 반응 등등은 원세개에 의해

IV. 나오는 말

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국 청의 우월적인 지위였으며, 타국의 간섭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⁹³⁾ 그러나 19세기 전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속국에 대한 정책에는 중대한 방향 전환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속국의 범위와 정의 역시 이전 의례와 명분을 중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속국이 가진 지정학적·전략적인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 결과, 광서연간 해방론이 가지는 특징은 청 본토의 보전을 위해 속국인 조선을 ‘동북의 문호’로 설정하고 대만과 월남 등지를 ‘남양의 문호’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군비를 갖추는 목적에 있었다. 당시 이홍장을 비롯한 청의 관료가 조선 문제를 보는 시각은 조청 관계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었으며 이러한 정세 속에서 변경과 속국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청 조정 내에서 다루어졌던 조선 문제와 관련 논의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삼성(吉林, 奉天, 黑龍江) 및 중국 동부 연안의 주요 거점(煙台, 登州, 萊州)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동북의 문호(東北之門戶)’로서 조선을 언급하는 경우이다. 특히 조선은 유구처분과 목단사 사건(이후 청이 일본을 위협 대상으로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청 각료와 길림, 봉천 등지의 지방장군에 의해 군사와 교통에서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두 번째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과 관련이 있는 사례이다. 조선에서 두 차례 정변이 발발한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타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조선을 자국의 속방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간섭을 전개하였다. 특히 1882년 임오군란을 기점으로 하여 청 조정에서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곧 해방론의 노선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청 조정의 논의 속에서 ‘속국’ 조선은 동삼성의 문호로써 새로운 중요성이 부여되었으며, 조선 문제는 조청 양자 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러시아·일본과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 현안이 되었다.

반면 조선의 경우, 청은 서구국가와의 통상과 교섭을 지도하면서 조선이 자연스럽게 군세 지법의 질서에 편입되어 스스로 보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 내란이 연달아 발생하였으며 일본과 러시아가 개입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청은 외교를 권도하는 기존의 속국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간섭에 나서게 되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결과는 조선에 대한 청의 정책과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지역의 군비를 재조정하고 국경을 확정하는 작업 등 청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청의 속국 정책은 공법(국제법)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그 목적과 본질은 전통적인 관계와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 조선의 내·외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조선 왕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조선 정치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또한 조선 내에서 각국의 세력균형을 붕괴시켰으며 갈등만을 고조시켰다. 결국 청의 정책은 청일전쟁이 발발하

청 조정에 즉각 보고되기도 하였다(『電報』, 『光緒夷務始末』(108000093), 광서15년 5월 16일, 20일, 256쪽, 257~258쪽).

93) 김기혁, 『근대 한·중·일 관계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4쪽.

면서 실패로 판명되었다. 청은 조선의 내정을 안정시켜 변방을 보전하려고 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청일전쟁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상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1899년 속국이었던 조선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평등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국교를 다시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사료

- 國家淸史委員會 編, 『李鴻章全集』, 安徽教育出版社, 2007.
- 沈雲龍 主編,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文海出版社, 1970.
- 王彥威 編, 臺灣 故宮博物院 文獻館 所藏, 『光緒籌辦夷務始末』 (108000049-117).
- 王彥威 纂輯, 王亮 編, 王敬立 校, 『淸季外交史料』, 書目文獻出版社, 1987.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道光咸豐兩朝籌辦夷務始末補遺』,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66.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編, 『日案』 1-24(圭 17724, 25-v.1-23, 24), 1883-1905, 奎章閣韓國學研究員 所藏.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編, 『華案』 1-41(圭 18052-v.1-41), 1883-1905, 奎章閣韓國學研究員 所藏.

연구서

- 권석봉, 『청말 대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1986.
- 권혁수, 『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研究 -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 백산자료원, 2000.
- 김기혁, 『근대 한·중·일 관계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종원 외, 『조선후기 대외관계 연구』, 한울, 2009.
-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陳偉芳(권혁수 역), 『淸·日 甲午戰爭과 朝鮮』, 서울 : 백산자료원, 1996.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편,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동북아역사재단, 2020.
- 벨라 보리소브나 박(최덕규·김종헌 譯),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 동북아역사재단, 2020.
- 오카모토 타카시,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동북아역사논총』 32, 2011.
-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측: 대민 수교 관련 수신사 기록(1880)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 전해종,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1970.
- 커크 W.라슨(양희웅 옮김), 『전통·조약·장사』, 모노그래프, 2021.

- 岡本隆司,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 鈴木智夫, 『洋務運動の研究』, 汲古書院, 1992.

연구논문

- 김봉준, 「19세기 말 朝淸 「奉天邊民交易章程」의 역사적 의의(1882-1883) - 章程의 協商過程

- 과 條款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91, 2020.
- 김형종, 「19세기 근대 한·중관계의 변용」, 『동양사학연구』 140, 2017.
- 이동욱,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史叢 9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9.
- 이원준, 「1940년대 南京建都論과 근대 중국의 海防論」, 『중국근현대사연구』 85, 2020.
- G.F.Kennan, “History and Diplomacy as Viewed by a Diplomatist”, *The Review of Politics* Vol. 18, No. 2 (Apr., 1956)

웹자료

- 『高宗實錄』 (<http://sillok.history.go.kr/>, 2020년 8월 10일 검색)
- 『고종시대사』 및 日省錄서(<http://db.history.go.kr>, 2020년 8월 10일 검색)

<19세기 말 청 속국 정책의 변화와 ‘문호(門戶)’ 조선> 토론문

손성욱(선문대)

본 발표는 1870~1880년대 중반까지 청의 해방론 논의와 속국 정책의 변화를 조선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내며, 조선을 순망치한이라는 표현보다 ‘東北의 門戶’로 설명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光緒籌辦夷務始末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참신하다. 19세기 후반 청의 해방론과 조선 정책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참신함과 독창성 있는 연구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진일보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서론에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이 청의 내정, 조선 정책, 대외정책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이 부분의 각주로(각주 3) 조지 케년의 “History and Diplomacy as Viewed by a Diplomatist”를 제시하고 있지만, 케년의 글이 본 연구목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 외교관의 시각에서 역사와 외교를 본다는 점에서 이것은 구조적 측면보다 개인의 층위에 중점을 두어 논지를 전개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본고의 논지 전개를 볼 때 그러한 면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발표자의 의도가 궁금하다.

2. 각주 4에서 발표자는 커크 라슨의 청이 조선에 제국주의를 시행했다는 설명을 평하며, 청이 벤치마킹한 영국의 제국주의와 달리, 청의 제국주의는 그 목표가 기존 질서 유지에 있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제국주의”였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만으로 제국주의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제국주의”라는 용어의 정확히 의미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 반대 성향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할지 고견을 구한다. 이론적 근거가 있는 표현이라면 관련 문헌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거 같다.

3. 3페이지에서 광서 연간 초기의 해방론을 “守在四夷”의 안보 관념이 확장되는 형태로 설명하지만, 부가 설명이 없어 “守在四夷”의 안보 관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천하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세동점이 거세지면서 새롭게 구축된 관념인지 설명을 요한다. 만약 전통적 관념의 연장선이라면, 이 시기 청의 조선 정책을 비롯한 속국 정책 변화에 있어 근대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하다.

4. 본 발표는 청이 대만을 남양의 문호로 조선을 동북의 문호로 설정하고, 속지와 속국의 틀 속에서 두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한 것을 광서 연간 해방론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고의 핵심 키워드인 해방론을 중심으로 청의 변강정책을 볼 때 속국과 속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속국과 속지의 공통분모인 ‘문호’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경계는 더욱 모호해진다. ‘문호’라는 용어를 구사한 것은 청이 관문을 막아 본토의 안위를 모색했다는 의미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속국과 속지의 영향력 강화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속국과 속지정책은 변강정책의 일환으로

동일한 목표를 갖기에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본 발표가 속국과 속지를 함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청의 속국과 속지 정책에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인지 발표자의 고견을 청한다.

5. 조선을 ‘동북의 문호’로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그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청 관료들이 사용했다고 언급할 뿐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5페이지에서 윤귀총독 유장우의 상주문을 언급하며 설명하는데, “청의 문호인 조선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는 서쪽으로는 미얀마, 동쪽으로는 조선을 청의 군현(郡縣)으로 삼는다면 변경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조선은 성경(盛京) 지역의 안보가 달린 문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여기서 조선은 동북의 문호가 아닌, 원문 그대로 하자면 ‘성경의 문호(盛京之門戶)’이다. 동북의 문호와선 층위가 다르다. 본 토론자는 본고가 인용한 『光緒籌辦夷務始末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상주문이라 생각되는 글을 『劉武慎公遺書』에서 확인해 보면, 유장우는 ‘성경의 문호’라는 말은 언급하기 전에 “臣以爲邊省者中國之門戶, 外藩者中國之藩籬, 樹藩籬所以衛門戶, 衛門戶所以固堂室, 藩籬陷則門戶危, 門戶危則堂室震”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藩籬와 門戶는 구분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유장우의 언설을 통해 조선을 동북의 문호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藩籬와 門戶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의 조선 인식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만약 청 관료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그것은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본고에서 강조하는 해방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선은 동북의 문호가 아닌 ‘남양의 문호’라는 말처럼 ‘북양의 문호’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맥락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동북의 문호’라는 표현은 조정 간 변경지역 즉 육로상 변경에만 국한되어 이해되기 쉽다. 이를 확대해 해방론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황해를 둘러싼 개항장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앞선 4, 5번 문제는 본 발표가 1874~1875년 청에서 있었던 海防論과 塞防論 논쟁의 맥락을 두텁게 쌓지 않고, 광서 연간 해방론의 특징을 속국과 속지의 틀 속에서 이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급하게 설명해 생긴 의문이다. 3페이지에서 문석(文碩)의 상주문을 인용하며 속국(미얀마, 베트남, 유구)과 속지(서장, 대만)의 범주가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서장은 塞防論의 맥락에 있고, 대만은 海防論의 맥락에 있는데 이 둘의 전략적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조정 관료의 주장은 속국과 속지의 범주화를 시도해 정책의 방향을 정했다기보다 변강 보호를 위해 언급된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주장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해방론의 맥락에서 속국과 속지의 틀로 범주화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7. 5페이지 한림원 강학사 진보침의 상주문을 설명하면서, 진보침은 당시 변방 위기와 국제정세 속에서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당시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았다고 기술한다. 일시동인의 범위가 모호하다. 조선, 류큐, 베트남 등 조공과 책봉이 모두 이루어진 국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천하론에 따라 입조하는 모든 조공국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시동인’은 천하관을 드러내는 외교적 수사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대외정책의 기조로 제시한다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8. 본 발표는 청 조정 내 논의에 중점을 두며 많은 관료의 상주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동북 지역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속국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조선 내 발생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의 사건으로 청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권도하는 수준에서 적

극적 간섭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 연구성과의 주장들과 다르지 않지만,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수의 상주문을 이용했다는 것이 차별점을 보인다. 하지만 상주문의 내용 제시가 조선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고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료의 참신성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다. 상주한 관료들의 정치적 지위, 성향, 네트워크 등이 함께 다루어지고, 그들의 정치행위 속에서 그들의 언설이 분석되어야만 청 조정에서 조선 정책을 비롯한 속국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밝힐 때 본고의 학술적 의의가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언급되고 있는 陳寶琛, 張佩綸, 黃體芳은 寶廷과 함께 ‘淸流四諫’이라 불렸던 이들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런 설명이 전무하다. 청류와 양무 정치 세력 간의 속국 정책에 대한 차이와 정치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9. 본고는 타이완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미간 자료인 『光緒籌辦夷務始末』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서론에서 『淸季外交史料』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각주에서 2차례 등장할 뿐이다. 발표자는 이미 <『광서주판이무시말(光緒籌辦夷務始末)』·『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의 해제(解題)와 조선 관련문건>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光緒籌辦夷務始末』의 사료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본 토론자도 그 가치를 인정한다. 문제는 본 발표가 대부분 『光緒籌辦夷務始末』을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첫째, 『光緒籌辦夷務始末』은 원 당안 사료가 아니라, 王彥威이 정리한 자료이다. 이미 공간된 『청계중일관계사료』·『광서중일교섭사료』에 비해 그 분량도 적다. 王彥威의 ‘의도’에 따라 사료를 읽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기타 사료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활용해야 하며, 다른 사료를 통해 『光緒籌辦夷務始末』에만 수록된 내용을 다각도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료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사료가 있을 때, 공간된 다른 사료와 함께 표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가 기발표 논문에서도 언급했듯 『光緒籌辦夷務始末』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중복 사료의 출처를 밝혀 다른 연구자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곳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은 원문을 제시해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발표자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상주문의 경우 공간된 사료집이나 문집에 상당수가 이미 수록되어 있다. 셋째, 새로운 사료의 활용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연구의 ‘새로움’을 제시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사료를 구사한다면, 소재주의나 신사료 발굴에만 매몰되는 연구의 파편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표자께서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光緒籌辦夷務始末』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10. 7페이지 임오군란을 설명하는 절에서 1882년 6월 조선에서 변란이 일어나자 장수성, 등기 등이 상주를 올려 즉각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이어 송기 역시 군함 파견을 건의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각주의 상주문은 8월 초5일, 7월 26일이다. 1882년 6월이 음력을 의미하는지 양력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발발 일자를 볼 때 음력 6월이다. 그렇다면 거의 두 달 가까이 뒤에 올려진 상주문이 즉각적인 상주인지 의문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기존 연구는 청 내부에 파병을 둘러싼 고민이 있었고, 김윤식과 어윤중 등이 청의 파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청 측 문건을 살펴보면, 청 관료들은 임오군란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소상히 다루면서 ‘조선난당(朝鮮亂黨)’에 관한 경과보고와 함께 변란의 주요 인물로 이하응, 김윤식, 어윤중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김윤식과 어윤중을 임오군란의 주모자로 설명하는 느낌이다. 당시 청 측 문건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1. 8페이지에서 이홍장은 본래 갑신정변의 주모를 이하응으로 인식하다가, 이후 일본과 결탁한 조신당(朝臣黨)이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조신당(朝臣黨)’이 사료 용어인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각주 43이 달려 있지만, 베베르도 이홍장과 같이 인식했다고만 언급할 뿐, 이홍장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13페이지 6번째 줄에서 “원세개가 조선 국왕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은 이후 중국에 자문으로 보고하지 않음을 지적한 사례는 원세개가 조선의 외정에 간섭한 방식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각주 76을 보면 ‘전보’로 원세개가 이홍장에게 보고한 내용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세개가 이를 문제 삼으며 이홍장에게 보고한 것은 ‘외정 간섭’이라 보기 힘들고, 만약 원세개가 고종을 질책한 내용이라면 명확하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본 발표문 전반에서 보이는 문제인데, 다수의 전보나 조록 등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청 조정 내부의 여론 형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을 알려면 이를 명확히 제시해 상호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13. 각주 1에서 청의 조선 정책에 관한 선구적 국내 연구가 많으면서 “대표적인 연구서만 열거해보고자 한다”고 했는데, 주요 논저가 빠져있어 ‘대표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해방론에 관한 논문도 설명 없이 나열했다. 하지만 연구논저의 제시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특히 중국학계의 해방론 논문이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연구인지 의문이다.
14. 6페이지에서 하여장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게 均勢之法의 원칙과 실효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이홍장 역시 하여장과 같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각주 29에서 제시한 사료를 찾아 확인해 보면 하여장과 이홍장이 생각이 왜 같은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 양자의 생각이 같다고 보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
15. ‘均勢之法’이란 무엇인가? 15페이지에서는 “반면 조선의 경우, 청은 서구국가와의 통상과 교섭을 지도하면서 조선이 자연스럽게 균세지법의 질서에 편입되어 스스로 보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언급하는데 ‘균세지법의 질서’란 무엇인가? 세력균형을 뜻하는 균세를 의미하는가, 이를 포함하며 다른 층위의 의미를 내포하는가? ‘균세지법’은 만국공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6. 안남/월남/베트남을 일관성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및 『國勢調査』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화교인구: 경기도와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한상협¹

1. 머리말

2. 방법론의 재조명

: 식민통치의 기초자료인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國勢調査』

3. 비교분석을 통한 화교 인구 추산

- 1) 전체인구 조사결과 비교
- 2) 중국인의 道別 조사결과 비교
- 3) 중국인의 府・郡別 조사결과 비교

4. 맺음말

[소결] 1920년대 화공 특히, 계절성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인구 추계를 진행한다. 우선 화교인구 추계를 위한 중요자료인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國勢調査』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계절성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추산하고, 20년대 재한 화교의 분포와 특징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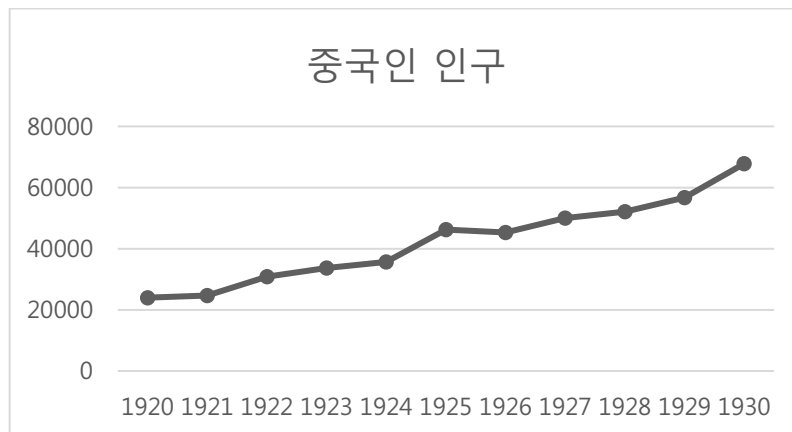
1. 머리말

식민지조선의 화교인구는 1910년 11,818명을 기록한 이래 1942년 82,61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식민지기 30여년 중에도 20년대의 화교인구는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식민지시기 대표적인 통계자료인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따르면, 화교인구는 1920년 23,981명을 시작으로

¹ 중국 清华大学历史系 박사과정생.

1925년 46,196명, 1930년에는 67,794명에 이르렀다. 이는 10년만에 4만여명이 증가한 기록적인 인구 성장이었다. 1920년대 화교인구의 추이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중국인 인구²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전체인구는 17% 증가하였지만, 같은 시기 화교인구는 세배 가까이 증가하여 182%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화교인구의 급증은 식민지조선의 인구구성 및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 발생한 배화폭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화교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화교의 인구 또한 화교연구의 일부로서 계속 연구되어왔다. 화교인구의 추산과 관련하여 본다면, 중국의 대표적인 조선화교연구인 『朝鮮華僑史』에서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이하 『統計年報』)를 활용하여 1920년의 화교인구를 21,380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최근 일련의 연구들도 이러한 조선화교사의 인구통계를 활용하고 있다.³ 한국의 대다수 화교 연구들 또

²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각 년도(1920-1930년).

³ 중국의 대표적인 재한화교 연구로는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社, 1991가 있다. 이 연구 이후 崔承現이 「轉折中的旅韓華僑」, 『華僑華人歷史研究』, 1999에서 『1883年-1893年北洋大臣李鴻章致清總理衙門文』, 『清季外交史料』, 1906年, 楊昭全의 위 연구 등을 참고하여 재한화교의 인구를 새롭게 추산하였지만, 1920년대에 있어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수치상의 큰 차이는 없다.

한 『統計年報』를 활용하여 인구를 추계하고 있으며⁴, 일본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화교연구인 야스 이 산기치(安井三吉) 『제국일본과 화교: 일본, 타이완,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統計年報』를 활용하여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⁵ 위 연구들은 대부분 재한화교 인구통계의 근거자료로써 『統計年報』를 활용하고 있어 인구추계결과가 대부분 동일하다.

이 중, 2008년 이정희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재한화교의 자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⁶ 이정희는 위 연구에서 1930년 『國勢調査』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에 『統計年報』를 활용한 중국인 인구 추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년대 실제 화교인구의 규모를 추산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한국학계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지방지 등 자료를 가지고 화교 인구를 추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식민지조선의 전체 화교인구를 추산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

⁴ 『統計年報』를 활용하여 인구를 추산한 한국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태웅,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아카넷, 2016;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한국연구원, 1986); 전우용, 「한국 근대의 화교문제」, 『한국사학보』, 제15호, 2003; 김승욱, 「19세기 말~20세기 초 인천의 운송망과 화교 거류양상의 변화」, 중국사연구, 50, 2011; 李正熙, 「在韓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2; 남지숙, 「서울시 화교의 지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손승희, 1931년 「식민지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 등.

⁵ 일본의 대표적인 화교연구인 安井三吉 著, 『シリーズ中國にとっての20世紀 帝國日本と華僑 日本・台灣・朝鮮』, 2013, p.172 이외에도, 總谷智雄, 「在韓華僑의形成與變遷」, 『東北亞研究』, 1994 등의 연구들이 『朝鮮總督府統計年報』를 근거로 화교의 인구를 추산하고 있다.

⁶ 李正熙, 「在韓華僑の人口に関する考察(1883-1949年)」, 京都創成大學紀要, 2008.

⁷ 지역별 화교에 대한 연구는 인천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정혜중, 「개항기 인천 화상 네트워크와 화교 정착의 특징」, 『중국근현대사연구』, 36, 2007; 김영신, 「일제시기 재한화교(1910-1931): 인천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 2005; 이정희, 『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幫華商の通商網: 大手吳服上を中心』, 『神戸華僑人研究會創立20周年紀念誌』, 神戸華僑華人研究會, 2008; 김승욱, 「20세기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중국근현대사연구』, 47, 2010 등. 이외에도 최근에는 중·북 접경지역인 신의주에 대한 연구인 이은자, 오미일, 「1920-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화공과 사회적 공간」, 『史叢』 79, 2007; 이은상, 「20세기 전반(1912~1936) 식민지 조선의 신의주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70, 2016 및 원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이은상, 「원산화교와 배화폭동(排華暴動)」, 『중국근현대사연구』, 72, 2016; 「증일전쟁 시기 원산화교의 동향과 화교경제」, 『史叢』, 90, 2017등이 진행되고 있다. 화교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심화되어가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 『統計年報』는 정기적 호구조사(常住人口)로서 조선총독부 통치의 기초자료였다. 때문에 식민지조선의 화교인구를 추계할 때 주요자료로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統計年報』는 호적을 작성하기 위한 常住人口 조사였으므로 정해진 거주지가 분명치 않거나 별도의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여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누락되는 인원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일부 조선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 계절성이주 노동자 및 행상 등 일정한 지역을 이동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통계연보 상의 화교 인구와 실제 인구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統計年報』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계된 인구를 정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節氣에 따른 인구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20년대에는 아직 월경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중국대륙간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었다. 식민지조선은 인접한 중국대륙, 일본과의 인적 교류가 가장 많았는데, 중국과 식민지조선간 이주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1920년대 재조선 중국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화공, 그 중에서도 '계절노동이주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⁸

'계절성이주노동자'는 계절에 따라 중국대륙과 한반도 양 지역을 오가는 일시적 이주자로 이민 후 정주하여 사는 기존의 화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기의 화교들은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출신으로 상업, 요리업 등에 종사하며 경성부와 인천부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조선으로 이주를 시작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과 화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⁹ 이들은 1913년 청국조계의 철폐 이후 조선인들과 잡거하며 화교의 세력을 확대하고, 1901년 경성에 중화총무상회를 설립하는 등 식민지조선 내에서 일본인 다음으로 강력한 외국인 세력으로 부상해 있었다.¹⁰ 하지만, 1910년대 이후 노동목적의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는 노동목적의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화교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⁸ 영구이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노동이주의 경우, 계절에 따라 이주와 귀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이주자들을 '계절성이주노동자'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⁹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지역네트워크"론에 입각한 화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화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초국적 존재로 지역네트워크론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濱下武志, 「19世紀後半の朝鮮をめぐる華僑の金融ネットワーク」, 杉山伸也, リンダ・グローブ 編, 『近代アジアの流通ネットワーク』, 創文社, 1999; 姜珍亞, 『东亚华侨资本和近代朝鲜: 广帮巨商同顺泰号研究』, 广东人民出版社, 广州: 中国, 2018年 등이 있다.

¹⁰ 강진아,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재한화교기업 동순태(1874~1937)의 사례」, 『경북사학』, 27, 2004, p.3.

1929년에는 中華勞工協會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¹¹ 이들 '계절성이주노동자'는 기존의 정주 화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노동목적의 이주자는 대부분 산동성 출신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산동성의 재해와 전란, 높은 인구압과 무거운 과세 등으로 인해 많은 산동성 출신의 이민자들은 한반도까지 유입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30년말에는 전체 조선화교의 81.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¹² 기존의 화교들이 상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며 식민지조선에 정주하는 화교인 반면, 이들 '계절성이주노동자'들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계절성이주노동자'와 기존화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정주성에 있었다. 이들 노동자 중에는 정주목적이 없는 일시적 노동이주자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계절성이주노동자'의 이주는 '春往冬归'라 표현되는데 3·4·5월에 입경하여 노동에 종사하다가 10·11·12·1월경 다시 국경을 넘어 대륙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¹³ 이러한 패턴은 중국대륙과 한반도 간의 이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해당시기 중국 關內와 동북지역 사이에서도 이러한 계절성이주(季節性移民)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이주형태는 동북아시아에서 근대시기에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이주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계절성이주노동자'들은 조선인들과 잡거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기존 화교들과 달리 단순히 노동을 목적으로 식민지조선에 이주하였기 때문에 거주지도 일정치 않으며, 정주성 또한 매우 약했다. 또한 기존화교가 경성, 인천 및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한 것과 달리, 그들은 종사하는 공장 근처에 집단 기거하기도 하였으며, 이 또한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1920년대 증가한 노동자들의 이민은 기존 화교와 그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신문자료에는 인천항을 통해 식민지조선으로 입국하는 화공의 수와 당시 노동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¹¹ 中華勞工協會의 설립과 역할에 대해서는 김태웅, 위의 책을 참고.

¹²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하여 1940년에는 전체 재한화교의 약 90%를 山東省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調査資料 7輯, 1924, 13-22쪽; 安井三吉 위의 책, p.179, 재인용.

¹³ 警務局保安課, 「在鮮支那人の状況竝に支那人労働者取締状況」, 『高等警察報』, 第3號, 1934年, 68-69页; 李正熙, 「在韓華僑の人口に関する考察(1883-1949年)」, 京都創成大学紀要, 2008, p.124. 재인용.

본월 중순경부터 중국 大連方面에서 인천항에 下陸한 중국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였는데 지난 14, 15일 경에는 항만 부근이 일시 혼잡한 상태를 이루었다. 자세한 내막을 들으면 그 多數한 사람이 대부분은 노동자로서 작년에도 금년과 같이 수천 여명이 조선에 들어와서 노동에 종사하다가 겨울을 當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서 추위를 지내고 따뜻해지는 오는 봄날을 따라 또 조선에 들어온 것인데 이번에 입항한 노동자 중에서 약 三割 가량은 인천에서 농업 또는 각 종 노동에 종사하고 그 외의 대부분은 경성방면과 경의선 등지로 향하여 갔다는 바, 본래 중국사람의 노동자는 百折不屈하고 노력을 다하여 쉬지 않고 종업하는 관습이 있어 세계에서 屈指할 뿐만 아니라 근검저축 하는 성질이 있어 어느 노동계에서든지 환영하는 바이며, 따라서 일년 四季에 봄, 여름, 가을 세 때의 노력한 임금을 가지고 겨울 한 때를 집에 들어앉아서 충분한 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그네들의 굳은 마음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라.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의 노동계에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다. 우리의 노동자의 수효가 부족하여 외국사람을 사용하게 된 것도 아니고 다만 노력과 열심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 되겠으며, 따라서 삼천 명의 중국 노동자가 건너왔다고 하면 그 수효만큼 타격을 받는 모양이니 이것이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리오. 당국에서도 한번 생각하여 볼 점이 없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더라(인천)¹⁴

위 기사는 1923년 3월 당시 인천항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 대련을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입경한 중국인 노동자를 다루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계절성이주노동자'의 이주와 노동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계절성이주노동자'들은 인천 또는 주변지역에서 농업과 공업에 종사하거나 경성으로 이동하여 경의선을 이용하여 조선각지로 흩어졌다. 기사에 따르면 화공은 노동시장에서 효율이 높아 환영 받았으며, 점차 조선인 노동자의 일 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공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노동자를 지칭한다. 노동자의 층위는 苦力부터 많은 임금을 받는 기술직 노동자까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규정된 공장노동자의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화공의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 1929년 기준 조선총독부는 공장노동자를 총 37개 업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조선 종업원 50명 이상인 170여개 공장에 대해 종사자 수 및 임금, 평균근로시간 등을 3개월 단위로 조사하였다.¹⁵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官報』에 「工場賃銀調」라는 제목으로 고시하였다. 그 중 중국인들은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개 내외의 업종에 종사하였으며, 화공이 특히 많은 업종은 製材業, 採鑛業, 鑛業 등이었다.¹⁶ 「工場賃銀調」에 기록된 화공의 수는 1929년 기준 1,922명으로 동시기 전체 화교인구의 고작 3.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工場賃銀調」는 종업자 수 50명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였

¹⁴ 「數千의 中國人勞働者」, 『朝鮮日報』, 1923.03.20.

¹⁵ 「工場賃銀調」, 아세아문화사, 1930, 『朝鮮總督府官報(1930.01.23)』, UCI G701:B-00048555079

¹⁶ 1930년의 『朝鮮總督府官報』, 「工場賃銀調」 중 화공이 종사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製材業(847), 電氣及瓦斯業(22), 窯業(16), 精鍊業(2), 鐵工業(23), 製鐵業(97), 燐寸製造業(40), 製紙業(52), 採鑛業(362), セメント製造業(36), 鑛業(362), 釀造業(5), 建具業(2), 製油業(1), 煉瓦製造業(74), 괄호 안의 숫자는 종사하는 중국인의 수이다; 「工場賃銀調」, 아세아문화사, 1930, 『朝鮮總督府官報(1930.01.23)』, UCI G701:B-00048555079.

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는 화공의 수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형식의 조사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오기입 및 불성실 신고 등 누락되는 인원도 존재하였다. 때문에 「工場賃銀調」 상의 화공인구를 식민지조선의 실제 화공인구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절성 이주자'를 포함한 전체 화공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절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화공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일본제국이 5년마다 제국판도 내에서 진행한 대규모 인구조사인 『國勢調査』를 비교분석해 보려고 한다.¹⁷

2. 방법론의 재조명: 식민통치의 기초자료인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國勢調査』

화공의 수를 추산하기에 앞서 해당시기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統計年報』와 『國勢調査』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明治정부는 19세기 말부터 일본사회에 대한 종합통계서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사는 부역과 징세 등 원활한 통치를 위함임과 동시에, 외부에 자신들이 문명국임을 표방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하였다.¹⁸ 일본에서의 이러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는 명치정부의 '보고례(報告例)' 형식을 차용하여 1909년에 「民籍法」을 제정하고 같은 해 처음으로 민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시행된 「民籍法」은 기본적으로 戶主에게 가족관계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으며, 1915년 4월 면장에게 관리감독의 권한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戶籍簿를 관장하고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매년 호적에 근거하여 호적조사를 실행하다가 1909년부터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라는 이름으로 토지, 기상, 호구, 농업, 공업, 상업·금융, 무역, 물가·임은 등 22개 항목에 대한 종합통계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¹⁹

¹⁷ 이 논문에서 활용한 『國勢調査』자료는 1925년 『簡易國勢調査』와 1930년 『國勢調査』이다. 서울 상의 편의를 위해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勢調査』 또는 국세조사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¹⁸ 박명규,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17.

¹⁹ 『朝鮮總督府統計年報』는 현재 한국정부가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식민지시기 국가통계를 담당한 기관은 조선총독부의 문서과(文書課)였다.²⁰ 『統計年報』 또한 각지에서 '보고례(報告例)' 형식으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문서과(文書課)에서 발간된 자료로 통감부 통치 하인 1906년부터 일본제국 패망전인 1944년까지 매년 1회씩 정리, 발간되었다. 『統計年報』에 기록되어 있는 조사항목은 년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20년(大正9年)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第一編: 土地, 氣像, 戶口

第二編: 農業, 林業附狩獵, 水産業, 鑛業

第三編: 商業, 工業, 金融, 物價及勞銀, 貿易

第四編: 鐵道, 水運, 郵便及郵便爲替貯金事業, 土木及築港

第五編: 警察, 衛生

第六編: 裁判及登記, 監獄

第七編: 教育, 社寺及教會, 慈惠及救濟, 官公吏及恩給

第八編: 財政, 轉賣

1920년 『統計年報』의 조사항목은 총 26가지인데, 내용에 따라 8편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는 戶口의 경우, 매년 발간된 『統計年報』 제1편에 들어가 있을 만큼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요 자료였다. 때문에 조사 초기에는 戶主의 보고자료를 경찰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道에서 각 府·郡의 결과를 집계하여, 조선총독부 文書課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보고체계는 1915년 「民籍法執行心得」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조사의 담당 주체가 경찰에서 邑·面으로 변경되었으며, 邑·面은 상위 府·郡으로, 府·郡은 다시 상위 道로 보고하고 조선총독부 文書課에서 각 道에서 올라온 보고자료를 최종적으로 종합되는 보고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보고체계는 일본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20년대 戶口에 대한 현지조사의 경우, 외근순사가 담당구역 내 60일 이상 체재하는 자 및 선박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3개월

²⁰ 1906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발간 부서는 總務課 → 統計課 → 調査課 → 文書課 → 總務課 → 文書課 → 調査課 → 企劃課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기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제 담당 업무와 담당직원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여기에서는 통계연보 발간기관을 文書課로 서술하였다; Lee Myong-Hak, 「The Publication of and Structural Changes to Korea's Financial Statics under Japanese Rule」,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3,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p.218.

²¹ 「凡例」, 『大正九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1, 第一項.

에 1회 이상 조사를 진행하였다.²² 『統計年報』의 호구 자료는 바로 이 중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호구조사를 종합하여 인구를 추계한 것이다.

『統計年報』 戶口調査의 가장 큰 특징은 常住人口에 대한 집계라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統計年報』는 각 戶의 常住人口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現住主義’ 방식의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때문에 조사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해당지역에 실제인구를 파악하는 데에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거주지를 떠나있는 ‘寄留’인구의 경우 ‘戶’를 구성하는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인구통계에서 누락되었으며, 선박이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인 인구 또한 집계에서 누락되기 쉬웠다. 특히, 조사 기준일이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華工 내지는 ‘계절성이주노동자’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戶口調査는 기본적으로 부역, 징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²³ 더욱이, 1920년대 현지호구조사의 주체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 등으로 분출된 일본제국에 대한 식민지조선인들의 반발심 또한 조사결과의 부정확성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1925년부터 실시된 國勢調査의 경우 기존 戶口調査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現在主義’ 조사방식을 채택하여 ‘現住人口’를 조사하였다.²⁴ 때문에 『統計年報』보다 실제 인구 및 인구분포와 훨씬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인구학 연구들에서도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²⁵

1895년 만국통계협회(現: 국제통계협회)의 참가 권유가 있는 이후, 일본정부는 1905년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1905년 10월 1일자로 제국 전 영토에 대한 국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²⁶ 일본정부가 국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존 통계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외부에 일본제국이 인구 총조사(Census)를 진행할 정도의 문명국가임을 과시하

²² 「戶口調査規定」, 1條1項, 朝鮮總督府, 1922年 7月 13日.

²³ 박명규, 서호철, 위의 책, p.118.

²⁴ 일본제국의 ‘國勢調査’는 영어 ‘Census’의 번역어이다; 「序論」, 第1編, 『國勢調査總覽』, 二階堂保則講述, 第1回國勢調査議員會 編, 大正9年. p.1.

²⁵ 박명규, 서호철, 위의 책, pp.10-11.

²⁶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 明治35年 12月 2日, 第49號; 개정, 明治38年 第13號; 재개정, 大正11年, 第51號.

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²⁷ 결국, 국세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일본에서는 실제 1920년 제1회 국세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국세조사는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개 년마다 1회 제국판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조사 후 5년에 해당하는 해에는 간이국 세조사가 시행되었다.²⁸ 식민지조선에서는,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1920년의 국세조사는 진행 되지 못하였고, 1925년에 이르러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간이국세조사가 처음 시행되었다.²⁹

1925년 조선총독 齋藤實은 「朝鮮總督府令 第66號」를 통해 전조선에 국세조사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大正14年(1925년) 10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전조선을 대상으로 簡易國勢調査가 시행되었다. 간이국세조사에서는 국세조사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현재 하는 총 인구를 대상으로 씨족 및 성명, 성별, 출생년월, 혼인상황, 본적 및 국적의 각 항목을 조사하였다.³⁰ 昭和5年(1930년) 10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진행된 전조선 1회 국세조사의 조사항목이 씨명 또는 성명, 세대관계, 성별, 출생년월, 혼인상태, 직업, 출생지, 민족 또는 국적, 문맹여부의 9 가지 항목이었던 것과 달리, 大正14年の 간이국세조사는 말 그대로 '簡易' 조사였기 때문에 위의 5가지 항목만을 조사하였다.³¹

한편, 간이국세조사와 국세조사의 조사항목은 당시 일본에서 진행한 국세조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국세조사에서는 일본 국세조사의 '직업', '실업 상태', '거주지 房의 數'에 대한 조사항목이 빠진 대신, '문맹여부' 항목이 추가되었다. 기본적으로 국세조사 또한 『統計年報』의 호 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의 관리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세조사원을 선발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³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의 국세조

²⁷ 일본정부는 『國勢調査總覽』의 「解説」에서 국세조사는 영어단어 'Census'의 일본식 번역어이며,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인구와 농·상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제국은 자신들 또한 서양열강과 마찬가지로 국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國勢調査解説」, 第1編, 『國勢調査總覽』, 二階堂保則講述, 第1回國勢調査議員會 編, 大正9年.

²⁸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 明治35年 12月 2日, 第49號, 第1條.

²⁹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조사원수급문제 등을 이유로 1920년의 국세조사를 취소하였다.

³⁰ 「朝鮮總督府令」, 第66號, 第2條, 朝鮮總督府, 大正14年.

³¹ 第2項, 第2節. 「昭和5年朝鮮國勢調査」,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記述報文』, 第2卷, 第4冊, 『朝鮮總督府國勢報告』, 朝鮮總督府 編, 昭和5年(1930).

³² 국세조사원은 총독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명예직 관원으로써 각 조사구의 부윤 및 면장의 지휘를 받아

사에 문맹여부가 포함된 것은 장기적으로 조선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세조사의 조사대상은 해당 조사 년도 10월 1일 오전 0시 제국판도 내에 현재하고 있는 모든 자로 집계된 중복과 누락을 피하기 위해 ‘瞬間調査’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철도나 항만 등을 이용하여 이동 중인 인원을 집계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두었으며,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조사 기일 전후에 각종 共進會, 전람회, 총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등 실제 인구를 추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³³ 이외에도 국세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기 어려운 王公族의 殿邸, 육해군의 부대 및 함선, 형무소, 인천, 진남포, 신의주 등 각지의 水面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담당자를 두어 인구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³⁴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는 실제로 9월 21일부터 동년 10월 5일까지 간이국세조사원이 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배부, 작성하고 대조, 확인하는 ‘他計式’으로 이루어졌다. 각 조사구는 府·面을 단위로 구성되었는데 국세조사원이 수집한 결과표를 수집한 府尹 또는 面長은 이를 다시 郡守 또는 島司에게 보고하고 군수와 도사는 이를 집계하여 다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도지사로부터 소속 郡·島의 취합결과를 보고받은 조선총독부는 이를 집계하여 『簡易國勢調査』를 간행하였다. 반면, 1930년 제1회 조선국세조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소속 세대원 전부에 대해 그 조사 사항을 신고하는 ‘自計主義’ 방식을 채택하였고, 국세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이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 1925년 간이국세조사와 달리 총독관방에 ‘臨時國勢調査課’를 설치하여 각 府·面·郡·島에서 보고된 신고서를 일괄 집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³⁵

한편, 大正14年(1925년)의 조선총독부 『簡易國勢調査』는 정확한 인구추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현지조사를 담당하였다. 그들은 세대주의 신고서 작성을 지도하거나 신고서 기입을 대필할 수 있었다; 『朝鮮總督府令』, 第66號, 第11, 12, 13, 14條, 大正14年.

³³ 인구이동의 최소화에 더불어, 이동 중인 인구를 추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선박 또는 육로로 여행 중인 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위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기차의 경우 기차를 하나의 세대로 하여 인구를 추계하였다. 이에도 누락되는 인원의 경우 10월 4일까지 가장 가까운 府, 面 또는 국세조사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第1章, 第2節. 『昭和5年朝鮮國勢調査』, 昭和5年.

³⁴ 『朝鮮總督府令』, 第67號, 大正14年.

³⁵ 昭和5年(1930년) 국세조사를 위해 각 府·面에는 국세조사원이 배치되었으며, 각 道에는 臨時國勢調査部가 설치되었다. 선박이 많이 모여있는 水面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조사를 관할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인구를 집계하였다.

처벌규정도 두고 있었다.

제20조. 간이국세조사를 할 때에 조사를 회피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자 또는 고의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科料에 처하고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제21조. 허위의 소문을 유포 또는 僞計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간이국세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간이국세조사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직무에 집행 중일 때 알게 된 개인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누출하는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科料에 처한다. (大正14年 朝鮮總督府令 第 66號)

위 조항들과 같이, 엄격하게 인구조사를 진행한 덕분에 기존 『統計年報』에서 누락되어 있던 많은 인구가 추계될 수 있었다.³⁶ 하지만, 국세조사의 결과는 극비자료로 분류되어 한정된 몇몇 기관에 배부되었을 뿐 실제로 공시되지 않았으며, 행정과정에서도 연속성을 이유로 기존 호적인구 자료가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실제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國勢調査』는 現住人口를 집계한 것이므로 常住人口를 집계한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비해 실제 인구에 가까운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25년 국세조사의 경우 식민지조선 최초의 인구 총조사로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원을 기입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더 높았다. 비록, 국세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 해의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20년대 식민지조선의 화교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세조사가 진행된 1925년과 1930년의 자료를 해당시기의 『統計年報』와 비교·분석한다면 화교인구 증가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³⁷

본 연구에서는 화교인구, 나아가 화공의 인구를 추계하기 위해 1925년과 1930년의 『統計年報』와 『國勢調査』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統計年報』 상의 인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³⁶ 1925~40년 국세조사결과는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권태환·김두섭, 1990: 219; 孫禎睦, 1996: p.136 등.

³⁷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國勢調査』에서 중국인은 1925년 '支那人'으로, 1930년 '中華民國人'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대륙출신의 중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만의 경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당시 식민지조선의 대만인 수는 100명 이하로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대륙출신의 중국인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계절성이주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은 '常住人口'로 보고, 10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國勢調査』는 계절성이주노동자를 포함한 '現住人口'로 설정하였다. 만약, 같은 년도 『國勢調査』의 인구에서 『統計年報』의 인구를 뺀다면, 그 인구는 '유동인구' 즉, 계절성이주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분석방식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계절성이주노동자의 수

$$\text{現住人口(『國勢調査』)} - \text{常住人口(『統計年報』)} = \text{流動人口(계절성이주노동자)}$$

하지만 양 조사간의 수치 차이에는 기존 『統計年報』 조사 시 누락된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 조사간의 수치 차이 뿐만 아니라, 민족, 지역(道·府·郡), 성비 등을 기준으로 1925년과 1930년의 인구를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계절성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양 조사 상 남녀인구 증감의 차이도 분석하여 유동인구의 수치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우선, 1925년과 1930년을 기준으로 『統計年報』와 『國勢調査』의 조사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해당시기의 인구차이 및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25년부터 9.18사변 이전 인구증가의 추이와 양상 및 유동인구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1925년의 『簡易國勢調査』와 1930년의 『國勢調査』상 인구변화의 추이를 비교 분석한다. 비교분석은 민족, 道, 府·郡으로 기준을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우선 민족을 기준으로 각 민족의 인구 및 성비 등을 분석하여 각 민족의 거주특징을 살펴보고, 道 단위로 전체 중국인의 인구를 비교하여 각 도별 인구증감의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1920년대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평안북도와 경기도의 府·郡을 기준으로 중국인의 분포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체 화교 인구 및 계절성이주노동자의 인구를 추계하는 동시에 1920년대 화교 이주의 분포와 특징 및 그 변화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3. 비교분석을 통한 화교 인구 추산

1) 전체인구 조사결과 비교

1925년부터 1930년까지 5년간 식민지조선의 전체 인구는 『統計年報』 기준 약 7%, 『國勢調査』

기준 약 8%가 증가하였다. 그 중 조선인은 6~7%, 일본인은 18~19%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기타 외국인의 경우 『統計年報』 기준 약 4%의 증가를 기록하였다.³⁸ 반면, 중국인의 경우 해당기간 『統計年報』 기준 약 47%, 『國勢調査』 기준 약 58%가 증가하였다.³⁹ 20년대 중후반기 식민지조선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인의 인구증가는 독보적이며 양 조사간 결과의 차이도 가장 크게 보이고 있다.

[표-2] 1925년 전체인구 조사결과 비교⁴⁰

나라별	1925년 『통계연보』(A)			1925년 간이『국세조사』(B)			유동인구(B-A)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전 조선	19,015,526	9,729,304	9,286,222	19,522,945	10,020,943	9,502,002	507,419	291,639	215,780
조선인	18,543,326	9,466,994	9,076,332	19,020,030	9,726,150	9,293,880	476,704	259,156	217,548
일본인	424,740	221,163	203,577	443,402	242,161	201,241	18,662	20,998	-2,336
중국인	46,196	40,527	5,669	58,057	51,883	6,174	11,861	11,356	505
기타외국인	1,264	620	644	1,447	743	704	183	123	60

[표-3] 1930년 전체인구 조사결과 비교⁴¹

나라별	1930년 『통계연보』(A)			1930년 『국세조사』(B)			유동인구(B-A)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³⁸ 기타 외국인은 일본인,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 해당 시기 『統計年報』의 증가율과 달리 『國勢調査』에서는 3%의 감소가 기록되어 있으나, 기타 외국인의 절대적인 수가 적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³⁹ 식민지조선의 지배민족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중국인이 기타 외국인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 각 방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의미한다. 이는 총독부 정부가 중국인을 하나의 집단 또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인구조사에서 인종분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김용태의 논문을 참고; 김용태, 「19세기 미국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 인식과 인종 분류: 1870년 연방 인구조사의 중국인 인종 범주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⁴⁰ 『大正14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大正14年; 『大正14年10月1日現在國勢調査結果表』, 『朝鮮總督府國勢調査報告』, 第2冊, 朝鮮總督府編, 東京:文生書院, 2000.

⁴¹ 『昭和5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昭和5年;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記述報文』, 第4冊, 朝鮮總督府編, 東京: 文生書院, 2000.

전 조선	20,256,563	10,320,067	9,936,496	21,058,305	10,763,679	10,294,626	801,742	443,612	358,130
조선인	19,685,587	10,003,042	9,682,545	20,438,108	10,398,889	10,039,219	752,521	395,847	356,674
일본인	501,867	260,391	241,476	527,016	285,966	241,050	25,149	25,575	-426
중국인	67,794	55,973	11,821	91,783	78,125	13,658	23,989	22,152	1,837
기타외국인	1,315	661	654	1,398	699	699	83	38	45

『統計年報』와 『國勢調査』의 조사결과 차이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유동인구 또는 누락인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1930년의 인구가 『統計年報』 기준으로 7만여명으로 전체인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숫자이며, 1925년과 1930년의 유동인구 또는 누락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전체 중국인 인구대비 매우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에 한해 양 조사간의 수치 차이는 누락인구 보다는 유동인구라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위 데이터를 통해, 1925년에 최소 만 명, 1930년에 최소 2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 즉, 계절성이주노동자가 조선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 조사간 결과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차이는 1925년 507,419명, 1930년 801,742명으로 5년간 차이의 폭이 294,323명이 늘었으며, 중국인의 경우 1925년 11,861명, 1930년 23,989명으로 5년간 차이의 폭이 12,128명이 늘었다. 이처럼 누락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인구 유동성이 증가하였다는 것도 양 조사간 차이가 커진 주요 원인이다. 전체 누락에서 각 민족 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30년 기준 조선인이 약 93.9%, 중국인 3.0%, 일본인이 3.1%를 차지하고 있다.⁴² 식민지조선 전체 인구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0.4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중국인의 누락율이 압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의 유동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가장 높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각 민족의 인구 대비 누락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민족별 누락비율

구분	1925년	1930년
전조선	2.6%	3.8%
조선인	2.5%	3.7%
일본인	4.2%	4.8%

⁴² 누락율의 자세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누락인구/전체인구) X 100.

중국인	20.4%	26.1%
-----	-------	-------

각 민족의 누락비율을 살펴보면 당시 식민지조선의 전체 민족 중 조선인의 정주성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인의 정주성이 가장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업적 특성 또는 인구조사에 대한 민족간 참여의 차이 일 수도 있지만 중국인의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조사결과간의 차이가 커지는 점을 미루어볼 때, 1925년보다 1930년의 정주성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의 누락율은 20.4%에서 26.1%로 증가했다. 이는 해당시기 전 조선에서 중국인의 유동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계절성 이주노동자 및 내지행상 등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⁴³

유동인구 중 계절성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중국인의 성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⁴⁴ 1930년 기준 전체 중국인의 성비는 572로 극단적인 남성위주의 이주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성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대륙에 가정을 두고 있는 남성이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1920년대 식민지조선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자가 성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572라는 극단적인 성비도 1925년에 비교하면 성비의 불균형이 매우 완화된 수치였다. 『國勢調査』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년대 중후반 식민지조선의 전체 인구는 남성이 7.4%, 여성이 8.3% 증가하였지만 중국인의 경우 남성 50.6%, 여성 121.2%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해당시기 전 민족 모두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⁴⁵ 특히, 가장 큰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인의 경우 여성의 인구가 5년만에 100%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1925년 이전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1930년 중국인 남성 인구는 78,125명이었던데 반해 여성은 여전히 13,658명에 불과하였으며, 5년간 증가한 절대 인구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1925년의 경우 중국인의 성비는 840.3으로 같은 년도 조선인의 성비 104.7, 일본인의 성비 12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균형한 성비를 보이고 있었다.

⁴³ 『統計年報』는 대부분의 계절성이주노동자들이 다시 대륙으로 돌아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10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된 『國勢調査』의 인구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⁴⁴ 성비는 국제표준에 따라 여성 100명당 남자의 수로 계산하였다.

⁴⁵ 전체 인구는 남성이 7.4%, 여성이 8.3% 증가하였으며, 조선인은 남성이 6.9%, 여성이 8.0% 증가하였다. 일본인의 경우 남성이 18.1%, 여성이 19.8% 증가하였으며, 중국인은 남성이 50.6%, 여성이 121.2%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누락인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실제 1925년 중국인 누락인구 11,861명 중 11,356명이 남성이었다.⁴⁶ 결국, 1925년 시점에 중국인의 식민지조선 이주는 대부분 남성 단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식민지조선 내에서의 이주에 있어서도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의 경우에도 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급증하여 성비가 572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남성이 여성의 6배 가까이 많았으며, 조사에서 누락된 인구 23,989명 중에서 22,152명이 남자일 만큼 남성위주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統計年報』에 비해 『國勢調査』상의 성비가 더욱 비대칭인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시기 중국인의 조선 이주가 대부분 단신 남성 위주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統計年報』를 기준으로 1920년 중국인 남성은 21,380명, 여성은 2,601명을 기록할 만큼 20년대 식민지조선의 중국인 이민자들은 심각한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겪고 있었다.⁴⁷ 이러한 흐름은 20년대 후반기에도 지속되었으며, 여성들의 절대적인 수 증가로 성비는 완화되었지만 중국인 성비는 여전히 극심한 성비불균형의 상태에 있었다. 결국, 성비의 불균형은 당시 식민지조선으로의 이주가 남성위주의 노동이주자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계절성이주노동자들의 급증은 20년대 식민지조선 화교이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인의 道別 조사결과 비교

식민지조선에서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거주지로 잘 알려진 곳은 京城(現: 서울)과 仁川府였다. 인천부는 대중국 주요 항구인 인천항이 위치한 곳으로 1913년까지 중국 조계지가 위치하였으며 현재에도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 대도시이다. 하지만 1925년과 1930년 중국인의 인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중점경지역인 평안북도였다. 1925년 중국인 인구는 평안북도, 경기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 등 순으로 분포하였으며, 1930년에는 평안북도, 경기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등 순으로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었다.⁴⁸ 인구 상위 6개 지역은 25년과 30년 차이가 없으며, 경성부와 인천부가 포

⁴⁶ 누락인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선인이 54.4%, 일본인이 112.5%, 중국인이 95.7%를 기록하고 있다.

⁴⁷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大正9年.

⁴⁸ 『國勢調査』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1925년에는 평안북도, 경기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

40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함된 경기도를 제외하면 모두 한반도의 북부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표-5] 1925년 중국인 인구 도별 조사결과 비교⁴⁹

전국도별	1925년 『통계연보』(A)			1925년 간이『국세조사』(B)			유통인구(B-A)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전국	46,196	40,527	5,669	58,057	51,883	6,174	11,861	11,356	505
경기도	8,853	7,542	1,311	11,953	10,508	1,445	3,100	2,966	134
충청북도	901	344	57	932	885	47	31	541	-10
충청남도	2,602	2,436	166	3,008	2,843	165	406	407	-1
전라북도	1,976	1,836	140	2,203	2,074	129	227	238	-11
전라남도	2,228	2,144	84	2,253	2,153	100	25	9	16
경상북도	1,611	1,521	90	1,846	1,737	109	235	216	19
경상남도	1,569	1,474	95	1,960	1,866	94	391	392	-1
황해도	2,489	2,150	339	3,471	3,072	399	982	922	60
평안남도	3,939	3,326	613	5,050	4,340	710	1,111	1,014	97
평안북도	11,252	9,268	1,984	14,142	12,061	2,081	2,890	2,793	97
강원도	997	955	42	1,027	984	43	30	29	1
함경남도	3,481	3,093	388	4,383	3,905	478	902	812	90
함경북도	4,298	3,938	360	5,829	5,455	374	1,531	1,517	14

[표-6] 1930년 중국인 인구 도별 조사결과 비교⁵⁰

전국도별	A. 1930년(『통계연보』)			B. 1930년(『국세조사』)			유통인구(B-A)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인구수 (명)	인구/남 (명)	인구/여 (명)
전국	67,794	55,973	11,821	91,783	78,125	13,658	23,989	22,152	1,837
경기도	11,571	9,563	2,008	16,968	14,637	2,331	5,397	5,074	323
충청북도	1,215	1,041	174	1,295	1,118	177	80	77	3
충청남도	2,700	2,376	324	2,760	2,438	322	60	62	-2
전라북도	2,990	2,636	354	3,297	2,950	347	307	314	-7
전라남도	2,115	1,897	218	2,774	2,576	198	659	679	-20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순으로 1930년에는 평안북도, 경기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순으로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다.

⁴⁹ 『大正14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大正14年; 『大正14年10月1日現在國勢調査結果表』, 『朝鮮總督府國勢調査報告』, 第2冊, 朝鮮總督府編, 東京:文生書院,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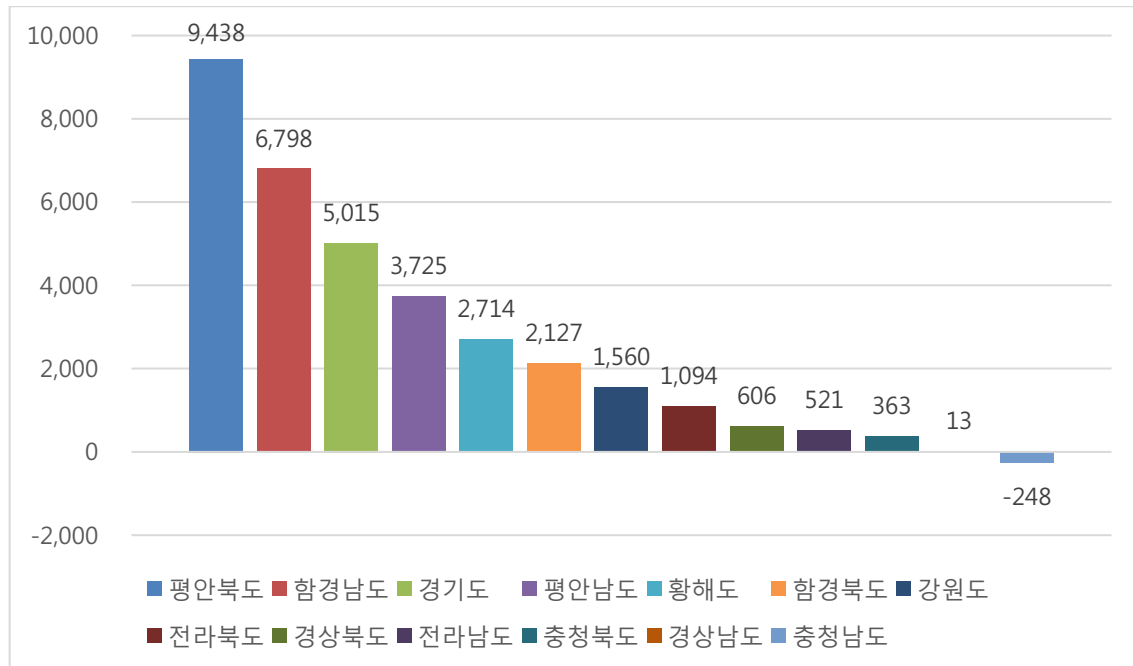
⁵⁰ 『昭和5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昭和5年;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記述報文』, 第4冊, 朝鮮總督府編, 東京: 文生書院, 2000.

경상북도	2,384	2,142	242	2,452	2,181	271	68	39	29
경상남도	1,614	1,422	192	1,973	1,735	238	359	313	46
황해도	4,520	3,735	785	6,185	5,296	889	1,665	1,561	104
평안남도	5,635	4,539	1,096	8,775	7,285	1,490	3,140	2,746	394
평안북도	16,771	12,770	4,001	23,580	18,949	4,631	6,809	6,179	630
강원도	1,664	1,472	192	2,587	2,368	219	923	896	27
함경남도	8,216	7,055	1,161	11,181	9,859	1,322	2,965	2,804	161
함경북도	6,390	5,325	1,074	7,956	6,733	1,223	1,566	1,408	149

『國勢調査』를 기준으로 1925년과 1930년 경기도와 조선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는 전체 중국인 인구의 약 80%이며, 이 중 경기도를 제외한 북부지역에 약 60%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 한반도 북부지역 중에서도 중국과 접하고 있으며, 철도와 육로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평안북도의 중국인 인구는 전체 중국인 인구의 약 25%를 점하고 있어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중국인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1920년대에는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부분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체화교의 절반 가까운 약 45%가 평안북도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평안북도와 경기도는 1920년대 중국인 거주지의 주요 두 축으로써 기능하고 있었다.

[표-7] 1925년-1930년 각 도별 인구 증감⁵¹

⁵¹ 『國勢調査』를 기준으로 중국인 인구의 증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평안북도 9,438명, 함경남도 6,798명, 경기도 5,015명, 평안남도 3,725명, 황해도 2,714명, 함경북도 2,127명, 강원도 1,560명, 전라북도 1,094명, 경상북도 606명, 전라남도 521명, 충청북도 363명, 경상남도 13명 증가. 충청남도는 유일하게 248명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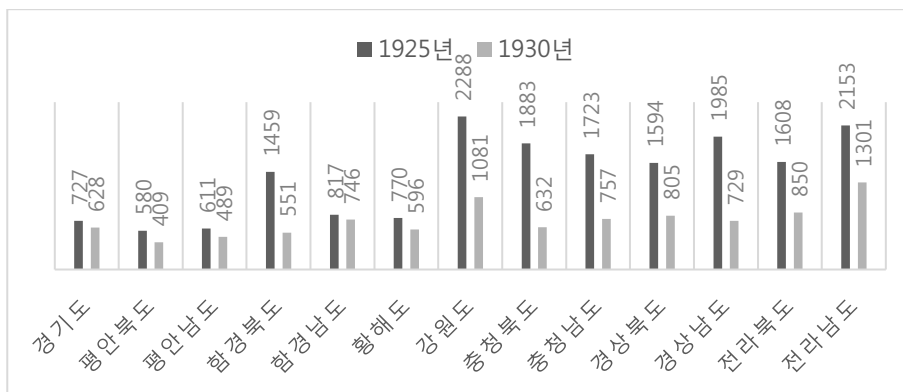
1925년부터 30년까지 각 도별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평안북도가 9,438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인구 증가를 기록하였고 함경남도가 6,798명, 경기도가 5,015명이 증가하여 그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가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 폭이 적다. 이는 당시 인천항이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對중국입출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지역이 일종의 경유지로서 거주 중국인의 정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선북부지역은 중국인의 인구도 많지만 인구의 증가 폭도 컸다. 특히, 인구증가 상위 6개 지역에서 경기도를 제외하면 조선 북부지역이 5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1920년대 화공의 주요 활동무대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를 위시한 조선 북부지역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조선 남부지역은 증가폭이 적거나 일부 지역은 역으로 중국인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인의 구성이 화공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統計年報』와 『國勢調査』의 조사인구 차이를 비교해보면 1925년에는 경기도 3,100명, 평안북도 2,890명, 함경북도 1,531명, 평안남도 1,111명 순이었고, 1930년에는 평안북도 6,809명, 경기도 5,397명, 평안남도 3,140, 함경남도 2,965명 순이었다.⁵² 각 도의 중국인 인구분포에서 살

⁵² 『統計年報』와 『國勢調査』의 도별 중국인 인구차이는 다음과 같다. 1925년은 총 11,861명 중 경기도가 3,100명, 평안북도 2,890명, 함경북도 1,531명, 평안남도 1,111명, 황해도 982명, 함경남도 902명, 충청남도 406명, 경상남도 391명, 경상북도 235명, 전라북도 227명, 충청북도 31명, 강원도 30명, 전라남도 25명 순이

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統計年報』에서 누락된 중국인 인구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조선 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각 도의 중국인 인구분포와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인구가 많은 지역이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유출 또한 많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누락인구의 대부분이 조선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조선북부지역의 인구 유동성이 남부지역에 비해 강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조선북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유동성이 높았지만, 인천항으로 입경한 중국인들의 정주지이자 경유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북부지역과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대륙으로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식민지조선으로 이동할 경우, 대부분은 인천항으로 입항하여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전체 중국인 대비 높은 남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25년과 1930년의 중국인 성비는 다음 [표-8]과 같다.

[표-8] 각 도의 중국인 성비⁵³



었다. 1930년에는 총 23,989 중 평안북도가 6,809명, 경기도 5,397명, 평안남도 3,140명, 함경남도 2,965명, 황해도 1,665명, 함경북도 1,566명, 강원도 923명, 전라남도 659명, 경상남도 359명, 전라북도 307명, 충청북도 80명, 경상북도 68명, 충청남도 60명을 기록하였다.

⁵³ 『國勢調査』를 기준으로 중국인의 성비는 1925년 강원도 2,288, 전라남도 2,153, 경상남도 1,985, 충청북도 1,883, 충청남도 1,723, 전라북도 1,608, 경상북도 1,594, 함경북도 1,459, 함경남도 817, 황해도 770, 경기도 727, 평안남도 611, 평안북도 580 순이다. 1930년에는 전라남도 1,301, 강원도 1,081, 전라북도 850, 경상북도 805, 충청남도 757, 함경남도 746, 경상남도 729, 충청북도 632, 경기도 628, 황해도 596, 함경북도 551, 평안남도 489, 평안북도 409의 성비를 기록하였다.

성비를 시기별로 보면 25년에 비해 30년에 상대적으로 모든 지역의 성비차이가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전체인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절대적인 여성 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30년 시점에도 여전히 성비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로, 1935년 실시된 『簡易國勢調査』에서 중국인의 남녀성비는 465, 만주국인을 포함할 시 445를 기록하여 성비가 더욱 완화되었는데 이것 또한 절대적인 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일 뿐 여전히 이주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해당기간 각 도의 성비를 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조선 북부지역에 비해 조선 남부지역의 성비차이가 더욱 극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부지역보다 경기도 및 북부지역에 가족단위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 남부 각 도의 중국인 여성 인구는 300명 안팎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남부 각 도의 중국인 전체 인구도 3천명 내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비차이에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한편, 『統計年報』 기준 평안북도의 중국인 가구 수는 1925년 3,108호에서 1930년 3,563호로 455세대가 증가하여 전 조선에서 가장 큰 인구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또한, 평안북도의 중국인 가구 당 인구도 1925년 3.6명에서 1930년 4.7명으로 전체 13개 道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김태웅이 그의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증가는 일정부분 단신 남성 위주의 이주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⁴ 특히, 실제 해당시기 남성 인구 증가의 폭을 고려할 때 이는 1920년대 중후반기 폭증한 조선 북부의 중국인 인구는 대부분 남성 단신의 노동 이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920년대 중후반기 증가하는 중국인 인구가 이주 노동자였다는 점은 지역별 중국인 세대 당 인구 수 증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평안북도를 기준으로 해당 시기 가장 많은 세대원 수가 증가한 지역은 철산군, 자성군, 삭주군, 강계군 등 평안북도의 외곽지역이었다.⁵⁵ 이들 지역은 제재업이나 광업 등 당시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대부분으로, 이들 지역의 가구 당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평안북도의 중국인 이주 인구 대다수가 노동 목적의 이주자 즉 '계절성이주노동자'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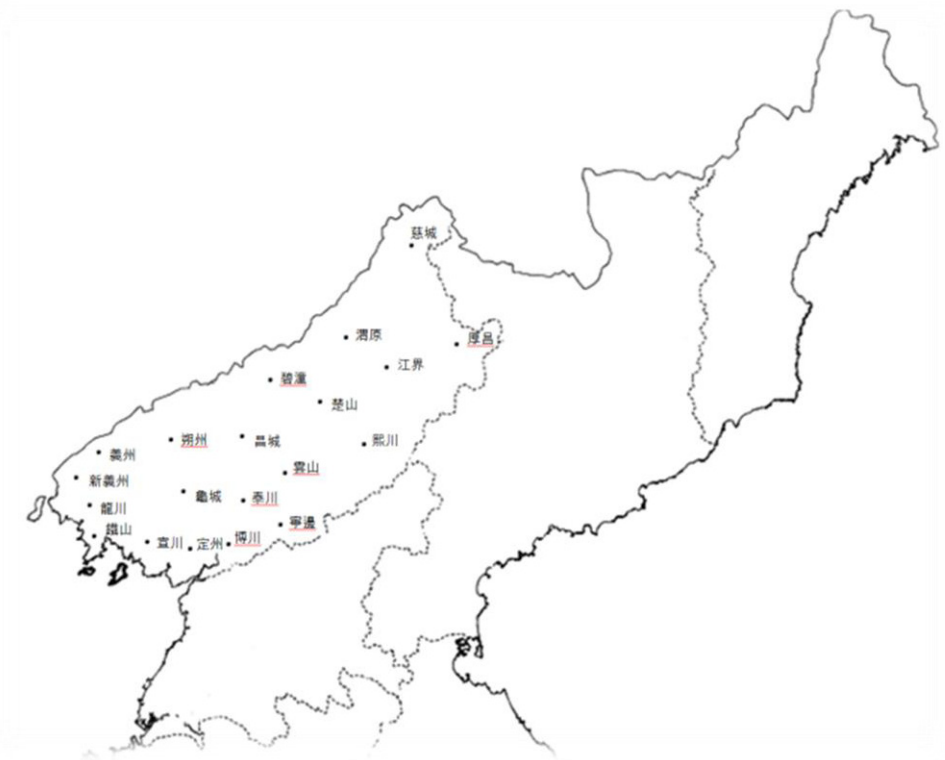
3) 중국인의 府·郡별 조사결과 비교

⁵⁴ 김태웅, 위의 책, pp.40-42.

⁵⁵ 철산군 3.31명, 자성군 3.30명, 삭주군 2.95명, 강계군 2.56명 순으로 호당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정주군, 희천군, 창성군 등은 오히려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중국인들은 조선북부지역과 경기도에 80%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본 절에서는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평안북도와 경기도 두 지역을 府·郡 단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 평안북도 지도



1920년대 평안북도는 1개의 府와 19개의 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리적으로 평안북도는 동쪽으로 함경남도, 남쪽으로는 평안남도, 서쪽으로는 황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을 통해 중국과 이어지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⁵⁷ 조선왕조시기부터 1920년대까지 평안북도의 중심 도시는 의주군이었다. 하지만 1904년 일본은 경의선을 건설하면서 경의선의 종착지였던 의주군 광성면 신의주동을 분리하여 1905년 新義州府로 승격시키게 되었고, 이 신의주부는 평안북도의

⁵⁷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에 따르면 조선의 지방행정 체계는 전국을 13개의 '道'로 나누고 그 아래 12개의 府와 317개의 郡을 설치하여 府尹과 郡守를 파견하였다. 각 府·郡에는 4,322개의 邑面을 설치하고 그 아래 里와 洞을 두었다; 「朝鮮總督府勅令」 第357號, 明治42年.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이 신의주부는 1920년대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평안북도 지역 내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다. 실제 평안북도의 중국인의 인구는 다음 [표-9]과 같다.

[표-9] 평안북도의 인구현황⁵⁸

* 1925년 『簡易國勢調査』(B)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1,417,091	14,142	23,176	4,478	156,330	3,316	64,623	75	52,553	33	45,596	769	62,856	60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127,043	31	73,850	151	125,147	290	78,378	258	66,930	138	107,594	1,619	40,447	36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48,940	612	44,922	270	64,688	268	30,454	177	129,833	426	44,711	534	29,020	606
* 1930년 『國勢調査』(B)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1,562,791	23,580	48,057	9,081	160,532	3,079	67,416	167	51,550	53	47,115	1,182	66,170	82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124,959	116	74,916	117	134,567	507	81,011	351	69,785	380	120,832	2,395	47,485	158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53,810	729	50,872	296	75,626	371	37,255	510	150,769	864	61,615	1,769	38,449	1,373

『國勢調査』에 따르면, 1925년 평안북도 전체 인구 1,417,091명 중 약 11.0%가 의주군에 거주하였으며, 의주군 다음으로 강계군 9.2%, 영변군 9.0%, 정주군 8.8%, 용천군 7.6%순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많았다. 1925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신의주부로 전체 평안북도 인구의 약 1.6%가 거주하고 있었다. 1930년도 1925년의 인구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안북도 인구 1,562,791명 중 약 10.3%가 의주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계군 9.6%, 정주군 8.6%, 영변군 8.0%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중 신의주부의 경우 전체 인구의 3.1%가 분포하여 평안북도 지역 중 가장 급격한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였다.⁵⁹

⁵⁸ 「大正14年10月1日現在國勢調査結果表」;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⁵⁹ 『國勢調査』 상 평안북도의 인구분포는 다음과 같다; 1925년 총 1,417,091명, 의주군 11.0%, 강계군 9.2%, 영변군 9.0%, 정주군 8.8%, 용천군 7.6%, 선천군 5.5%, 박천군 5.2%, 철산군 4.7%, 초산군 4.6%, 구성군

반면, 중국인의 인구분포는 전체인구 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25년 평안북도의 전체 중국인 인구 14,142명 중 약 32%인 4,478명이 신의주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930년에는 전체 중국인 인구 23,580명 중 약 39%인 9,081명이 신의주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신의주부는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며, 5년간 중국인 인구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1925년의 경우 평안북도 중국인 전체 인구의 66%가 중국 접경지역이자 서부지역인 신의주부, 의주군, 용천군에 몰려있었으며, 1930년도 1925년과 마찬가지로 평안북도 전체 중국인 인구의 62%가 위 세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신의주부로 집중된 인구가 인근지역으로 분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평안북도의 중국인 인구는 1925년 14,142명에서 1930년 23,580명으로 9,438명이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식민지조선의 중국인 총인구는 1925년 58,057명에서 1930년 91,783명으로 33,726명이 증가하였는데 전체 중국인 인구의 증가에서 평안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이며 한반도에서 가장 인구 증가 폭이 큰 지역이었다. 평안북도 다음으로는 함경남도 약 20%, 경기도 약 15% 등이 위치하고 있다. 평안북도의 전체인구 대비 중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평안북도 전체가 1.5%이고 그 중 신의주부가 18.9%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후창군 3.6%, 자성군 2.9% 등 지역이 뒤를 잇고 있다.

1925년부터 5년간 신의주부의 전체 인구는 24,811명이 증가하여 해당기간 가장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안북도 전체 증가 인구 145,700명 중 약 17%를 차지하고 있었다.⁶⁰ 하지만 신의주부 증가인원의 1/5은 중국인이었다. 평안북도의 중국인은 해당기간 총 9,438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약 49%인 4,603명이 신의주부로 전입하였다. 결국, 평안북도의 전체 인구가 의주, 강계, 영변, 안주 등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인 인구는 중국 접경지역인 신의주부 나아가 인접지역인 의주군, 용천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중현상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안동(現: 丹東)과 접하고 있는

4.6%, 희천군 4.4%, 태천군 3.7%, 창성군 3.5%, 운산군 3.2%, 벽동군 3.2%, 자성군 3.2%, 삭주군 2.9%, 위원군 2.1%, 후창군 2.0%, 신의주부 1.6%; 1930년 총 인구 1,562,791명, 의주군 10.3%, 강계군 9.6%, 정주군 8.6%, 영변군 8.0%, 용천군 7.7%, 선천군 5.2%, 초산군 4.8%, 박천군 4.8%, 철산군 4.5%, 구성군 4.3%, 희천군 4.2%, 자성군 3.9%, 창성군 3.4%, 태천군 3.3%, 벽동군 3.3%, 신의주부 3.1%, 삭주군 3.0%, 운산군 3.0%, 후창군 2.5%, 위원군 2.4%.

⁶⁰ 1925년부터 30년까지 평안북도의 전체인구 증감은 다음과 같다. 신의주 17%, 강계군 14%, 자성군 12%, 용천군 9%, 초산군 8%, 후창군 6%, 정주군 6%, 삭주군 5%, 위원군 5%, 벽동군 4%, 창성군 3%, 의주군 3%, 희천군 2%, 철산군 2%, 구성군 2%, 선천군 2%, 운산군 1%, 박천군 1%, 태천군 -1%, 영변군 -1% 순.

국경지역으로, 동북지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1920년대 이미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평안북도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경유하는 '이주자의 도시'였다. 신의주부의 인구는 9.18 사변이 일어난 후에도 이르러 더욱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1925년과 1930년의 조사결과 차이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평안북도의 중국인 유동인구⁶¹

* 1925년 『통계연보』(A)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11,252	3,928	2,690	34	28	743	51	27	85	368	204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100	1,000	30	420	43	175	46	272	389	619	
* 1925년 간이『국세조사』(B)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14,142	4,478	3,316	75	33	769	60	31	151	290	258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138	1,619	36	612	270	268	177	426	534	606	
* 유동인구(B-A)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2,890	550	626	41	5	26	9	4	66	-78	54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38	619	6	192	227	93	131	154	145	-13	

* 1930년 『통계연보』(A)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16,771	7,487	1,833	138	42	975	79	56	89	386	321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239	1,129	158	565	105	240	186	561	1,080	1,102	
* 1930년 『국세조사』(B)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23,580	9,081	3,079	167	53	1,182	82	116	117	507	351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380	2,395	158	729	296	371	510	864	1,769	1,373	
* 유동인구(B-A)										
전체	신의주부	의주군	구성군	태천군	운산군	회천군	영변군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6,809	1,594	1,246	29	11	207	3	60	28	121	30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141	1,266	0	164	191	131	324	303	689	271	

『統計年報』와 『國勢調査』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1925년은 의주군, 용천군, 신의주부 순으로, 1930년은 신의주부, 용천군, 의주군 순으로 결과의 차이가 크다. 특히, 신의주부의 경우 1930

⁶¹ 『大正14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14年10月1日現在國勢調査結果表」; 『昭和5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년 『統計年報』와 『國勢調査』 결과의 차이가 1,59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년대 후반 신의주 부로의 인구유입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의주부의 인구유동성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의주부의 유동성 증가는 중국인 인구 증가로 인해 누락되는 인구가 늘어났고, 신의주부를 경유 및 체류하는 중국인이 급등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의주군의 경우 여전히 평안북도에서 전체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으나, 중국인 인구가 역으로 300여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도 감소하여 평안북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위협받게 되었다.

한편, 1920년대 평안북도 다음으로 중국인 인구가 많이 분포한 경기도는 경성, 인천 두 곳의 府와 20개의 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⁶² 경기도는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 서쪽으로는 황해, 북으로 황해도와 인접해있으며,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특히, 수도인 京城과 對중국 최대 항구인 인천항이 위치하여 있어 식민지시기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다.

[표-11] 경기도의 인구현황⁶³

* 1925년 『간이국세조사』(B)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2,019,018	11,953	342,626	5,906	56,295	2,752	85,065	21	107,219	22	65,805	42	35,075	16	75,788	84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63,034	188	58,544	49	75,910	50	69,424	132	51,669	18	73,364	17	159,533	826	76,087	156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55,363	85	67,825	24	128,811	261	75,616	36	153,227	182	66,656	324	76,172	762		
* 1930년 『국세조사』(B)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2,157,413	16,968	394,240	8,275	68,137	3,372	83,827	50	104,885	41	63,173	28	36,039	27	73,599	48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63,779	83	61,581	122	79,220	181	74,557	126	55,181	25	74,425	24	199,683	1,288	78,945	165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개풍군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합계	중국인
54,302	102	67,702	21	49,520	242	74,398	32	159,504	236	73,617	506	81,927	1,189	85,172	785

⁶² 1930년 개성군의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되면서 개성부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개풍군으로 명명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부터 경기도는 경성, 인천, 개성 세 곳의 府와 21개의 郡으로 행정체제가 재편되었다.

⁶³ 「大正14年10月1日現在國勢調査結果表」;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1925년 경기도 인구는 17%가 경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고양군에 7.9%, 수원군에 7.6% 개성군에 6.4% 순으로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다. 1930년에는 경성부가 18.3%, 고양군이 9.3%, 수원군 7.4%, 舊개성군 6.2% 순이었다. 개성군의 경우 193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 송도면 이외의 지역만 개풍군으로 계산되어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舊개성군의 지역 인구로 계산할 경우 1925년과 1930년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한편, 중국인의 경우 1925년 경기도 전체 중국인 인구의 49%가 경성부, 23%가 인천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930년도 1925년과 마찬가지로 49%가 경성부, 20%가 인천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체 경기도 중국인 인구의 약 70%가 경성과 인천부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인천부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음에도 중국인의 약 20%이상이 인천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조선의 對중국 항구로써 인천부의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천부의 경우 전체인구대비 중국인 인구의 비율이 약 4.9%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3] 경기도 지도



전체인구 대비 중국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는 0.8이며 인천부가 4.9%로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인천부 뒤를 경성부(2.1%), 부천군(1.5%)이 잇고 있다. 평안북도 지역에 비해 절대적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인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부와 경성부의 비율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성부 및 개풍군의 인구는 1925년 2%에서 1930년 6%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인구가 집계되는 범위가 줄었음에도 중국인의 인구가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해당 지역으로의 중국인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5년과 1930년 모두 개성부를 포함한 경기도 서부지역이 높은 인구분포를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중국인 인구는 경성부와 인천부를 제외하고 개성부,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등 경기도 서부에 위치한

도시들에 집중되었으며, 수원군, 광주군 등 전통적인 경기도 남부 대도시에는 비교적 인구가 적었다. 이들 경기도의 서부지역은 경기도와 북으로 접한 황해도 및 한반도 북부지역으로의 주요 교통로인 경의선과 인천에서 경성을 잇는 경인선의 노선 상에 위치한 지역들로 인천항을 통해 입경한 중국인의 주요 이주노선 상에 위치해 있었다.

1925년과 1930년의 중국인 인구분포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기도의 중국인 인구분포는 개성군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평안북도와 비교했을 때, 경성부와 인천부 등 경기도의 대도시가 이미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신의주, 의주 등 평안북도 지역은 1920년대 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었던 것에 반해, 경기도의 해당 지역들은 고정적인 수요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때문에, 평안북도에 비해 인구증가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이들 지역의 정주성이 평안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國勢調査』를 기준으로 1925년부터 1930년까지 경성부의 인구는 342,626명에서 394,240명으로 51,614명이 증가하여 경기도 인구 증가의 약 37.3%를 차지하였다. 중국인 인구 또한 해당기간 5,015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경성부의 인구가 약 47% 증가하였다. 반면, 『統計年報』 상에는 중국인 인구가 2,718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 중 약 61.7%가 경성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다.⁶⁴ 양 조사간 결과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은 경성부 14%, 부천군 12%, 개성군 12%, 고양군 10% 등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중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요 경유지로서 유동성이 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해당기간 경기도의 중국인 유동인구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경기도의 중국인 유동인구⁶⁵

⁶⁴ 1925년부터 1930년까지 『統計年報』 상의 경기도 중국인구는 2,718명이 증가하였다. 자세한 증가는 다음과 같다; 경성부 61.7%, 부천군 21%, 인천부 12.6%, 시흥군 3.7%, 개성군 2.9%, 수원군 1.1%, 이천군 1.1%, 가평군 0.7%, 양주군 0.4%, 강화군 0.3, 안성군 0.3%, 광주군 0.3%, 포천군 -0.1%, 연천군 -0.1%, 김포군 -0.2%, 파주군 -0.3%, 용인군 -0.4%, 장단군 -0.4%, 여주군 -0.7%, 진위군 -1%, 양평군 -1.4%, 고양군 -1.6% 순.

⁶⁵ 『大正14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14年10月1日現在國勢調査結果表」; 『昭和5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 1925년 『통계연보』(A)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8,853	4,309	2,085	8	19	25	8	88	74	46	51	122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24	15	679	134	39	19	168	17	162	202	559	
* 1925년 간이『국세조사』(B)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11,953	5,906	2,752	21	22	42	16	84	188	49	50	132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18	17	826	156	85	24	261	36	182	324	762	
* B-A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3,100	1,597	667	13	3	17	8	-4	114	3	-1	10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6	2	147	22	46	5	93	19	20	122	203	
* 1930년 『통계연보』(A)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11,571	5,987	2,427	15	30	23	27	51	55	75	41	94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개풍군
19	24	635	142	32	9	149	13	193	303	1,130	97
* 1930년 간이『국세조사』(B)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16,968	8,275	3,372	50	41	28	27	48	83	122	181	126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개풍군
25	24	1,288	165	102	21	242	32	236	506	1,189	785
* B-A											
전체	경성부	인천부	광주군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진위군
5,397	2,288	945	35	11	5	0	-3	28	47	140	32
김포군	강화군	고양군	안성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연천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개풍군
6	0	653	23	70	12	93	19	43	203	59	688

양 조사결과의 차이를 보면, 경기도에서 중국인 인구 유동성이 가장 큰 지역은 경성부로 1925년 1,597명 1930년에 2,288명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경성부 다음으로는 인천부 945명, 개성부 781명, 고양군 653명이 큰 인구차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도 중국인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1930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개성부를 제외하고, 중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누락 또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경기도 중국인의 인구분포와 마찬가지로 경성부와 인천부 다음으로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인구누락률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25년에 비해 1930년의 누락률이 증가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인천항을 통해 식민지조선으로 유입된 인구가 경성부의 위성지역인 고양군, 부천군 등 서북부지역으로 이동해가는 양상이 심화되어 이들 지역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1925년부터 1930년까지 5년간 식민지조선의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인구증가의 폭과 누락되는 비율이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컸다. 누락되는 비율이 많은 것은 중국인들의 정주성이 낮고 유동성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1920년대 중국인들의 이주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統計年報』와 『國勢調査』의 비교에서 중국인의 누락율은 1925년 20.4%에서 1930년 26.1%로 증가했다. 이는 1925년보다 1930년의 정주성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계절성이주노동자 및 내지행상 등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統計年報』와 『國勢調査』의 비교분석을 통해 1925년에 최소 1만여명, 1930년에 최소 2만여명 이상의 계절성노동이주자가 조선으로 이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 두 자료는 그 조사방법과 조사시기의 차이로 인해 조사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 중에서도 중국인의 조사결과 차이는 압도적 크다. 이는 해당기간 중국인의 인구증가가 매년 기존 인구 대비 50% 이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주패턴에 따른 유동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 국세조사의 조사 시점은 10월 1일이다. 하지만 10월 1일이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세조사 상의 인구조사를 가지고 그 한 해 한반도에 존재한 모든 중국인 인구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밀항자 및 안동과 신의주를 오가며 생업에 종사하던 인구 등 국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30년대 재한화교의 인구가 10만명을 넘는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1920년대 화교이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 계절성이주노동자 즉, 남성 단신 위주의 이주는 1925년과 1930년의 성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계절성이주노동자는 春往冬歸라는 이주패턴 상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40.3을 기록한 1925년에 비해 1930년 중국인 성비는 572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인 여성은 1930년에도 여전히 1만 4천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인 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성비가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統計年報』에 비해 『國勢調査』상의 성비가 더욱 비대칭인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기 중국인의 조선 이주가 대부분 단신 남성 위주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두 조사 간의 조사결과 비교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 계절성이주노동자 내지는 화공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평안북도와 경기도는 1920년대 중국인 거주지의 주요 두 축으로써 기능하고 있었다. 1920년대

에는 경기도를 포함한 조선반도 북부지역에 대부분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체화교의 절반 가까운 약 45%가 평안북도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1925년과 1930년을 비교할 때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경기도 순으로 중국인 인구 증가의 폭이 컸다. 특히, 인구 증가 상위 6개 지역에서 경기도를 제외하면 조선 북부지역이 5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처럼 1920년대 급증하는 중국인 인구는 조선북부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계절성이주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도 평안북도와 경기도를 위시한 조선 북부지역이었다. 『統計年報』에서 누락된 중국인 인구의 대부분이 경기도와 조선 북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평안북도의 중국인 가호 당 인구도 1925년 3.6명에서 1930년 4.7명으로 전체 13개 道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때문에, 실제 해당시기 남성 인구 증가의 폭을 고려할 때 1920년대 중후반기 폭증한 조선 북부의 중국인 인구는 대부분 남성 단신의 노동 이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도 평안북도를 기준으로 해당 시기 가장 많은 세대원 수가 증가한 지역이 철산군, 자성군, 삭주군, 강계군 등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절성이주노동자'의 주요 활동무대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를 위시한 조선 북부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인구는 평안북도 안에서는 신의주부 및 신의주부 인접지역이, 경기도에서는 경성부와 인천부를 제외하고, 개성부,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등 인천에서 경성으로 가는 경인선 주변 또는 조선북부지역으로 가는 경의선 주변에 위치한 도시들에 집중되었다. 이들 지역은 중국인들의 노동거점이자, 노동거점으로 이동하는 노선 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재이주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기할 것은, 1927년과 1931년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배화폭동의 발생지역과 화교밀집지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1920년대 전후 공황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배화폭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1927년의 경우 배화폭동이 주로 식민지 조선의 남부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배화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던 1931년의 경우에도 중국인의 인구분포와 발생빈도 및 규모는 비례하지 않는다.⁶⁶ 때문에, 배화폭동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할 연구에서 자세하게 논해볼 계획이다.

⁶⁶ 1927년 조선화교배척은 총독부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702건이 일어났다. 경기도는 전체의 36%. 충남이 23%, 전북은 14%, 그 다음이 전남, 황해, 경북 38건, 강원 22건 순이다. 충북, 경남, 평남, 평북, 함경도는 다 합쳐도 약 10건이 안 된다. 전라도, 충남, 경기도가 전체 사건 건수의 7할 이상을 차지했다.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이 사건의 중심지였다. 반면, 1931년 화교배척 사건은 13개도 전 지역에서 일어났다. 평남 746건, 경기 308건, 황해 142건, 평북, 98건, 함남 62건 순으로 이들 지역이 중심이었다; 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5, 2016, pp.295~296.

■참고문헌

『東亞日報』, 『朝鮮日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KOSIS)

- 시군도별 호구 및 인구; 국적별 인구 구성비 및 남녀 성비; 중국인 도별 인구; 경기도 市·郡·道별 호구 및 인구; 평안북도 市·郡·道별 호구 및 인구; 인구 일만인 이상의 郡·面 現住인구 및 세대.

「凡例」,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戶口調査』, 朝鮮總督府編, 大正14年(1925), 昭和5年(1930)

『國勢調査總覽』, 二階堂保則講述, 第1回國勢調査委員會 編, 大正9年

『大正14年10月1日現在國勢調査結果表』, 『朝鮮總督府國勢調査報告』, 第2冊, 朝鮮總督府編, 東京:文生書院, 2000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記述報文』, 第4冊, 朝鮮總督府編, 東京: 文生書院, 2000

「戶口調査規定」, 『朝鮮總督府官報』, 1922年7月13日, 亞細亞文化社

「賃銀調」, 「工場賃銀調」, 『朝鮮總督府官報』, 亞細亞文化社

「國세조사에 관한 법률」, 明治35年 12月 2日, 第49號; 개정, 明治38年 第13號; 재개정, 大正11年, 第51號

「朝鮮總督府令」, 第66號, 第67號, 大正14年

「朝鮮總督府勅令」 第357號, 明治42年

김태웅,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아카넷, 2016

이정희, 『한반도 화교사: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도서출판 동아시아, 2018

박명규,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社, 1991

山脇啓造, 『近代日本と外國人勞働者』, 明石書店, 1994

安井三吉 著, 『シリーズ中國にとっての20世紀 帝國日本と華僑 日本.台灣.朝鮮』, 2013

강진아,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재한화교기업 동순태(1874~1937)의 사례」, 『경북사학』 27, 2004

강진아, 「만주사변 전후 재한화교 문제의 양상: 朝鮮總督府外事課와 在韓中國領事館 간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0, 2012

김승욱, 「19세기 말~20세기 초 인천의 운송망과 화교 거류양상의 변화」, 『중국사연구』 50, 2011

김승욱, 「20세기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중국근현대사연구』 47, 2010

김승욱, 「20세기 전반 한반도에서 日帝의 渡航관리정책 -중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8, 2013

김승욱, 「20세기 전반 韓半島에서 日帝의 勞動市場 관리: 중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85, 2013.

김승욱, 「20세기초 한반도의 산동화교 -半島空間의 도시 네트워크와 이민」, 『중국사연구』 82, 2013

김영신, 「일제시기 재한화교(1910-1931): 인천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 2005

김용태, 「19세기 미국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 인식과 인종 분류:1870년 연방 인구조사의 중국인 인종 범주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김희용, 「日帝强占期韓國人の 華僑排斥」, 2009,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경선, 「근대 동북아시아 역내 인구 이동 고찰: 일본 제국주의 세력권 내 인구 이동의 규모, 분포, 구성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5, 2021

손승희,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 『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

이진형, 「중국의 화교정책」, 『현상과 인식』 2005.

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5, 2016

이은자, 오미일, 「1920-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화공과 사회적 공간」, 『史叢』 79, 2007

이은상, 「20세기 전반(1912~1936) 식민지 조선의 신의주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70, 2016

이은상, 「원산화교와 배화폭동(排華暴動)」, 『중국근현대사연구』 72, 2016

이은상, 「중일전쟁 시기 원산화교의 동향과 화교경제」, 『史叢』 90, 2017

윤휘탁, 「民國時期 中國人の 滿洲 移住와 歸郷」, 『중국사연구』 63, 2009

정혜중, 「개항기 인천 화상 네트워크와 화교 정착의 특징」, 『중국근현대사연구』 36, 2007

Lee Myong-Hak, 「The Publication of and Structural Changes to Korea's Financial Statics under Japanese Rule」,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3,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崔承現, 「轉折中的旅韓華僑」, 『華僑華人歷史研究』, 1999

范立君, 「论20世纪30年代东三省关内移民」, 历史数学问题, 2006

范立君, 「近代东北移民与社会变迁 (1860~1931)」, 浙江大学, 2005

周春英, 「近代东北三省关内移民动态的分析」, 中国边疆史地研究, 2004

张嘉琳, 「朝鲜移民与近代东北区域文化的多元化」, 山西青年, 23, 2018

李正熙, 「在韓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2

李正熙, 「在韓華僑の人口に関する考察(1883-1949年)」, 京都創成大学紀要, 2008

總谷智雄, 「在韓華僑的形成與變遷」, 『東北亞研究』, 1994

總谷智雄, 「在韓華僑の生活世界-在韓華僑にエスニシティの形成, 維持, 變化」, 亞細亞研究, 1998

『조선총독부통계년보』 및 『국세조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화교인구: 경기도와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희신(상명대)

본 논문에서는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화교인구, 특히 계절성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인구추계를 시도하고 있다. 1920년대 조선화교의 규모를 확인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던 「조선총독부통계년보(이하 통계년보)」와 「국세조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계절성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추산하고, 20년대 조선화교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조선화교의 인구추계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조선화교의 인구통계 자체를 주제로 다룬 것은 이정희의 연구(2008)가 유일하다.[①개항시기(1883~1909), ②식민지시기(1910~1945)] 조선화교연구에서 인구추계는 주로 위의 두 자료를 직접 활용하거나 「통계년보」를 활용한 『조선화교사』(양소전, 1991)의 인구통계를 재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인구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적어도 화교인구의 증감 추세를 확인하는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개항도시에서 화교 정주화의 양상변화나 조선 노동시장에서 민족 간 경쟁의 발생 배경으로 화교의 인구학적 구성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고, 또 정확한 인구추계를 위해서도 관련 통계자료의 비교분석은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만 통계를 인용할 때 지나친 불신도 문제지만, 오류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는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방법, 대상 등에 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화교인구 분석에 앞서 「통계년보」와 「국세조사」가 어떤 자료인지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인구조사의 주제, 목적, 담당기관, 시기, 대상, 방법, 항목(내용), 한계(문제점) 등 자료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인구추계 방법론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머리말은 문제의식과 연구의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되, 이하 문장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화공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노동자를 지칭한다. …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규정된 공장노동자의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화공의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 …” (6면) ???

- 「국세조사」가 「통계년보」에 비해 조사가 철저하고 광범위해서 누락인구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이 있고, 또 조사시점이 10월 1일과 12월 31일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계절적 인구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조사」 인구(現住人口, A)에서 「통계년보」 인구(常住人口, B)를 뺀 인구를 ‘유동인구’(A-B)라 간주했다. 계절노동인구를 포함한 유동인구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추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조사」 인구에서 「통계년보」 인구를 뺀 인구를 모두 ‘계절성이주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을까. 유동인구를 계절성이주노동자로 단순화할 경우 내지행상처럼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동인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

또 “유동인구 중 계절성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이 중국인의 성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다.”(16면)고 서술하고 있다. 「국세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중국인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1925년과 1930년 각각 8.4배와 5.7배 많아 조선인과 일본인에 비해 성비가 불균형적이고, 또 ‘유동인구’ 가운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1920년대 식민지조선으로의 이주가 여전히 남성위주의 이주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유동인구 중 계절성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인구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1925년에 비해 1930년 상대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성비차이가 완화 추세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 지역적으로 조선 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의 성비 차이가 극심하다. 이에 대해 논문에서는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에 가족단위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적었기 때문이며, … 따라서 성비 차이에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26면)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는 줄곧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지만 점차 완화되었고 1920년대 후반 이후 여성인구의 증가와 함께 정주화가 시작되었으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북부가 남부보다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 평가해 왔다. 필자의 조사분석은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남녀 성비 차이와 정주화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 “1927년과 1931년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배화폭동의 발생지역과 화교밀집지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인구분포와 (폭동의) 발생빈도 및 규모는 비례하지 않는다.”(32면) 이상은 필자의 후속연구가 배화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화교배척 사건의 발생원인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 외에 폭동이전부터 일상 속에 내재되어 온 갈등이 폭발하게 된 조건, 또는 사회운동단체의 활동과 민족갈등의 관련성 등 화교배척의 내적과정 등 지역마다 양상이 다양하다. 그리고 1920년대 중국인 거주지의 주요 두 축으로 기능했던 평안북도와 경기도 또한 배화사건이 집중 발생했던 지역이다. 그렇다면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화교인구에 대한 분석결과가 배화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中共中央 東北局의 成立과 北·中 關係의 形成

이 상 민(忠北大)

I. 東北 地域과 中共中央 東北局의 成立

II. 國·共內戰과 中共中央 東北局 駐北韓辦事處

III. 中共中央 東北局 成立 以後 北·中 關係의 特徵

2022 년은 북·중 국교 수립 73 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 년 10 월 6 일, 북·중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북·중 양국의 수교 배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49 년 이전 북·중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한국과 중국학계에서는 북·중 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성과가 다수 발표되었다. 북·중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는 군사협력과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¹⁾ 초기 북·중 관계 연구의 특징은 북·중 ‘血盟’에 가려져 있던 북·중 양당의 본 모습을 구현했다는 점과 한 분야에 편중된 북·중 관계가 아닌 북·중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필자는 북·중 관계를 고찰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당제 관계에 기반하여 국가 관계로 발전하면서 상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주목하였다.²⁾

1949년 이전,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게 된 계기는 時間과 空間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먼저 시간 측면에서 보면 1949년 이전 중국은 國共內戰 기간이었다. 공간 측면에서 보면 國·共 內戰이 발발한 공간은 중국의 東北 地域이었다. 國·共 兩黨이 동북 지역의 선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戰爭, 그 戰爭 後 國·共 양당의 격차, 중국국민당의 우세와 중국공산당의 열세 속에서 북·

1) 이종석, 「國共內戰이시기 북한-중국관계」 I·II, 『전략연구』 11·13, 1997·1998; 이종석 지음,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도서출판 중심, 2004; 히라이와 준지 저, 이종국 역, 『북한-중국관계 60년-‘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선인, 2013년; 李相旻, 『二戰後初期中朝關係研究(1945-1950)-從黨際關係到國家關係』, 中國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2014-01. Kim Sang Won,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7, no.1, June 2014; 余偉民, 「蘇聯的選擇與中朝關係的形成(1945-1953)」, 『朝鮮·韓國歷史研究』, 15, 2014; 김상원, 「國共內戰이시기 北·中 경제협력 및 배경」, 『歷史學報』, 第 229 輯, 2016.3; 이상숙, 「國共內戰 시기 북한과 中國共產黨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0-1, 2016; 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최후의 천조(天朝): 毛澤東·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서울: 선인, 2017; 김선호,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북한의 중국내전 지원과 군대창설을 중심으로-」, 『軍史』 102, 2017.3; 김선호, 「1945-1947년 북·중관계의 형성과 북·중혈맹의 근원」, 『동북아역사논총』 57, 2017.9.

2) 李相旻, 「北韓·中國의 國家關係 成立과 利害關係 衝突」, 『中國史研究』 第 140 輯, 2022-10,

중 간의 관계는 수면 위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中共中央 東北局은 중국 동북 지역 내에서 中國共產黨을 대표하여 중국공산당의 조직과 당원의 활동을 지도하는 기관이었다.³⁾ 본고에서는 동북 지역은 국·공 양당에게 어떠한 의미의 ‘공간’이었는지 살펴보고, 중공중앙이 동북국을 설립한 배경과 함께 동북국이 북·중 관계 형성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도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중공 중앙 동북국이라는 ‘기구’의 창설과 발전 과정 속에서 북·중 관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 東北 地域과 中共中央 東北局의 成立

1945년 8월 15일, 日本의 패전으로 國·공 양당의 관계는 대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국·공 양당은 중국의 東北 地域을 주시하였다. 두 당이 동북 지역을 주목하게 된 배경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정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蘇聯·蒙古·朝鮮 등과 맞닿아 있는 동북 지역은 華北—熱河—遼東 지역과 山東半島와 인접해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만약 中國共產黨이 동북 지역을 선점하게 되면 華北—熱河—遼東 지역과 연결되면서 넓은 해방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소련 등의 지원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반면 中國國民黨이 동북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공산당과 소련·북한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에서 협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중국공산당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⁴⁾

經濟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북 지역의 총면적은 130만 km², 인구는 3천 여 만 명이었다. 동북 지역은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중국 철강 생산의 90% 이상은 동북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동북 지역은 중일전쟁 시기 일본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지였기 때문이다. 동북 지역은 東北 平原이라는 곡창지대가 있어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大連·旅順·營口·安東(丹東) 등에 항구가 있어 해상 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⁵⁾ 이처럼 동북 지역은 지정학·군사 및 경제 측면에서 강점과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空間이었다. 국·공 양당은 이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계획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부터 착수하였다.

中國共產黨은 1945년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된 中國共產黨 第七次全國代表大會에서 동북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확정하였다. 毛澤東은 中國共產黨

3) 동북국의 활동 시기는 두 개로 나뉘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1945년 9월 창설하여 1954년 11월까지 활동하였고, 두 번째 시기는 1960년 9월 재창설하여 1967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戴茂林·李波 著, 『中共中央東北局(1945-1954)』,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017, p.2.

4) 『劉少奇傳』(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pp.475~476.

5) 戴茂林·李波 著, 『中共中央東北局(1945-1954)』,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017, pp.16~17.

제 7 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 동북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오쩌둥은 기존의 모든 근거지를 잃어버려도 동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는 중국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⁶⁾

1945년 11월 15일, 中國國民黨政府 主席 蔣介石도 동북 지역은 중국 혁명의 發源地가 아니라 중국 혁명의 歸着地라고 강조하면서 동북 지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⁷⁾ 중국국민당 정부는 東北 地域을 장악하기 위한 대외 여건을 이미 조성하였다. 1945년 8월 14일, 中國國民黨 정부와 蘇聯은 「中·蘇友好同盟條約」을 조인하여 소련으로부터 中國國民黨政府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게 되었고, 동북 지역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하였다.⁸⁾ 이는 중국국민당이 중국공산당보다 동북 지역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1945년 8월 10-11일, 중국공산당은 八路軍 總司令官 朱德의 일곱 차례 명령을 통해 華北 지역 근거지에 주둔 중인 八路軍과 新四軍은 즉시 근거지 주변의 日本軍의 무장을 해제하고, 특히 동북 지역으로 진격할 것을 강조하였다.⁹⁾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군대는 동북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河北 지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山東 지역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 동북 지역으로 진군했다. 陝西省 北部·山西省·내몽골·江蘇省의 八路軍, 新四軍 및 抗日聯軍 教導旅團의 주력부대도 속속 뒤를 이었다. 이로써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의 대도시를 접수하기 위한 침병부대가 구성되었다. 중공중앙의 명령에 따라 일본의 항복 초기 팔로군 冀熱遼軍區 사령관 겸 정치위원 李運昌이 최선봉이 되어 동북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東北軍 출신의 팔로군 장군 呂正操, 萬毅, 張學思는 각각 부대를 이끌고 山西·綏遠에서 北寧線을 따라 遼寧과 吉林 지역으로 진군하였다. 8월 30일, 팔로군 冀熱遼軍區 제16군 分區司令官 曾克林은 팔로군 4,70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이끌고 蘇聯軍 포병의 지원을 받아 산해관을 공략하였다.

국공 양당이 동북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45년 9월 14일, 蘇聯軍은 마린노프스키 원수의 구두 서신을 중공중앙 지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1)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국민당군과 팔로군의 만주 진입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 한다.

(2) 소련군이 滿州(동북 지역)에서 퇴각할 때까지 국민당군과 팔로군은 동북 지역으로

6) 『毛澤東在七大的報告和講話集』,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pp.232~233. 1942년 7월 9일, 毛澤東은 山東軍區의 劉少奇에게 산둥 지역의 항일근거지를 공고히 하면서 동북 지역으로 진출할 때를 기다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關於掌握山東問題的指示(1942.7.9.)」,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3冊. 1941-1942年, 北京: 中央黨校出版社, 1991, pp.419~421.

7) 『中華民國史事紀要(1945.10-12.)』, pp.783~784.

8) 臺灣外交部編, 『外交部檔案叢書—界務類 第二冊 中蘇關係卷』, 臺北: 臺灣外交部, 第1版, 2001, pp.51~60.

9)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5冊. 1945年,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pp.217~225.

진입할 수 없다.

(3) 팔로군의 단일 부대가 이미 奉天·平泉·長春·大連 등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소련군은 주더 총사령관에게 중국공산당군의 각 부대가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철수를 명한다.

(4) 소련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북 지역에 진입한 국민당군은 소련군에 의해 이미 무장해제 되었다. 소련군은 조만간 동북 지역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때 중국의 군대가 어떻게 동북 지역에 진입할 것인가는 중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¹⁰⁾

소련은 국공 양당의 동북 지역 진입을 불허하면서도 소련군이 동북 지역에서 철수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중국공산당에게 동북 지역으로 진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월 14일, 쟁커린은 류샤오치가 주재한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팔로군이 동북 지역에 진주하여 瀋陽에 衛戍 구역을 설치한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일본군이 소련군에 투항하면서 남긴 군수 물자가 널려 있고, 소련군은 팔로군에게 우호적 이어서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의 각종 무기로 부대를 무장할 수 있음도 언급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위와 같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동북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中共中央 東北局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重慶에서 장제스와 협상에 임하고 있었던 마오쩌둥도 중앙정치국 결정을 승인하였다.¹¹⁾ 9월 15일, 중공중앙은 東北局的 창설을 결정하고, 彭眞을 동북국 서기로 임명하였다.¹²⁾ 9월 17일, 彭眞, 陳雲, 伍修權, 葉季庄, 羅榮桓, 李富春, 林彪는 산하이관에 도착하였다. 9월 18일, 기차를 타고 瀋陽으로 들어가 張作霖의 大帥府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¹³⁾ 이로써 중공중앙 동북국은 동북 지역에서 중공중앙을 대표하며 전권을 갖고 동북 지역 모든 당의 조직과 당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게 되었다.

9월 17일, ‘向北發展, 向南防禦’의 전략 방침을 수립한 중공 중앙은 9월 19일, 이 전략 방침을 각 지역 중앙국에 하달하여 “우리가 동북 지역과 熱河省 및 察哈爾省을 장악하고 중국 전역의 각 해방구와 들이 투쟁에 협력하여 투쟁해야만 중국 인민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중국공산당 전군은 적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熱河省과 察哈爾省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동북 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역량을 발전시켜 동북 지역을 쟁취하고, 국·공 양당 담판에서 유리한 고지

10) 「中央關於東北情況與蘇軍代表談東北問題的通報(1945.9.14.)」, 楊奎松 著, 『中共與莫斯科的關係(1920-1960)』, 臺北: 東大圖書公司, 1997(民國86), p.531에서 재인용.

11) 『劉少奇年譜(1898-1969)』 上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pp.490~492; 「中央關於組織東北中央局的通知(1945.9.15.)」, 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黨史黨建政工教研室 編, 『中共黨史教學參考資料』 第十八冊, 1986, p.17.

12) 「中共中央政治局臨時會議記錄」(1945.9.14.), 『劉少奇傳』 (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p.487.

13) 田西如 主編, 『彭眞年譜(1902-1984)』 上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2, pp.298~299.

를 쟁취하는 것이 주요 임무” 라고 강조하였다.¹⁴⁾

중공중앙의 지시를 받은 동북국 서기 평전과 동북국 위원 천원은 동북국 제1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공산당군이 점령한 지역을 확대하고, 도시와 철도·교통 요충지를 장악하여 關內 지역에서 동북 지역으로 진입하는 부대와 간부들이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당군에 대한 반격을 통한 동북 지역 장악을 준비하였고, 동북국이 현재 수행해야 할 임무를 결정하였다.

“첫째, 적의 무기를 거둬들이고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질서를 신속히 안정시켜 생안을 회복하도록 한다.

둘째, 괴뢰 정부를 무너트리고 각 계층의 민주 정부를 수립한다.

셋째, 대중을 동원하여 무장 역량을 강화 및 확대하여 국민당과의 결전을 준비한다.

넷째, 농촌에서 대중들을 동원하여 反奸反霸과 減租減食 투쟁을 전개한다.

다섯째, 대도시에 중국공산당의 방침과 정책 그리고 중국국민당을 진압한 이후의 영향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한다.”¹⁵⁾

동북국의 임무 확정에 따라 동북 지역으로 진입한 팔로군과 신4군과 대규모의 간부들은 동북 각 지역에서 토비들을 진압하고, 일제의 잔여 세력을 소탕하는 동시에 군비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다.¹⁶⁾

중공중앙의 기존 계획은 동북 지역을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지원 아래 冀熱遼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여 국민당군이 육로로 동북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봉쇄하고, 동쪽으로는 발해만 일대를 장악하여 국민당군의 해상 상륙을 저지하여 동북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였다.¹⁷⁾ 그러나 동북 지역 단독 점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 상황은 중국공산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의 동북 지역의 단독 점령 계획 수정은 불가피 하였다.¹⁸⁾

1945년 9월 28일, 중공중앙은 기존의 단독 점령 계획에서 분할 점령 계획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¹⁹⁾ 중공의 주력부대를 蘇聯·朝鮮·외몽골 및 熱河 지역 부근의 도시와 농촌지역에 배치하여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지 확보를 추진하였다. 중공은 국민당군을 동북 지역 안쪽으로 깊숙이 유인하여 섬멸하는 유격 전략도 수립하였다.²⁰⁾

14) 「中共關於確定向北推進向南防禦的戰略方針致中共赴渝談判代表團電」(1945.9.17.),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5冊,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年, p.279; 『劉少奇年譜(1898-1969)』(上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年, p.495.

15) 『彭眞傳』 第一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2, p.331.

16) 丁曉春·戈福錄·王世英編著: 『東北解放戰爭大事記』, 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p.12.

17) 「中共中央政治局臨時會議記錄(1945.9.14.)」, 『劉少奇傳』(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p.478에서 재인용.

18) 『劉少奇傳』(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p.478.

19) 「軍委關於爭奪東北的戰略方針與具體部署的指示(1945.9.28.)」, 『中共中央文件選集』(第15冊),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pp.299~301.

중공중앙은 “큰길을 내어주고, 양측을 점령하라(讓開大路, 占領兩廂)”는 새로운 방침을 동북국에 하달하였다. 이를 통해 北滿·東滿·西滿 지역의 농촌 根據地를 개척하고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²¹⁾ 1945년 10월 9일, 중공중앙은 東滿 및 北滿 지역에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대중을 동원하고, 근거지 건설을 전개할 것을 동북국에 지시하였다.²²⁾ 중공중앙 동북국은 소련과 북한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東滿·南滿 및 北滿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를 위한 조직 확대를 추진하였다. 1945년 10월 13일, 중공중앙 동북국은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 전체 통제 또는 동북 지역에서 정치 및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을 동원하여 무장 역량을 강화하면서 근거지 건설을 각 지역 당조직에 요청하였다.²³⁾ 1945년 10월 25일, 중공중앙 동북국은 동북국 직속의 中共吉合委員會를 長春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長春·吉林·延邊·牡丹江과 佳木斯 등의 지역을 통합 지도하면서 확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²⁴⁾ 1946년 10월 31일, 동북국은 中共南滿分局인 遼東分局을 창설하였다. 遼東分局은 遼東省委員會·安東省委員會·遼南省委員會와 旅大地方委員會를 관할하면서 南滿 근거지를 굳건히 하고, 토지 개혁, 전쟁 지원, 농업 생산, 무역 등의 업무를 맡았다.²⁵⁾

동북국은 동북 지역 내 중공의 군사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다. 10월 24일, 마오쩌둥은 동북국 서기 평전에게 “지린성의 각 주요도시에 신속히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시하였다.²⁶⁾ 10월 29일, 周保中은 姜信泰에게 서한을 보내 延邊 지역은 민족 단결 업무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延吉·和龍·汪清·琿春 등 각 현에 모두 2개 사단의 인민 무장 부대를 조직하고, 延邊 지역은 지린성의 공고한 후방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⁷⁾ 10월 31일, 중공중앙의 결정에 따라 東北人民自治軍 총부를 창설하고, 린바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²⁸⁾

팔로군 총사령관 주더의 제6호 명령을 받들어 연안에서 동북 지역으로 진출한 조

20) 「中共中央致東北局電(1945.10.9.)」, 『劉少奇傳』(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p.488; 『劉少奇年譜(1898-1969)』上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pp.486, 507~508.

21) 『劉少奇年譜(1898-1969)』上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p.531.

22)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中國共產黨延邊歷史大事記』, 北京: 民族出版社, 2002, p.221.

23)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中國共產黨延邊歷史大事記』, 北京: 民族出版社, 2002, p.221.

24) 위원회 서기는 吉合行政委員會 주임위원 周保中이 맡았고, 王效明, 彭施魯, 于克, 姜信泰, 蘇梅, 傅根深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中國共產黨延邊歷史大事記』, 北京: 民族出版社, 2002, p.221.

25) 遼東分局은 1948년 4월 13일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遼寧省檔案館 編, 『中共中央東北局遼東分局檔案文件匯集(1946-1948)』, 未刊, 1986, p.1.

26) 『毛澤東軍事文選』第三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 1993, p.78.

27)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編, 『中國共產黨延邊歷史大事記』, 北京: 民族出版社, 2002, p.223.

28) 丁曉春·戈福錄·王世英 編著: 『東北解放戰爭大事記』, 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p.18.

선의용군은 1945년 11월 초 심양에 도착하여 북한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북한 주재 소련군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무장 세력의 진입을 불허하였다.²⁹⁾ 북한으로의 진입이 좌절되었던 조선의용군 3,000여 명은 1945년 11월 10일 선양에서 조선의용군 대회를 개최하여 조선의용군을 네 개의 지대로 다시 편성하여 東滿·北滿·南滿지역으로 진군하였다.³⁰⁾ 12월 초까지 동북 지역에 도착한 팔로군, 신4군과 지방 간부는 약 2만 명이었고, 주력부대는 10만 8천여 명이였다. 동북인민자치군 총사령부의 지휘하에 관련 작전에 배치되었다.³¹⁾

중공중앙은 동북 지역 내 당 조직 업무를 총괄하는 동북국을 창설하여 중공의 ‘동북 지역 단독 점령’ 계획인 ‘向北發展, 向南防禦’의 추진을 시도하였지만 「중·소우호동맹조약」 및 미국의 국민당 지원이라는 현실 제약으로 인해 “큰길을 내어주고, 양쪽을 점령하라[讓開大路, 占領兩廂]”는 ‘동북 지역 분할 점령’ 계획으로 전환되었다. 동북국은 수정된 계획을 토대로 당 조직의 확대를 통해 대중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군사 조직의 재편을 통해 국민당군에 대응하였다. 소련과 북한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東滿·南滿 및 北滿 地域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북한과의 접촉면이 확대되어 동북 지역과 북한이 ‘공간’을 통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1946년 6월 국·공내전의 전면전 이후 중공중앙 동북국은 북한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구상을 북한측에 제의하게 된다.

II. 國·共內戰과 中共中央 東北局 駐北韓辦事處

1946년 6월, 중국국민당군이 남만 지역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민당군은 선양과 四平을 점령하고, 창춘에 진주하면서 동북인민자치군이 점령한 남만과 북만의 주요 통로를 차단하였다. 북만 지역에서 동만 지역으로 후퇴한 동북민주연군은 국민당군에 의해 수세에 몰려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당시 남만 지역에서 북만 지역으로 중공의 병력 및 군수물자의 이동은 남만 지역과 맞닿아 있는 북한을 통로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남만 지역과 북한은 단둥에서 圖們, 新義州에서 南陽에 이르기까지 강을 사이에 두고 800km 국경이 이루어져 있어 수로 교통이 원활하고, 남만과 북만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과 관외 지역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³²⁾

2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著, 『秘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上),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148~154; 金東吉, 「1945年10月 朝鮮義勇軍先遣縱隊入朝及其受挫」, 中國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編, 『韓國研究論叢』, 第20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30) 石源華 編著, 『中國共產黨援助朝鮮獨立運動紀事(1921-1945)』,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p.394.

31) 丁曉春·戈福錄·王世英 編著: 『東北解放戰爭大事記』, 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p.18.

32) 丁雪松·倪振·齊光, 「回憶東北解放戰爭期間東北局駐朝鮮辦事處」, 『遼沈戰役』(上),

1946년 6월, 중공중앙 동북국은 북한을 ‘편법으로 은밀한 후방’으로 삼아 남만 작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³³⁾ 동북국은 당시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동북국의 제안을 수락하였다.³⁴⁾

동북국이 북한을 ‘편법으로 은밀한 후방’으로 삼은 배경에는 소련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지만, 실제 소련의 군정 중이었다. 중국공산당의 제안에 소련은 미국·영국과 맺은 「알타협정」과 국민당정부와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은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중공중앙 동북국과 비밀 접촉을 통해 중국공산당을 조용하게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김일성이 동북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에는 중국국민당의 동북 지역 장악으로 야기되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중국국민당이 동북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면 북한의 38도선 이남 지역과 북쪽의 동북 지역이 모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 중국국민당의 직접적인 위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동북 지역은 중국공산당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을 장악한다는 목표는 중국공산당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당시 북한의 안보와 직결되는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1946년 봄, 金日成은 南陽에서 周保中을 접견하여 中國共產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여력이 없었지만 저우바오중의 지원 요청을 수락하였다. 김일성은 혁명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 東北 地域이 蔣介石의 천하가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³⁵⁾ 이처럼 國·共內戰은 북·중 양당에게 있어 ‘危機’였다. 북·중 양당은 중국국민당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통해 북·중 양당 협력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연결고리는 중공중앙 동북국이 북한에 제안한 ‘북한의 중공 후방기지 역할론’이었다.

1946년 7월, 중공중앙 동북국은 朱理治와 肖勁光을 平壤으로 파견하여 소련 군정과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공중앙 동북국 주평양판사처를 설립하였다. 앞서 언급한 「알타협정」과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제약으로 인해 동북국 주평양판사처의 대외 명칭은 ‘平壤利民公司’로 하였다. 이후 북한의 요청으로 평양과 기타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大連地下黨과 남만 부대 및 膠東 부대 등의 임시 판사처를 통합하여 중공중앙 동북국 駐北韓辦事處로 확대 개편하였다. 주리즈

北京：人民出版社，1988，pp.624~625.

33)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 編，『紀念朱理治文集』，北京：中共黨史出版社，2007，p.242.

34) 丁雪松·倪振·齊光，「回憶東北解放戰爭期間東北局駐朝鮮辦事處」，『遼沈戰役』（上），北京：人民出版社，1988，p.627；丁雪松 口述·楊德華 整理，『中國第一位女大使丁雪松回憶錄』，南京：江蘇人民出版社，2000，p.168.

35)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계승본）』 8권，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1998，p.262；李相旼，「北韓·中國의 國家關係 成立과 利害關係 衝突」，『中國史研究』 第140輯，2022-10，p.228.

는 1948년 10월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동북국 북한 주재 관사처 전권대표를 맡아 동북 지역 국·공 내전을 지원하였다.³⁶⁾

‘평양이민공사’로 불리는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관사처는 平壤 大東江 西岸 叙慣裏 104 番地에 위치한 4층 건물을 이용하였다. 주북한관사처의 임무는 첫째, 부상병·부대원 가족 및 병참 중사자 이송과 배치 및 전략 물자 이송 업무; 둘째, 북한을 경유하여 남만·북만 및 대련과 기타 근거지의 물자교류 지원 업무; 셋째,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 및 요청하는 업무; 넷째, 북·중 인민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양자의 교역 활성화 업무; 다섯째, 朝鮮勞動黨과의 협조를 통한 華僑 업무 지원 등이었다.³⁷⁾

주북한관사처는 비서·상무·운수·회계·총무 등의 부서를 두고 약 100명이 근무했고, 러시아어 및 조선어 통역도 배치했다. 鎮南浦·新義州·滿浦·羅津 등 북한의 주요 교통 거점 및 항구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이 중 나진지사가 간부 100여명, 하역 근로자 50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사였다고 한다.³⁸⁾ 주북한관사처는 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한분국 및 소련 군정 관계자와 교섭을 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³⁹⁾

대외 명칭을 ‘평양이민공사’로 하여 동북국 주북한관사처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지만 중국국민당 정보요원들에 의해 ‘평양이민공사’가 중공의 중요한 기관임을 알아내고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서울 주재 중국국민당 기관지에 게재되자 북한 측은 동북국 주북한관사처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였다.⁴⁰⁾

1946년 10월, 중국국민당군은 ‘南攻北守, 先南後北’의 방침을 토대로 秦皇島에 상륙하여 산하이관을 공격하였고, 京奉線을 따라 남만 지역까지 공격하였다. 당시 동북민주연군은 안동과 통화 등지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말 당시 동북민주연군은 남만 지역에서 臨江·長白·撫松·濛江·輯安 5개의 현만 남아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⁴¹⁾

1946년 11월, 동북민주연군이 안동과 통화를 포기했을 때 18,000여명의 부상자 가족과 병참 인력을 북한으로 철수시켰다. 저우바오중은 부인 王一知를 김일성에게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왕이즈의 요청 사항을 적극 지원했다.⁴²⁾ 주리즈는 부상병 가족과 병참 인력들이 북한으로 철수한 직후의 상황에 대해 “안동과 통화에서 퇴각한 이후 부상병 가족 및 인원 15,000여명이 북한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북한측에서 장시간 동안 이들을 북한 인민의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36) 吳殿堯·宋霖 著, 『朱理治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p.457, 458, 481.

37) 吳殿堯·宋霖 著, 『朱理治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p.458~459.

38) 吳殿堯·宋霖 著, 『朱理治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458.

39) 吳殿堯·宋霖 著, 『朱理治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470.

40) 吳殿堯·宋霖 著, 『朱理治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p.469, 470.

41) 朱佳木 主編, 『陳雲年譜(1905-1995)』 (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p.471.

42) 吉在俊·李相全 著, 『金日成與中國東北解放戰爭』, 平壤: 外文出版社, 2011, p.67.

록 조치하였고, 외교적 어려움과 북한 인민들의 반감을 참으면서도 보살펴주고 도와줬다”고 기술하였다.⁴³⁾ 김일성은 1947년 초 왕이즈를 다시 만났는데, 왕이지는 북한측이 동북 지역 국·공내전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2만여 명의 부상자와 가족과 병참인력, 2만여 톤의 전략물자 이동을 요청하여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⁴⁴⁾

주북한판사처는 북한측의 도움으로 육상과 해상을 통한 수송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安東에서 新義州와 南陽을 거쳐 圖們으로 가는 노선과 通化에서 輯安과 滿浦를 거쳐 도문까지 가는 노선, 두 개의 육상 수송로가 구축되었다. 두 개의 육상 노선을 통해 북한의 북부 지역을 경유하여 남만 지역과 북만 지역의 주요 통로가 연결될 수 있었다. 대련에서 출발한 선박이 南浦와 羅津港에 도착하는 해상 수송로도 개통되었다. 남포와 나진에 도착한 물자는 다시 육로를 통해 북만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대련과 남포 노선과 대련과 나진 노선은 關內 지역, 대련과 북만지역을 이어주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였다.⁴⁵⁾ 북·중 양당은 압록강을 공동으로 운항하였고, 1948년 11월, 北韓과 中國 東北行政委員會는 「압록강운항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鴨綠江의 동쪽과 서쪽을 자유롭게 중국과 북한의 선박은 운항할 수 있었다.⁴⁶⁾ 1946년 9월, 중공 중앙 동북국은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와 물자수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⁴⁷⁾ 1946년 12월, 중공중앙 동북국은 饒斌, 白棟材, 蔣澤民 등을 圖們에 파견하여 동북국 圖們판사처와 위수사령부를 설치하였고, 圖們을 경유하여 南滿 등지로 보내는 간부와 군수 물자의 수송을 총괄하게 하였다.⁴⁸⁾ 1947년 6월까지, 북한은 800대 이상의 화물차를 통해 약 21만 톤의 물자를 수송 지원하였다. 1948년, 약 30만 9백 톤의 물자가 수송되었다고 한다.⁴⁹⁾ 북한은 육해 수송로 제공 외에도 수풍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도 동북 지역에 제공하였다.⁵⁰⁾ 체신과 통신 등 관련된 협정 20여 개를 체결하였다.⁵¹⁾ 남한에서의 식량 지원이 중단된 이

43) 朱理治, 「關於北朝鮮對東北解放戰爭支援情況的報告(節錄) (1947.6.27.)」,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 編, 『紀念朱理治文集』,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239.

44) 『金日成回憶錄: 與世紀同行(續編)』(8), 平壤: 外文出版社, 1998, p.227.

45) 김재준·이상전 지음,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p.106.

46) 「公路水運志」, 『遼寧省志』,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9, p.359.

47) 김재준·이상전 지음,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p.107.

48)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中國共產黨延邊歷史大事記』, 北京: 民族出版社, 2002, pp.250~251.

49)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編, 『紀念朱理治文集』,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523.

50) 수풍발전소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바람. 오현주, 「압록강 수풍 수력발전소 소유권을 둘러싼 북·중 갈등 및 해결(1945-1955)」, 『歷史學報』 第248輯, 2020-12, pp.347~376.

51) 丁雪松·倪振·齊光, 「回憶東北解放戰爭期間東北局駐朝鮮辦事處」, 『遼沈戰役』(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8, p.630.

후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중국공산당으로부터 1947, 1948 년 물자 교환의 방식을 통해 식량 약 5 만 톤을 지원받아 해결하였다.⁵²⁾

북한의 물자 수송 지원으로 동북 지역 외 산동 解放區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산동 지역에서 필요한 시멘트 등 건축 자재를 북한으로부터 대두 등의 곡식 교환 방식으로 교역하였다.⁵³⁾ 1946 년, 산동 해방구는 倪振을 북한으로 파견하여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를 통해 폭약 300 톤, 뇌관 300 만 개, 도화선 120 만 m 를 구입하였다. 1947 년, 산동 해방구는 黃永年을 북한에 파견하여 폭약 120 톤, 질산, 200 톤, 아세톤 100 만 톤, 고무신 15 만 켤레를 구입하였다. 이 물자들은 南浦에서 선적되어 大連을 거쳐 산동 해방구에 도착하여 산동 지역은 물론 華東 지역 국·공내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⁵⁴⁾

1948 년 11 월 2 일, 중국공산당은 遼瀋戰役에서 승리하여 동북 지역을 장악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공 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丁雪松, 倪振, 齊光은 북한 주재 판사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중공 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의 설립은 동북 지역 국·공 내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대한 결정이었다. 남만 지역 투쟁을 견지하고, 중국국민당의 동북 해방구에 대한 공격을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분쇄하여 동북 지역 전체를 해방 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華東·華北 지역 해방전쟁 나아가 전국 해방전쟁의 승리에도 역할을 했다.”⁵⁵⁾

국·공 내전을 통해 북한노동당 및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양당은 동북 지역과 한반도 이북 지역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공 내전의 승패에 따라 북·중 양당의 생존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국·공 내전이라는 ‘내전’에서 승리해야만 했고, 북한도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공 내전이라는 ‘외전’에서 중국공산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공산당은 한반도 이북 지역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통해 군사 이동 및 물자 수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공내전 시기 북한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원은 중국공산당이 南滿 지역을 장악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⁵⁶⁾

52) 丁雪松·倪振·齊光, 「回憶東北解放戰爭期間東北局駐朝鮮辦事處」, 『遼沈戰役』(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8, p.632.

53) 朱理治, 「關於北朝鮮對東北解放戰爭支援情況的報告(節錄) (1947.6.27.)」,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 編, 『紀念朱理治文集』,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240.

54) 丁雪松·倪振·齊光, 「回憶東北解放戰爭期間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遼沈決戰』 上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8, p.630.

55) 丁雪松·倪振·齊光, 「回憶東北解放戰爭期間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遼沈決戰』 上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8, p.626.

Ⅲ. 中共中央 東北局 成立 以後 北·中 關係의 特徵

중공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는 당시 중국공산당의 유일한 해외 주재 기관으로써 외교의 경험을 쌓았다. 1948년 8월 24일,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판사처 전권대표 주리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2년간 북한에 대한 외교 업무 결산 및 앞으로의 임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주리즈는 이 문건에서 북·중 외교의 측면에서 2년 동안의 북한에 대한 업무에서 실천한 내용과 함께 향후 신중국 외교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경험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一) 대 북한 관계는 외교관계이지만 형제 국가간의 외교관계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외교는 원칙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외교의 주요 방침은 중공중앙의 정당한 원칙에 따라 양대 민족의 친밀, 단결, 합작, 상호 협력에 힘써 공동으로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를 반대하고, 이 전반적인 방침과 원칙에 위배 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二) 양국 사이의 문제는 반드시 협의 또는 회의를 방식을 취하여 해결을 도출해야 한다. 북한은 신흥국가이므로 간부들이 국가를 관리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쌍방은 반제국주의의 경험만 있지 형제 국가로서 서로 잘 지낸 경험이 없었다. 게다가 우리는 전쟁 중이고, 그들은 평화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이 팽팽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오만함, 성급함, 경솔한 언행은 일을 그르치게 할 뿐이다.

(三)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견지하여 설득에 실패할 때 반드시 국제주의 입장에 서서 그 잘못에 대해 적절히 지적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단결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이 있을 때 반드시 자아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아비판 정신으로써 상대방의 자아비판을 유도해야 한다. 2년간 경험의 증명으로 비판과 자아비판은 형제 국가 간 논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당한 무기이고, 그러한 주장이 보복, 봉쇄, 절교의 사상을 취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四)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양측의 논쟁으로 이견을 좁힐 수 없을 때 소련에 조정과 중재를 요청한다. (그러나 우리가 소련을 이용해 그들을 압박한다는 인상은 피해야 한다.)

(五) 반드시 북한 인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야 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우리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결코 그들의 작은 이익을 바라거나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그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과거 양측의 합작과 상호 협력의 발전이 부족했다).

56) 1950년 6월 30일, 周恩來는 柴成文에게 1946~1947년 國·共內戰 시기 北韓은 東北 地域과 關內的 交通 및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通路였다고 언급하였다. 柴成文·趙勇田著, 『板門店談判』,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4, p.33, 李相旼, 「北韓·中國의 國家關係 成立과 利害關係 衝突」, 『中國史研究』 第140輯, 2022-10, p.234에서 재인용.

(六) 원칙의 견지를 배우고, 양보 또한 배워야 한다. 국제주의와 본 민족의 정당한 이익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원대하고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양보는 필요하다. 지나치게 견지하고, 양보를 거절하면 반드시 소탐대실할 것이다. 양보는 반드시 주동적이어야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한다.

(七)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양국과 관련된 문제는 조약형식을 통해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土門(圖們)과 羅津에서 두 차례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는 사전에 협정을 맺지 않은 탓이다. 협정 체결 시 반드시 숙고를 거듭해야 하고, 협정 체결 시 신중치 못해 사후에 협정을 이행할 수 없거나 국가의 위신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 (과거 20여 개의 협정을 맺어 오면서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八) 외교는 반드시 국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또한 외교는 반드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국외에 있는 기관은 반드시 당의 정책과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협정 체결을 협의하기 전에는 먼저 동북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협정 체결 후에는 국내와 협조하여 이행 관철이 보장되어야 한다. 과거 이 시기 외교는 동북의 충분한 지지를 받아 대외적으로 신의를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安東省과는 협력하고, 보조를 같이 하는데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안동성 당위원회에 북한과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를 두어야 한다. (북한과 500여 리 인접하고 있어 관계가 밀접하고 제일 많다.)

(九) 주재국 정보에 대해 수준 높은 조사연구를 해야 함과 동시에 본국의 상황 파악 또한 확실히 한 다음에야 답판하는데 근거가 있어 양국간의 이견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점은 과거에 미흡했다). 국제법, 국제외교사에 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한다.

(十) 공개와 대외비의 관계에 주의하여 북한의 국제적인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교통과 상업은 공개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숨겨진 후방을 세우고 길을 빌려 인력 물자 등을 운송하는 것은 은폐 방식을 써야 한다. 기타 문제, 예를 들어 무기, 탄약 등을 지원받는 것은 일급비밀이어야 하고 문건으로 남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 앞으로 방첩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十一) 국외 기구는 통역, 무선통신, 회담 관련 전문인력과 몇 명의 비서를 갖추고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통역 없이 회담에 임하게 되면 손해가 심히 크다. 간부들의 수준은 높아야 하고 (편제 개편, 공산당 개선강화 학습과 북한 주재 기구들을 통합한 후에 간부들의 수준이 제고되었다.),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기구들은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미 마무리되었다. 현재 정보처를 책임지고 있는 동지와 우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업무 보조를 맞출 수 없다.⁵⁷⁾

주리지가 북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북·중 양당 교류의

57) 朱理治, 「兩年來對朝外交工作總結及今後任務(1948.8.24.)」,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編, 『紀念朱理治文集』,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p.242, 243, 244.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남만 지역의 후방 기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주리츠는 관련 사례를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북한노동당 평안북도 부위원장은 모든 시간을 할애하여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를 지원하였고, 북한의 보안국장도 업무 시간의 4분의 1을 할애하여 판사처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김일성은 린바오에게 “우리가 주북한판사처에서 요청한 일은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했기 때문에 북·중 양측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서신을 통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남만의 큰 후방 역할을 했고, 평양이민공사를 통한 북·중 철도 운송은 상호 대등한 호혜 관계라고 주리츠는 평가하였다.⁵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중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북한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중공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 활동 시기 북·중 관계는 반공개 상태였지만 주리츠는 공개와 비공개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함과 동시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소련과 북한측에 외교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주리츠는 교통 및 상업 방면에서의 교류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군사 관련 교류 특히, 무기 및 탄약을 획득하는 문제는 극비로 다뤄야 하며 서면 문서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⁵⁹⁾ 주리츠가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이익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소련이 북·중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재 소련 군정은 전반적으로 북·중의 인적 및 물적 이동에 적극적이었다. 소련이 중국공산당을 지원한 배경에는 스탈린의 구상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은 미군이 동북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⁶⁰⁾ 중국국민당이 동북 지역을 일방적으로 차지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 지역까지 미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는 1945년 8월 중국국민당과 체결한 「중·소 우호동맹조약」을 통해 되찾은 중국 장춘철도 등의 특수 권익의 보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리츠는 북·중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소련에게 중재를 요청한 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중국공산당이 소련을 통해 북한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⁶¹⁾ 소련 군정이 북·중 양측이 이견이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통해 북·중 관계에서 소련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주리츠가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북·중 양당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를 수면 위로

58) 朱理治, 「關於北朝鮮對東北解放戰爭支援情況的報告(節錄)」(1947.6.27.),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 編, 『紀念朱理治文集』,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p.240~241.

59) 朱理治, 「兩年來對朝外交工作總結及今後任務(1948.8.24.)」,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 編, 『紀念朱理治文集』,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244.

60) 「斯大林與蔣經國會談記錄: 中蘇關係諸問題(1945.12.30.)」, 沈志華 主編,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一卷. 1945.1.-1949.2., 上海: 東方出版中心, 2015, p.107.

61) 朱理治, 「兩年來對朝外交工作總結及今後任務(1948.8.24.)」, 中共河南省委黨史研究室 編, 『紀念朱理治文集』,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7, p.243.

드리내지 않았다. 그것이 당시 중국공산당의 이해관계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북·중 양당의 관계는 상호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감안해야 한다.

1946년 7월 창설된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을 장악한 이후 1948년 12월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⁶²⁾ 기존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1949년 3월 중국 동북행정위원회 북한 주재 상업대표단으로 개편되었고, 1950년 8월 북한 주재 초대 중국대사 倪志亮이 부임하면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으로 전환되었다.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북·중 관계가 당제 관계에서 국가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機構’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중공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의 변천 과정은 곧 북·중 관계 발전과 일치한다. 1946년 7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중공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는 국·공 내전으로 인해 탄생되었고, 결국 1948년 11월 중국공산당에 의한 동북 점령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하였다.

‘평양이민공사’의 주요 임무는 동북 지역 국·공 내전에서 동북민주연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었다. 앞서 언급한 ‘평양이민공사’의 다섯 개의 임무 가운데 세 개의 임무인 북한으로 부상자 이송, 남만에서 북만으로 전쟁물자 이송, 북한에서 작전물자 조달 등의 임무가 후방의 역할이었다.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북·중 관계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양이민공사’는 1943년 ‘코민테른(Comintern)’ 해체 이후 중공 중앙이 해외에 설치한 첫 공식 해외 주재 기구이기 때문이다. 1946년 당시 북·중은 국가 관계가 아닌 당제 관계였다. 북한노동당과 중공 중앙이 아닌 중국공산당의 지방 조직인 동북국과의 관계였다. ‘평양인민공사’의 존속 기간은 북·중 양당 관계가 국가 관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였지만 실제 운용 측면에서 보면 국가 관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중공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와 북한측이 체결했던 20여 개의 협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1945년 9월 15일, 中共中央의 결정으로 창설된 東北局은 국·공 내전을 수행하였고, 1946년 7월 중공중앙 동북국 주조선판사처를 조직하여 북중 양당 동북 지역과 한반도 이북 지역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공 내전 시기 북·중 양당의 협력은 중공중앙 동북국 북한 주재 판사처를 통해 강화되었고, 북·중 국가 관계가 형성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1948-1949년 북·중 양국의 건국 이후 국교 수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東北 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 양당의 상호 협력은 양국의 협력으로 계승 발전하게 되었다.

62) 丁雪松 口述·楊德華 整理, 『中國第一位女大使丁雪松回憶錄』,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0, p.176.

토론문: 中共中央 東北局의 成立과 北·中 關係의 形成

한 상 준(아주대)

발표문은 중국과 북한이 1949년 10월 국교를 수립하며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기 이전 시기의 북중관계 형성 과정을 중공중앙 동북국과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판사처의 성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발표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1945년 8월 일본 패망 이후부터 1949년 10월 북중국교 수립 시기까지의 북중관계가 밀착했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곧 시간적으로는 국공내전 시기가 되겠고, 공간적으로는 동북지역(그리고 한반도 북부지역, 즉 북한지역)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946년 7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평양에 설치됐던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당시 중국공산당의 유일한 해외 주재 기관이었으며,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위기의 시기 중공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양국관계를 강하게 밀착시켰고, 동시에 중공이 동북지역에서 승리하면서 1948년 11월 동북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1945년 8월 일본 패망 이후 중국공산당이 수립했던 본래 계획은 동북 지역을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이었다. 즉, “소련의 지원 아래 군사력을 증강하여 국민당군이 육로로 동북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봉쇄하고, 동쪽으로는 발해만 일대를 장악하여 국민당군의 해상 상륙을 저지하여 동북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북 지역 단독 점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 상황은 중국공산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의 동북 지역의 단독 점령 계획 수정은 불가피 하였다. 1945년 9월 28일, 중공중앙은 기존의 단독 점령 계획에서 분할 점령 계획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중공에게 불리한 대내외적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2. 발표문에 따르면, 1945년 10월 24일 마오쩌둥은 동북국 서기 평전에게 “지린성의 각 주요도시에 신속히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시하였고, 10월 29일 周保中은 姜信泰에게 서한을 보내 延邊 지역은 민족 단결 업무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延吉·和龍·汪清·琿春 등 각 현에 모두 2개 사단의 인민 무장 부대를 조직하고, 延邊 지역은 지린성의 공고한 후방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강신태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던 북한의 혁명 1세대 강건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시 북한의 고위 인사가 중국의 동북지역(연변지역)에 나와 있었던 것인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3. 발표문을 통해 국공내전 당시 북한의 중국공산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47년 6월까지 북한은 800대 이상의 화물차를 통해 약 21만 톤의 물자를 수송 지원하였고, 1948년 약 30만 9백 톤의 물자가 수송되었다. 북한은 육해 수송로 제공 외에도 수풍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도 동북 지역에 제공하였으며, 체신과 통신 등 관련된 협정 20여 개를 체결하였다. 또한 남한에서의 식량 지원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중국공산당으로부터 1947년과 1948년 물자 교환의 방식을 통해 식량 약 5만 톤을 지원받아 해결하였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인용 자료는 모두 중국 측 사료들인데, 아마도 공개된 소련 측 자료도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 측 자료 현황은 어떠한가?

4. 1946년 7월 창설된 중공중앙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을 장악한 이후 1948년 12월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기존 동북국 주북한판사처는 1949년 3월 중국 동북행정위원회 북한 주재 상업대표단으로 개편되었고, 1950년 8월 북한 주재 초대 중국대사 倪志亮이 부임하면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국공내전 기간 형성됐던 북중관계의 밀착과 특수성에 비한다면 초대 중국 대사의 북한 부임이 상당히 늦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10월 6일 북중 국교 수립 이후 중국 측 대사가 북한에 부임하기까지 대략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중관계 30년: 집권세력에 따른 파동과 이익-안보-정체성의 복합 궤적

장영희(성균중국연구소)

본 글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정치 및 이념 지형의 영향 속에서 분화한다는 가설을 채용한다. 이념적 성향이 경제 및 사회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이희옥, 2018). 예컨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이념지형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나아가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진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스탠스에 파동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정부와 진보 성향의 정부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당대 한중관계가 시간의 누적과 함께 이념 지형이라는 정태적 가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과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생겼다. 예컨대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밀착하던 경우도 있었고,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며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 더욱 밀착하던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본 글은 한중관계가 한국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일반적인 파동 위에 경제적 이익, 안보적 고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동태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문헌 검토

차정미(2017a)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이념의 영향을 분석하며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성향에 따라 대중국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념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인식에 있어서 이념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변수임을 밝혔다. 특히 대중국 인식에 대한 이념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는 점과 진보층의 대중국 선호도가 보수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진보이념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영향이 보수이념보다 약하다는 점이었다. 즉 진보 성향과 대중국인식의 상관성이 보수 성향을 가진 한국인보다 약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의 이념화 영향으로 대중국 인식이 대외인식의 균열선인 “반공의식 대 친북의식” 및 “한미동맹 대 자주노선”과 중첩되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중국 인식을 둘러싼 이념 성향의 균열선이 대외인식의 균열선과 중첩되어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분기를 일으키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차정미(2017b)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면서, 한중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가 급격히 증대된 것과 달리 한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이 초기의 긍정적 기대와 호감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후퇴하는 양상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국인의 중국 인식이 높은 변동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양면성이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을 촉진하고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장영덕(2021)은 한중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양상을 분석하면서, 각 언론 매체들이 정파성에 따라 차별적인 보도 양태를 보였음을 파악하고 그 보도 양상의 국내정치적 요인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동북공정 이슈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모두 공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에 따른 언론 보도의 차별성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매체는 동북공정 이슈화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반사적 이익을 꾀하는 보도에 힘썼고, 진보 매체는 대중 정책 기조에 대해서 보다 온건한 논조를 유지했다. 한편,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의 이념적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보수 매체는 사드 이슈를 통해 반중국 정서의 확산을 시도했다. 또한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반면 진보 매체는 사드 문제의 정치화를 시도하고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정부별 한중관계 주요 쟁점 및 사안

1) 노태우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 이념을 초월한 전략적 관계 설정과 경제 이익의 추구

노태우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수교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한중수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1988년 2월 취임사에서도 북방정책 구상을 재차 강조했으며 '남북통일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중국에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한중관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홍콩 등을 경유한 간접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서로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민간교류를 단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었다.

당시 한중 양국간의 경제 통상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바탕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1979년 1,900만 달러였던 교역 규모가 88년 31억 달러, 92년엔 82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했다. 1993년에는 90억 달러를 초과하여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은 한국의 제3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에게 있어 한국도 4대 교역국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삼성, 선경, 금성과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기회도 얻었다.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에는 15만 명을 넘어섰는데, 친척방문 위주에서 상업용 목적, 교환 및 학생연수 등으로 다변화되어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중 양국은 1910년 이후 80여 년의 단절,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의 적대적 시기를 청산하고 1992년 8월 24일 역사적인 수교를 이루었다. 한국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후 전두환 정부로 이어졌고, 마침내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 중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사 표출에 대해 북한을 의식하면서 80년대 초반 이후 관계개선의 속도 조절의 과정을 밟아 오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1991년 이후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 협상에 호응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외부환경의 변화도 있었다. 즉 냉전이 종식되고 중소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에서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대화가 극적으로 진전되면서 중국의 우려와 부담이 완화되었던 것이다(이동률, 2022). 요컨대 1992년의 한중수교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외교 추진과 덩샤오핑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선린외교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며 이뤄진 결과였다.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상당기간 한국과의 수교를 주

저해왔던 중국에게는 중요한 장애 요소를 해소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수교 초기 양국관계 발전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이후 점차 정치영역에서의 관계 발전으로 확대되어 갔다.

노태우 정부는 보수 세력이 집권한 정부였지만 이념 성향을 떠나 안보적 고려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당시 냉전 해체 과정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북방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를 단행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결행된 중국과의 수교는 현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 보수 세력 내에서 여전히 반공주의적 가치관이 주류적 정서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중국붕괴론과 중국위협론이 한국의 지식장에 유입되었지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교류와 협력이 급속히 확대됐다.

2) 김영삼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 안보적 고려와 경제 이익의 공유

김영삼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는 이념 대립 구도에서 탈피한 실용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양국 정상이 상호방문 등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4자회담을 만들기도 했다. 1995년 11월 중국 국가주석인 장쩌민이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교 다음해인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에서 안정적 기반을 다지고 중장기적 관계 발전의 외교적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 시기 양국 간의 외교적 의제는 크게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해결,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관계, ▲무역 및 산업 협력 등이었다.

우선 김영삼 정부 시기 한중 양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 의제였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안전조치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가 1992년 2월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임시 핵사찰을 받았으나, IAEA가 북한의 신고 내용과 실제 핵사찰 결과가 불일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고 결국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에 제1차 핵위기가 도래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이 지난한 협상에 들어갔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맺어 북한 핵 동결과 북한의 NPT 잔류 및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미국 책임 하 대북 경수로 제공, 대북 경제제재 완화, 북미관계 개선 등 사항에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불어닥친 안보 위기와 가장 밀접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의 당사국이 아니었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관련 사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협상은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응하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고 장쩌민 주석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노력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이러한 입장 및 지지 요청은 김영삼 정부 집권기 내내 지속되었고, 1994년과 1995년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한편 1996년 중국의 첸지천 외교부장은 한국이 한반도 정전 문제 및 평화체제 수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임을 밝히며 한반도 안보 사안에서 한국의 당사자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한편 북핵 문제가 북미 간 양자회담으로 수렴되고 있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외교적 대안으로서 199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이 제시되었다. 4자회담은 많은 기대 속에서 1996년과 1997년간 여러 예비회담 및 실무협상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고 입장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불협화음 및 상호불신 속에 결국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은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stakeholder)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표된 사건이자 이후 북핵 문제의 다자적 해결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계기였고,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한 최초의 사례로 남았다.

김영삼 정부 시기 한중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는 새로운 지역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었다. 냉전이라는 오래된 정치적 대립구도가 해소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키워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였다. 당시 한국은 지역협력구도가 정착하지 못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질서를 주도하거나 틀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세계화’ 정책 기조 하에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했다. 그 대표적 당사국인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점점 커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했고 한국의 동북아 지역 대외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위치로 부상했다. 또 OECD 가입 등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었던 김영삼 정부 입장에서 UN 상임이사국인 중국과의 관계 심화는 의미가 큰 것이었다.

당시 중국의 기본적 동북아 전략 방침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면서 국내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선 견제와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한 지역전략 목표로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은 중요한 지역 파트너를 확보하는 셈이었다. 그리고 중국에게 한국은 APEC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경제권 확대를 위한 교두보이자, 탈냉전 시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상대국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한중 양국의 선린우호 협력관계 발전의 경로는 비단 양자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UN 등 국제 다자기구에서의 공조를 들 수 있다. 1993년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시애틀 APEC 회의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전해진 ‘중국의 GATT 가입 지지 요청’을 수락하여 기조연설에 반영했고, 이에 중국의 첸치천 외교부장이 고마움을 표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1996년도에 한국은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및 해양재판관 선출,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고, 중국은 2002년 월드컵 한국 개최 및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의 서울 개최,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등 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는 김영삼 정부 내내 주목받는 의제였다.

또한 경제 방면에서 한중 간 경제무역협력 및 거버넌스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한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1992년 14.3%, 1993년 13.9%, 1994년 13.1%, 1995년 11.0%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GATT 가입 방침을 천명하고 수입자유화 및 제도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또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의 한 경로로서 동북 3성 및 연안지역 경제발전에 한국 등 주변국의 자본 유치를 설정했는데, 실제 점차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의 FDI를 강화했다. 중국은 한국에게 제2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에게 제7의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투자의 증가에 따라 양국 경제협력 및 우호증진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 시기 양국 정부가 주도한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례로는 첨단 및 중화학 산업의 산업 협력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리펑 총리는 1994년 방한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원자력 발전시설 건설시장 개방, 민간 항공기 공동개발, 후난성 통신망 건설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고, 현대그룹 등 재계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현대그룹의 대중국 자동차 합작투자 및 조선소, 항만 도로 건설 등을 요청했다. 장쩌민 주석은 1995년 방한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중화학 공업시설을 시찰하며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1995년에서 1999년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투자금액 면에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80%에 육박했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중화학 공업의 투자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한중 산업협력의 중심이 중화학공업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울빈, 2022).

3) 김대중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 경제 이익의 증가와 안보 및 정체성 이슈에서의 갈등

김대중 정부 시기 양국 간의 의제는 크게 ▲햇볕 정책 추진 및 북중 관계 개선, ▲통상 마찰, ▲역사 인식 문제 등이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장쩌민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지도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함께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01년 3월 개최된 제9기 전국인대 4차 회의 개최 기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주변 어느 나라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수교 이후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던 북중관계는 1999년 6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10월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특히 2000년 5월과 2001년 1월에 이루어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및 2001년 9월 장쩌민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중관계는 기존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회복했다. 북한은 체제 안전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절실했고, 중국 역시 대외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중요했다. 북중관계의 회복은 한반도 문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장쩌민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중관계가 회복되고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도 심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복잡성이 증대되었다. 2002년 10월 발생한 2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경향도 보였으며, 2003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양국 경제관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대한국 무역적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양국 간 통상 마찰로 이어졌다. 중국은 1997년 11월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했다. 특히 2002년 한국산 제품 7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한중 통상마찰은 2005년 11월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인정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중 통상 마찰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에 시작된 마늘 분쟁이다. 2000년 6월 한국 재경

부가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한 관세를 총 315%(기본관계 30% + 잠정긴급관세 285%)로 인상하며 ‘긴급수입제한(safe guard)’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후 한중 양국은 마늘협상을 진행했고 동년 7월 양국은 기존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종료시기를 2002년 12월 31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산 마늘의 연간 수입물량에도 합의했다. 이에 중국 측은 잠정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한중 간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수교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양국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교 수립 10년이 지나면서 한중 간 역사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2002년부터 소위 ‘동북공정’, 즉 ‘동북 변경 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체화되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동북공정이 한중관계의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았고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04년 8월 양국 간 협의를 거쳐 5개 항의 공동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중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되었던 협력의 범위를 사회·문화 및 군사·안보 분야로 심화 및 확대했다. 특히 당시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중 간 금융협력을 강화했고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인 ‘햇볕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북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데 대해 장쩌민 국가주석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APEC을 통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검토하자.”는 다소 소극적 입장을 피력했다(신종호, 2022). 중국이 4자회담 중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질서의 다자적 해법에 대한 양국의 일정한 시각 차가 드러난 것이다.

4)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 경제 및 안보 이익의 공유와 역사 문제의 정체성 갈등

노무현 정부 시기 양국 관계의 주요 의제는 크게 ▲북핵문제 해결, ▲동북 공정 문제,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등이었다. 한중수교 10년이 경과하면서 양국은 역내 의제로서의 북핵 문제와 양자 간 의제로 역사 및 문화적 갈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무현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의 협력은 그 어느 시기보다 두드러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집권 기간 한중 양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낼 정도로 협력이 잘 이뤄졌다.

중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했다. 한국 또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가 다자회담의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이었다. 이 공동성명은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러시아의 다자협상 결과였다. 그중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참여국은 한국과 중국이었다.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데 의장국이

었던 중국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북핵 문제를 다자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공동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도 평가할만하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는 그동안 잠복해 있던 역사 및 문화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드러난 시기였다. 중국이 2002년부터 시작한 ‘동북공정’은 한국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이 문제는 양국간 경제적 상호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요인으로 부상했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역사 문제가 양국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동북공정’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의 원래 명칭은 ‘동북 변경 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으로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주도하고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 등 동북 3성이 동참하면서 고구려사 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변방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해석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동북공정 논란이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하고, 양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한 충돌이 전면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역사 문제가 전면화되지 않은 배경에는 양국 정부가 여러 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적절하게 관리했던 노력이 작용했다. 양국 정부가 “역사 문제는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합의에 도달하면서 역사 문제로 촉발되었던 갈등과 대립 국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경제적 상호의존에 기반한 양국 협력이 역사 갈등 등 사회문화 영역의 협상과 타협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제어했다(양갑용,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교육부 산하 고구려연구재단 설치,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등 한국 내 대응이 이어지고 온라인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양국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도 이 시기 양국관계의 주요 의제였다.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컨센서스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제기되었고, 나아가 안정된 역내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한중일 협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도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한중의 건설적인 노력으로 역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갖기 시작했다.

5)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 실패

이명박 정부 시기 한중 관계의 주요 의제는 크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북핵 및 미사일 문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방중 당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8월 후진타오 주석의 국민 방한 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정치, 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실천 방안을 담은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이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전 세계 또는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어떻게 병행 발전시킬지가 한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 역할한 6자회담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에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6자회담은 더이상 개최되지 못했다. 북한은 2009년에 장거리 로켓발사, 제2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6자회담은 관련국들의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6월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된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영변 경수로 건설 현장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 노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북한은 이명박 정부 말기이자 후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약 2주 앞둔 2013년 2월 12일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실행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와 마지막 해에 북한의 핵실험을 경험해야 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6자회담의 정체로 인해 한중 간에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이 드러나게 되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 인근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연이은 북한이 무력도발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은 각 측이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이 북한의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10년에 연이어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양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김한권, 2022).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김정은이 당과 군 조직을 장악하면서 권력 공고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기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한국의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양제츠 당시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을 이루고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6) 박근혜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 정냉경열 속 최상의 우호관계 추구하고 안보 갈등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 관계의 주요 의제는 크게 ▲한중 FTA 타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북핵 및 사드 배치 문제, ▲해양경계와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이었다. 한중 FTA에 대한 공동연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상당기간 실질적 진척이 없다가, 2014년 타결되었다. 이를 위해 수차례의 민간 및 산관학 차원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었고, 한중 정부간 수차례의 실무협의 및 협상이 개최되었다. 시간 지연의 원인은 한중 양국이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자국에 최적의 FTA 방식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중국과의 FTA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선점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미래성장 동력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지만, 거대한 중국 경제에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 품목의 관세 인하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보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중국은 경제선진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FTA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TP)을 확대하려 하였고, TPP에 일본에 이어 한국마저 가입을 해버리면 중국의 경제적 영향

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이기현, 2022). 중국에게 있어 한중 FTA 타결은 당시 대만 민진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ECFA의 활성화, 나아가 한중일 FTA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목적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도 있었다. 양국 정상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양국 협상팀은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회의에서 한중 FTA를 전격적으로 타결시켰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로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이고, 2015년 말 정식 출범했다. 중국은 기존의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투자자의 조건이 까다롭고 내정간섭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아시아 지역 금융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로 인해 AIIB는 기존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되었고, 미국 및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기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AIIB 가입 문제와 관련 2015년 초까지 공식적으로 미결정 입장을 고수하였다.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불참을 권유했으나, 시진핑 주석이 2014년 방한 시 한국의 참여를 권유했다. 정상회담 외에도 외교장관, 총리급, 실무자간 접촉에서 중국은 한국의 AIIB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이 경제 대국이며, 인프라 및 건설·기술·자금·경험에서 우위를 가지고 많은 역할을 했던 국가이므로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AIIB 가입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2015년 3월 참여를 결정했다.

당시 한중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수식어처럼 경제교류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정치외교적 관계는 전통적인 지정학,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전략적 신뢰를 쌓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으나,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전략적 협력의 한계가 여전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소통, 양국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 간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 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합의했다. 특히 외교 및 국방 차원의 고위급 대화채널 가동, 양국의 주요 국책연구기관 간 대화의 정례화,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인문유대 강화 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식에 참가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 속에 사드 배치 사태로 양국 간 갈등이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었다. 중국 측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였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한중 동맹론으로 대표되는 한국 중시론이 대두되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고집하자 이에 대해 중국의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북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소원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이에 대한 집행을 강화했다. 이 기간 북중 정상 간 회담도 없었으며, 전통적인 정치 교류 행사도 중단되었다. 중국의 대북 강경정책 분위기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및 한중 간 협력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다양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은 실천되지 못했다.

더구나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 간 안보 이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자위적 조치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체계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운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립되는 의견 차이는 결국 외교 차원의 상호 설전을 넘어 경제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한국의 롯데 기업에 대한 중국 내 전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강화되었고, 중국 내 여행사에서 한국 상품이 사라지는 등 한중 관광교류가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문화 관련 교류 중단 조치 등이 연이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사드 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 갈등 상황은 이후 한중 간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양국 간 국민 정서 악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서해 불법 조업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지역으로 넘어와 조업하고, 이를 감시하는 한국 해경과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중 양국은 한중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을 공감했고, 2014년부터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양국 지도선이 공동으로 감시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 중국어선이 한국의 EEZ구역으로 진출입할 때 불법 어획물 여부 검사 강화 등 다양한 감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국 간 해양 경계 확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양국관계의 장기적 및 안정적 발전과 해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재확인하고, 2015년 한중 간 해양경계확정 협상을 시작했다.

해양경계와 관련 문제 외에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2013년 11월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역에 한국의 제주도 남쪽 하늘 KADIZ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되었다. 이에 제3차 한중 국방차관 전략대화에서 한국 측은 CADIZ 조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동년 12월 한국은 기존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발표하였다.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를 포함해 거제도 남쪽 무인도인 홍도까지 포함됐다. 양국 간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심지어 일본과도 중첩되는 지역이 많아 역내 긴장이 조성될 때 공통 방공식별구역의 진입 문제로 인해 언제든지 분쟁의 불씨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상의 우호관계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양자 및 다자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많은 만남을 성사시켰고,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우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소통 기제가 마련되고 정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도 고무적이었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가 계속 만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양국이 실질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관계의 질적 변화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한중 FTA의 타결이 가장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양국 정상은 한중 FTA를 통해 한중경제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려는 열망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잘 드러났고, 이러한 적극성이 한중 FTA의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로 다가왔다.

당시 한중 간 주요 현안이었던 해양 경계확정과 불법어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도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의 새로운 공조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당시 여러 논란을 야기했던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 AIIIB 출범, 중국군 유해 송환 등도 당시 한중 양국이 전략적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했음을 방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관계의 최상의 우호적 분위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논의되면서 점차 경색되었다. 이후 이어진 정치외교적 갈등은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7)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 관계 회복의 추구하고 정체성 차이의 확인

문재인 정부 시기 한중 관계의 주요 의제는 크게 ▲사드 갈등의 해소, ▲경제협력 재개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새로운 분야의 협력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중 협력의 다양화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대화 채널 강화에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 사업 재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새로운 분야의 협력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 일대일로 건설 협력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인문 교류 및 동계 올림픽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2017년 10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사드 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한중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국이 국제문제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상호 동의하고 향후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웃 국가로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호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 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양국 간 상호인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3. 한중관계 30년에 대한 평가

중국이 부강해지고 한중 간 힘의 비대칭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힘겨루기 속에 처해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세력 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큰 위기를 겪었다. 지식계는 국가의 방향성과 정체성의 설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여러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담론을 형성하며 권력투쟁을 벌였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의 지식계는 중화주의적 질서에 대한 부정과 중화문명으로부터의 탈피, 서구 문명과 일본에 대한 학습을 통해 독립의 길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독립운동과 국권회복의 동반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고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가 공고화되면서 한국 지식계에서는 중공에 대한 부정과 대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대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국민당 사이의 협력관계와 반공주의의 공유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냉전 해체 과정에서 한국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북방외교를 통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를 단행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결행된 중국과의 수교는 현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전략적 행위와는 별도로 한국 보수 세력 내에서는 여전히 반공주의적 가치관이 주류적 정서로 자리하고 있다. 탈냉전기 미국의 중국붕괴론과 중국위협론이 유입되었지만 큰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고, 오히려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경제관계를 기반으로 교류와 협력이 급속히 확대됐다. 그러나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 문제, 경제적 경쟁의 심화 등으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여론과 신중화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제

도와 가치를 성공적으로 수용했고, 이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런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 서 중국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주류적 시각이다. 한편 한국 지식계 일각에서는 진보적 시각에서 중국이 사상과 제도의 발전을 통해 또 다른 현대성의 모델을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장영희, 2019).

현재 한중관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면서 수교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미래 30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는 당위적으로 과거 정태적 안정을 추구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및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동태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의 탈동조화의 구조적 강요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의 공동 이익을 찾고 미래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 기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한중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양국 국민들이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향유가 상호의존의 과실임을 잊고 가치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외교를 요구하고 있으나 가치와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자기중심성만으로는 이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자신의 권력과 능력의 크기에 따라 가치·이익·안보의 비율을 조율하는 외교적 위선을 발휘하는 게 주권 국가의 책무이자 숙명이다.

『한중관계 30년:
집권세력에 따른 파동과 이익-안보-정체성의 복합 궤적』
토론문

강진아(한양대)

<별지참조>

중국근현대사학회

2022년도 정기총회

- I. 사업 보고
 - 1. 정례발표회
 - 2. 학회지 발간
 - 3. 기타 사항
 - 4. 민두기 학술상 시상
- II. 2022년도 회계 보고
 - 1. 회계 보고
 - 2. 감사 보고
- III. 차기 회장 추대
- IV. 기타 토의

2022. 12. 17.

중국근현대사학회

I. 사업 보고

1. 정례발표회

○ 2022년 동양사학회 춘계연구발표회(중국근현대사 분과)

<일시> 2022년 4월 30일(토요일) 10:00-17:00

<주최> 동양사학회 ※본 발표회는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오전: 분과 세션 주최

발표: 김현정(고려대), 홍영미(경희대)

토론: 주형준(서울대), 김택경(동국대)

오후: 공동 세션 참가

○ 중국근현대사학회 2022년 6월 정례발표회

<일시> 2022년 6월 18일(토요일) 14:00-17:30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518호 국제회의실, 온라인 화상회의 병행

<주최> 중국근현대사학회

발표: 김태한(경희대), 김승래(東京大學), 손동훈(고려대), 이승아(한양대)

토론: 윤숙현(전남대), 김승욱(충북대), 장수지(이화여대), 윤형진(고려대)

○ 중국근현대사학회 2022년 9월 정례발표회

<주제> 근대 한·중 교회사 연구

<일시> 2022년 9월 17일(토요일) 11: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518호 국제회의실, 온라인 화상회의 병행

<주최> 중국근현대사학회, 아시아천주교사연구회

발표: 신의식(충북보건과학대), 이석원(수원교회사연구소), 노재식(호서대),
최병욱(강원대)

토론: 방상근(내포교회사연구소), 윤숙현(전남대), 김정현(가천대)

○ 전국역사학대회 동양사학회 분과 발표회

<주제> 환경과 인간

<일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13:00-17:30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402호, 온라인 화상회의 병행

<주최> 동양사학회 <주관> 전국역사학대회 협의회

발표: 김승래(東京大學) 토론: 홍영미(경희대)

○ 중국근현대사학회 2022년 12월 정례발표회

<주제> 근대 이후 한중관계의 역사적 맥락

<일시> 2022년 12월 17일(토요일) 14: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518호 국제회의실, 온라인 화상회의 병행

<주최> 중국근현대사학회

발표: 김봉준(臺灣大學), 한상협(淸華大學), 이상민(충북대),

장영희(성균관대)

토론: 손성욱(선문대), 김희신(상명대), 한상준(아주대), 강진아(한양대)

2. 학회지 발간

○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3집(2022.03) 발간 : 논문 9편

○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4집(2022.06) 발간 : 논문 4편

○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5집(2022.09) 발간 : 논문 6편

○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6집(2022.12) 발간 : 예정

3. 기타 사항

○ 2022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평가 통과(96.33점) → 2028년 재인증평가 대상

○ 학술지 논문 저작권 누리미디어(DBpia)와 재계약

: (기간) 2022.10.13.~2027.10.12.

- 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누리미디어)
 - : 새로운 홈페이지 솔루션 도입(두부빌더)
 - : 신규 홈페이지 구축 비용(495만원) 면제. 단, 연간 유지보수비 인상(66만원, 간접세 포함).
- 학회 공식 메일 계정 변경
 - : (총무이사) k-modernchina@naver.com
 - : (편집위원회) kmodernchina@naver.com
- 한·일 중국근현대사 연구자 교류회 연기
 - : 2020년 1월 한국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계속 연기됨.
 - : 2023년 준비, 2024년 1월 개최 예정.
- 임시총회 개최
 - : (일시) 2022년 9월 17일 / (장소) 서강대 김대건관 518호 국제회의실
 - : (회칙 개정) 회원 구분 변경, 회장 임기 단축(1년), 부회장 체제 도입.
 - : (연구윤리규정 개정)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관련 규정 추가.
 - : (편집규정 개정) 논문심사 결과 판정 기준 명시.
 - : (투고논문작성요령 개정) 영문초록 적정 길이 명시.
 - : 자세한 내용은 학술지 부록에 수록.
- 중국근현대사학회 학술상, 민두기 학술상 관련 내규 정비
 - : (중국근현대사학회 학술상) 격년, 학술 저서
 - : (민두기 학술상) 매년, 『중국근현대사연구』 게재 논문 중 1~2편
 - : 자세한 내용은 학술지 부록에 수록.
-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 8 발행 진행
 - : 이병인 옮김, 『장지동(張之洞), 교육에서 청나라의 미래를 찾다: <권학편>과 <주정학무강요>』(가제), 한울아카데미, 2023년 상반기(예정).
- 중국근현대사학회 동계워크숍 추진
 - : <공동주최> 중앙대학교 HK+사업단
 - : <일자> 2023년 2월 15일(수)~16일(목)
 - : <장소>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 : <참가> 회원 24명 참가 신청(2022년 12월 15일 현재)

4. 2022년 민두기 학술상 시상

○ 민두기 학술상 수상자 및 수상 논문

홍영미(경희대): 20세기 초 중국의 문물(文物) 관리체계의 형성 — 베이징(北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2집, 2021.12)

김민서(연세대): 전후 식민지 홍콩의 보건의료 — 1946~1964년 새로운 과제와 보건당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4집, 2022.6)

Ⅱ. 2022년도 회계 보고

1. 회계 보고(2022.01.01.-2022.12.04.)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전년이월금(총무회계)	8,751,069	홈페이지 유지보수	462,000
전년이월금(학술상기금)	1,000,184	1차 운영이사회	172,800
전년이월금(편집회계)	866,818	2차 운영이사회	120,000
일반회비	3,250,000	3차 운영이사회	162,000
일반찬조금	1,200,000	심사비/발행비(93집)	2,282,480
심사료/게재료(93집)	2,760,000	심사비/발행비(94집)	1,205,780
심사료/게재료(94집)	900,000	심사비/발행비(95집)	1,691,670
심사료/게재료(95집)	1,020,000	6월 정례발표회	734,000
누리미디어 수입	923,097	9월 정례발표회	1,168,450
이자 수입	7,920	우편요금	3,460
		웹호스팅서비스 연장	141,130
		근조화환	78,900
		30주년 기념품	544,500
합계	20,679,088	합계	8,767,170
잔액	11,911,918		

※ 이번 회기부터 총무회계와 편집회계 통합. 세부 내역은 감사에게 별도 보고함.

2. 감사 보고

Ⅲ. 차기 회장 추대

Ⅳ. 기타 토의